

발 간 등 록 번 호

78-6460000-000375-01

생명의당 전남
Full of Life, Jeonnam



자치입법

따라하기

사 례 증 심



전라남도
JeollaNamdo

제1장 지방자치법 해설

제1절 지방자치법	3
1. 헌법과의 관계	3
2. 지방자치법의 입법목적	4
3. 지방자치법의 지위	6
4. 지방자치법의 구조	6
5. 지방자치관계 법률의 구성체계	7
제2절 지방자치의 의의	9
1.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	9
2. 관할구역의 의미	9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	10
4.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11
5. 지방자치단체의 하부행정기관	11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13
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갖는 의미	13
2. 지방자치단체 사무처리의 기본원칙	13
3. 자치사무 확보에 관한 제9조의 의미	14
4. 자치사무 구분의 법적 기준	15
5. 기관위임사무의 성격과 특성	16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과 주민참여제도 18

1.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18
2. 지방자치에서 주민참여의 기능 18
3. 주민의 기본적 권리 19

제5절 조례와 규칙 20

1. 조례의 종류와 규율범위 20
2. 규칙의 종류와 규율범위 23
3. 자치법규의 효력 25
4. 상급자치단체 조례 등 우위의 원칙 26
5. 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27

제6절 자치법규에 대한 재의요구와 대법원제소 29

1. 조례의 공포 및 재의요구 29
2. 재의요구에 관한 여러 규정간의 관계 32
3. 절차 33
4. 대법원제소 35

제2장 자치법규 제·개정

제1절 체 계 39

1. 자치법규의 제명 39
2. 본칙과 부칙, 장·절 등의 구분 42
3. 조문 및 서식 등 43



제2절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 방식	48
1. 기본원칙	48
2. 일부개정과 전부개정	48
3. 전부개정과 폐지·제정(대체입법)	48
4. 여러 조례의 일괄개정	48
5. 자치법규 입안의 실제	50
제3절 조례	59
1. 조례 입안시 유의사항	59
2. 업무 흐름도	60
3. 부서별 담당 역할	61
4. 제·개정 절차	62
5. 참고자료(주민청구 조례, 의원발의 조례)	68
6. 실제 사례 예시	74
제4절 규칙	134
1. 규칙 입안시 유의사항	134
2. 업무 흐름도	135
3. 부서별 담당 역할	136
4. 제·개정 절차	136
5. 실제 사례 예시	139



제5절 훈령 및 예규	164
1. 훈령	164
2. 예규	164
3. 업무 흐름도	165
4. 부서별 담당 역할	165
5. 제·개정 절차	166
6. 실제 사례 예시	167
제6절 고시 및 공고	185
1. 고시	185
2. 공고	185
3. 업무 흐름도	186
4. 부서별 담당 역할	186
5. 고시·공고 절차	187
6. 실제 사례 예시	188
제3장 부 록	
•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195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225
• 전라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245
• 전라남도 법무행정사무처리 규칙	254
◆ 참고문헌	292



제1장 지방자치법 해설

제1절 지방자치법 / 3

제2절 지방자치의 의의 / 9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 13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과 주민참여제도 / 18

제5절 조례와 규칙 / 20

제6절 자치법규에 대한 재의요구와 대법원제소 / 29

제 1 절 지방자치법

1. 헌법과의 관계

우리 헌법은 지방자치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일정한 사항을 법률에 위임하였는데 「지방자치법」 제1조의 목적 조항¹⁾은 이와 같은 헌법과의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다.

헌법은 최초 제정시부터 지방자치를 헌법적 요구로 명시하여 왔는데 강화상을 이룰 ‘제도적 보장’이라 부른다. 제도적 보장은 국가를 경영하고 국민들의 권익을 보장하는데 있어 관련되는 내용들 중 유사성을 지닌 것들을 하나의 틀로 묶어 헌법 자체에서 보장하는 것들을 말하는데 따라서 이는 법률로 함부로 변경할 수 없고 그 결과 기본권과 유사한 정도의 효력을 갖는다.

지방자치에 관해 헌법 제117조 제1항²⁾은 지방자치의 핵심요소인 자치사무와 자치기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목적을 의미한다.

즉 헌법이 시원적³⁾이고 포괄적 권력인 국가권력을 쪼개어 지방자치권이라는 독자적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방식의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목적은 국가가 직접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기능을 따로 담당시키려는 의도이다. 즉 헌법 위 조항에 나타난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가 그것인데 이는 국가 단위에서 수행하는 것 보다 주민들의 바로 곁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민주적일 수 있다는 믿음에서 그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국가와 독립된 지위에서 국가의 기능을 일부 할당받아 자신의 권한과 책임 아래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 지방자치단체라면 지방자치의

-
- 1)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3) 사물이나 현상 따위가 처음 시작되는 또는 그런 것

다른 제 요소, 즉 자치입법, 자주재정, 자주조직 등은 이러한 지방자치 실시 목적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구성, 단체장의 주민 직선 등도 자치사무의 독립적이고 효율적 수행이라는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처리기능에 이어 ‘재산을 관리하고’라는 문구를 두었는데 이는 자주재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자주재정의 내용에는 지방세 부과 징수, 예산의 편성과 결산, 지방채의 발행과 기타 채권 채무의 관리 등 중요한 요소들이 많은데 비중이 낮은 공유재산 관리를 대표적인 것처럼 헌법에 내세우고 있어 부자연스럽다.

그리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規定으로 되어 있으나 規程이 옳은 표기이다)을 제정”할 수 있는데 이는 자치입법권을 나타낸 것이다.

헌법 제117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여 위임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이어서 제118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라고 하여 지방의회를 헌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여 역시 위임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지방의회는 필수적 기관으로서 이를 구성하지 않음은 위헌상태가 되기 때문에 과거 제3공화국 헌법 이래 부칙에서 구성유예에 관한 특칙을 두어 왔고 정치적 쟁점이 되기도 하였다.

『지방자치법』 제1조는 이러한 헌법에서의 위임사항을 정하는 것이 동법의 입법목적중 하나임을 명시하고 있다.

2. 지방자치법의 입법목적

『지방자치법』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헌법에서 법률에 위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지방의회의 조직과 권한, 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1차적 목적이 있다.

여기에서 의원선거와 단체장의 선거방법은 별도의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데 위의 입법목적 때문에 제4장을 두고 거기에서 한 조문(제29조)을 두어 ‘지방선거에 관하여 이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몇개 조문에서 간헐적으로 선거에 관한 사항을 언급한데 그치고 있지만 그래도 제1조에서 정한 입법목적은 벗어난 것은 아니다.

그밖에 입법목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본적인 관계인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 독립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단체장을 정점으로 하는 집행부는 국가의 일선행정기관이 수행할만한 일까지 맡아 수행한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대립과 갈등이 빚어질 것을 대비하여 이를 조정하고 상호간에 협력관계를 유지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자치권의 본질에 관하여 고유권설⁴⁾과 전래설⁵⁾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전래설이 통설이 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에 관하여서도 규정을 두고 있으나 제1조에서는 이와 같은 점이 빠져 있다.

그리고 이 조문을 자세히 보면 지방자치행정이란 용어가 나오는데 이는 지방자치가 입법기능도 포함하고 있지만 국가적 관점에서 보면 행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사법기능은 아직 지방자치와는 거리가 먼 형편에 놓여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이 추구하는 이념은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는 것과 지방의 균형적 발전,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으로 나타나 있는데 역시 국가주의적 관점에 기울어진 표현으로 되어 있어 추후 기회가 있을 때 적절한 표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4) 개인이 천부인권을 갖듯이 지방자치단체는 고유의 권리로서 자치권을 갖는 것이고, 국가는 이를 승인할 뿐이라는 설

5) 국가는 원시적으로 권력을 갖지만, 지방자치의 자치권은 국가의 법질서로부터 부여받는다라는 설

3. 지방자치법의 지위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에 관한 기본법적 지위에 있다.

기본법이란 원래 실정법상의 용어가 아니고 또 요즘 실정법에서 사용하는 기본법의 용례가 다양하여 일의적으로 정의하기 어렵지만 유사한 사항을 정하는 일단의 법률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망라하여 정하고 있는 법을 말한다.

기본법의 내용은 대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기 때문에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어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입법자를 향하여 기본법과 상치되는 내용을 관계 개별법에서 정하려면 우선 기본법부터 고치고 나서 입법을 하라는 요청을 하는 것으로 새길 수 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에 관한 한 거의 모든 사항을 최소한 언급이라도 하고 넘어가는데 예를 들면 위에서 본 지방선거에 관한 사항과 교육자치에 관한 제121조⁶⁾, 지방공기업에 관한 제146조⁷⁾ 등을 보면 알 수 있다.

4. 지방자치법의 구조

현행 지방자치법은 총 10개장과 175개 조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순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총칙 : 지방자치법의 목적(제1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법인격 및 관할(제2조~제3조)
- 지방자치단체의 3요소 : 구역(제4조~제7조), 자치권(제8조~제11조), 주민(제12조~제21조) → 주민투표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조례와 규칙(제22조~제28조)
- 지방선거(제29조) → 공직선거법

6) 제121조(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7) 제146조(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 지방의회(제30조~제92조), 집행기관(제93조~제121조)
→ 지방공무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의 재무 재무운영의 기본원칙(제122조~제124조), 예산 및 결산(제125조~제134조) → 지방재정법, 수입 및 지출(제135조~제141조)
→ 지방재정법,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교부세법, 재산, 공공시설 및 지방공기업(제142조~제146조) → 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법
-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협력과 분쟁조정(제147조~제151조), 행정 협의회(제152조~제158조), 지방자치단체조합(제159조~제164조), 단체장 등의 협의체(제165조)
- 국가의 지도 감독(제166조~제172조)
-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특례(제173조~제175조)
→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부칙

5. 지방자치관계 법률의 구성체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에 관한 현행법 체계는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지방자치법이 기본법으로 위치하고 그 하위에 분야별로 공직선거법,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과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는 주민투표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별도로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과 관계가 밀접한 지방세법과 지방교부세법도 중요한 법률이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중앙의 경우 헌법(국회와 정부의 관계에 대응하는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관계), 정부조직법, 국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 국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다수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방자치법의 해석 운영에 있어서는 이들 법률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이 지방재정법과 지방공기업법 등에 대한 통칙적 기본법에 해당함은 위에서 보았다.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 내용을 보면 공유재산관리 등 여러 가지 항목이 망라되어 있다. 최근 이들 내용을 따로 떼어내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분법되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은 유난히 지방재정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도록 포괄 위임하지 않고 여러 조문을 직접 두고 있는데 양법 사이에 표현의 차이 등으로 해석상 혼란의 소지가 있다.

제2절 지방자치의 의의

1.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기 때문에 국가와 별도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각각 고유한 이름을 가지며 재산을 취득 관리하고 소송의 원고 피고가 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자신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

한편 이는 공법인으로서 단체의 설립이 국가의 의사에 근거하고 법인 등기도 필요없다는 점 등 특징을 갖는다.

2. 관할구역의 의미

위 제3조에서는 정부의 직할로 한다든지 도의 관할구역 안에 시를 설치 한다든지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중층구조를 취하고 있고 여기에서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기준과 관련하여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국가의 관할을 받는다는 뜻은 아니다.

즉, 시·도를 정부의 직할로 한다는 것은 국가의 영토를 분할하여 광역자치단체를 둔다는 의미이고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시·군·자치구를 둔다는 것은 광역자치단체의 구역을 여러 개로 쪼개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한다는 뜻이라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정부의 직할이라든지 관할구역이란 용어를 쓴 것은 과거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성을 잃고 국가의 하부행정기관으로서의 성격만 두드러지게 가질 때 사용하던 용어를 그대로 쓴 것으로서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므로 위의 의미를 그대로 조문화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과거 직할시를 광역시로 바꾸면서 그러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지방자치법 총칙에서 그러한 용어를 정비하지 않은 것은 저의가 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독립적인 지위에 있다. 국가와 자치단체는 각자가 맡은 사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한다. 이러한 사무처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독자적인 조직과 재정을 운영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책임도 자신이 담당한다.

다만, 자치단체의 사무 즉 고유사무의 설정은 국가가 법률로 하게 되며 고유사무에 대해서도 국가의 조언, 권고, 지도 및 이를 위한 자료제출요구, 재정 및 기술지원을 허용하고 있는데(제166조8), 이는 아직도 국가가 자치단체에 대해 후견인적 위치에 머물고 싶어 하는 점을 나타낸다.

국가나 국가기관은 자치단체에 대해 관여하려면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과거에는 예컨대 대통령훈령(대표적 예를 들면 보안업무규정)이 당연히 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으로 여기고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은 더구나 말할 것도 없이 자치단체에 적용되는 것으로 여겼지만 법령의 형식을 갖고 있어도 법률의 위임근거가 없는 것은 훈령적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자치단체를 기속하지 못한다.

국가의 관여는 사항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 자치법규는 헌법에서부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조례·규칙의 보고의무(제28조)와 재의요구지시(제172조) 등이 인정되고 특히 지방재정에 있어서는 지역별 경제력의 차이로 지방세 수입이 격차를 보이기 때문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지방재정 조정제도를 운영하고 각종 간섭과 통제를 실시하며, 행정조직과 정원 운영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9장은 아예 통째로 국가의 지도, 감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자치단체는 법률의 근거가 있지만 하면 국가의 무제한적인 간섭을 받게 되어 있지만 정부는 정책적으로 그러한 관여를 줄여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8) 제166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정지원이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자치단체의 수장이라는 지위 외에 지방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하부집행기관으로서 국가의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지위 또한 갖는다. 이 경우는 지방의회 등 지방자치의 요소는 배제되어 있는데 국가가 분야별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일일이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에 속한 공무원 인력을 활용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장을 국가의 지방행정의 장(정부조직법 제22조제3항)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기관위임사무를 대폭 이양하면 이러한 점은 많이 달라지리라 본다.

4.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시·도와 시·군·자치구는 각자 독립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각자에게 부여된 고유사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한다.

그러나 시·도는 상급자치단체로서 국가를 대신하여 시·군·자치구에 대해 국가가 자치단체에 대해 갖는 권한을 갖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 점에서는 대등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국가가 250여개에 달하는 기초자치단체를 직접 일일이 상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인데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다. 광역자치단체 폐지 및 기초자치단체의 통폐합을 통한 숫자 감축이 논의되는 것도 이러한 점과 관계가 있다.

5. 지방자치단체의 하부행정기관

제3조제3항과 제4항은 자치단체의 하부행정기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6장 집행기관의 제4절에서 하부행정기관에 대해 다시 규정하고 있고 제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도 하부행정조직에 관한 사항이어서 법체계상 다소 혼란스러운 점이 있다.

어쨌든 기초자치단체의 하부에는 단순한 행정기관으로서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그리고 통·반(이는 법령에 의한 조직이 아니고 법령에 근거하여 조례에 의한 조직이다) 및 리가 있다. 2009년에는 인구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의 면(이를 “행정면”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도록 하고,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의 동·리(이를 “행정동·리”라 한다)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행정동·리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갖는 의미

지방자치단체는 고유한 사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즉, 원칙적으로 국가의 유지나 존립에 관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주민들의 바로 곁에 위치한 자치단체가 제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고 민주적 원리에도 부합되며 행정능률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지방자치가 명목적으로 실시되던 기간에는 자치단체는 국가의 일선 행정기관의 지위에서 국가에 배정된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데 주력하였다.

행정사무는 자기의 책임과 권한 아래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국가의 광범위한 지도 감독을 받으면서 수행하는 사무로서는 지방자치의 이상을 실현시키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의 복원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구성과 단체장 직선의 쟁취에 너무 많은 힘을 쏟은 결과 가장 중요한 사무의 획득에는 소홀함을 보여 주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로서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자치사무(고유사무)외에 국가의 하부행정기관의 지위에서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위임사무를 가지고 있는데 그밖에 강학상 단체위임사무의 개념이 논의되고 있다.

지방자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자치단체가 자신의 책임과 권한 아래 수행하는 자치사무의 범위를 확충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사무의 배분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 사무처리의 기본원칙

법 제8조에서는 자치단체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유의할 사항을 언급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주민 편의 및 복리증진 노력의무, 조직과 운영의 합리화의무, 규모의 적정화 의무, 법령 또는 상급 자치단체 조례에 위반한 사무처리 금지의무 등으로 되어 있다.

이는 국가 위주의 사고에 치우쳐 있다는 느낌을 주며 실무적으로 별 의미가 없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법령 준수 의무는 자치사무가 법령에 의하여 주어지고 자치단체도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은 당연하다는 점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상급 자치단체 조례 준수의무의 경우를 보면, 상급 자치단체는 하급 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가를 대신하여 지도 감독을 하는 지위에 있다고 본 것이지만, 상하 자치단체 사이에 언제나 그러한 관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해석상 주의를 요한다.

3. 자치사무 확보에 관한 제9조의 의미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에서는 자치사무와 함께 법령에 의하여 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언급하고 있으며 후자는 이른바 단체위임사무를 일컫는다고 강학상 설명되지만 단체위임사무란 그 개념이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중간에 해당하는 애매함을 보이고 우리 실정법상 단체위임사무에 해당하는 사무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인정할 실익이 없다.

따라서 같은 조 제2항에 열거된 사무는 이를 자치사무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제2항의 규정방식은 이른바 예시적 열거주의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6개 분야, 57개 사무(각목의 숫자를 기준으로 한 것임)를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개별 법률에 따른다는 단서규정에 따라 동항 각호의 사무가 바로 자치사무가 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이것이 없더라도 동항에 열거된 것만으로는 사무가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동항의 규정은 자치사무의 범주를 설정한 가이드라인에 불과한 것이다. 결국 지방자치법 제9조는 자치사무의 확충에 관한 정부(좁게 말하면 행정자치부)의 희망사항을 나타낸 것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사무구분은 개별 법률의 규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사무는 이른바 존립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행정주체로서 존립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조직하고 의사결정과정을 마련하며 필요한 재정적, 인적 수단을 갖추기 위한 사무를 의미한다고 한다(따라서 이 사무는 시·도와 시·군·자치구 사이의 사무 배분에 있어 양자 모두에 배분하여야 할 사무이다 : 제10조제1항 단서 참조)

그리고 제9조제2항제2호의 경우를 보면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들고 있는데 이는 헌법에 나타난 자치사무 전체의 정의로서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와 흡사하고 같은 호 각목에서 이를 다시 반복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 이하에서도 매우 포괄적인 사무들을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동항전체의 규정방식은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여 이를 기준으로 특정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국가사무인지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4. 자치사무 구분의 법적 기준

각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국가사무인지 자치사무인지는 일단 그 개별 법률의 사무수행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즉, 사무수행주체가 국가, 정부, 특정한 부처 또는 특정한 부처의 장(장관)으로 나타나 있으면 그 사무는 일단 국가사무이고 사무수행주체가 시·도, 시·군·자치구 (이렇게 표현된 법률은 실제 거의 없다. 이는 자치단체내에서 사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은 집행부이기 때문이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대부분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으로 되어 있으면 이는 자치사무를 의미 한다고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과거 지방자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던 시기에 제정된 법률을 보면 사무수행 주체가 시·도지사 등으로 표현되어 있더라도 이는 국가사무이고 시도지사 등은 실제 사무를 담당하는 단위를 나타낸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는 예컨대 세법에서 국세청장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관할 세무서장이라고 규정한 것과 같은 취지이다. 판례도 법률에서 사무수행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규정하였더라도 그 사무의 성질이 국가사무,

즉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수행되어야 할 사무라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바로 기관위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통상적으로 기관위임사무의 규정방식은 법률에서 특정부처장관의 권한으로 나타내고 이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며 같은 법 시행령에서 법 제○조의 권한은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제정된 대부분의 법률은 사무수행주체에 따라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를 구분 짓고 있으므로 거기에 따르면 된다.

5. 기관위임사무의 성격과 특성

자치단체에서는 자치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이고, 국가사무는 국가기관이 수행하도록 하여 상호간에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전국에 걸쳐 있는 업무가 국가의 업무일 경우 자치단체의 신세를 지지 않으려면 국가가 지방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얼마 되지도 않는 업무량을 별도의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은 비경제적이다. 따라서 국세징수업무나 체신업무처럼 업무량이 현저히 많은 경우에만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고 그 밖의 경우는 기왕에 전국에 걸쳐 설치되고 여러 가지 분야의 행정업무를 자치사무로 수행하는 자치단체에 그 처리를 위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자 한다. 이 경우 자치단체는 국가의 일선행정기관의 지위에 놓고 지방의회 등 자치사무를 감시·통제하는 지방의회 등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수행에는 간섭을 하지 못한다.

위 지방자치법 제102조는 이러한 점을 명시한 것이고, 이 경우 자치단체의 장은 자치사무를 수행하는 지위와 달리 국가의 하부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보통지방행정기관).

한편 국가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관하여 정부조직법에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6조에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고 또 제22조에서는 행정각부의 장이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여러 가지 종합행정을 수행하는 자치단체에서 국가사무를 위임 받아 수행할 경우 각 부서 간 행정협의 내지 협조가 잘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과거 지방자치가 명목적 수준에 머물러 있을 당시 새로운 행정사무가 대거 신설되는 과정에서 국가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방식을 취하였는데 그 결과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의 대부분은 기관 위임사무로서 자치단체는 국가의 하부기관으로 인상이 지워져 지방자치의 이념을 더욱 약화시켰다. 일본의 경우에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였는데 기관위임사무가 자치단체 전체사무의 7할을 차지하는 현상을 비꼬아 3할자치라고 하기도 하였다.

아무튼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사무로서 국가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사전 사후 통제를 가하고 있다.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과 주민참여제도

1.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주민은 자치권, 구역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3대 구성요소이다. 이를 인적 구성요소라고 하며, 지방자치단체 운영주체이기도 하다.

주민은 주소를 가질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주소란 주민등록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지를 의미한다.

주민은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주민이면서 국가의 국민의 지위를 함께 갖는다. 이점은 구역의 경우와 유사하다.

주민이 되려면 주민등록지의 변경에 의하면 되고 그밖에 별도의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요하지 않는다.

2. 지방자치에서 주민참여의 기능

우리 헌법재판소가 “지방자치제도는 현대 입헌민주국가의 통치원리인 권력분립 및 통제·법치주의·기본권보장 등의 체원리를 주민의 직접적인 관심과 참여 속에 구현시킬 수 있어 바로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주민의 자치의식과 참여의식만 제고된다면 권력분립원리의 지방에서의 실현을 가져다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지방의 개성 및 특성과 다양성을 국가전체의 발전으로 승화시킬 수 있고, 나아가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선거권·공무담임권 등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정치요체이며 현대의 다원적복합사회가 요구하는 정치적 다원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이념 구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다”고 밝혔듯이, 지방자치를 민주주의의 이념실현을 위한 제도로 이해할 때 주민의 참여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 간접민주주의의 보완기능 : 대의적 민주주의하에서 주민의 대표가 그들을 선출하여준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이나 집행을 할 때, 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민주정치의 실현을 추구하게 됨.

- 책임행정의 확보 : 지방행정기관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으로 주민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가했을 때 주민이 직접 그 시정을 요구하며 책임을 묻게 함으로써 책임행정의 수행을 가능하게 함.
- 지방행정의 독선화 방지 : 행정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행정관료에 의한 행정의 독선화 여지는 크고, 전문성을 보유 못한 주민들은 이에 무방비상태로 놓이게 되는 바,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적극적인 감시와 통제가 제도화됨으로써 지방관료에 의한 독선적인 행정수행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음.
- 행정의 효율성제고 : 주민의 참여가 기반이 된 사항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인 이해와 협조는 행정의 효율성에 기여하게 됨.
- 주민에 대한 민주주의 교육기회부여 :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가 활발할수록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식이 성숙하고 공사익에 대한 분별을 높여줌으로써 성숙한 시민의식에 기여하고 민주의식을 향상시킴.

3. 주민의 기본적 권리

주민들은 국민의 지위에서 헌법상 누리는 기본권과 같은 강력하고 체계를 갖춘 권리는 아니지만 지방자치법 등에서 보장하는 일정한 권리를 가진다.

지방자치법 제13조 이하에 규정된 제반 권리가 그것이다.

우선 제13조는 주민들의 자치단체 재산 및 공공시설 이용권과 균등한 행정서비스를 누릴 권리, 의회의원 및 단체장 선거권을 갖는다는 점을 선언하고 이어서 주민투표권, 조례 제정 개폐청구권, 감사청구권, 주민소송 및 주민소환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문에서 규정하였으며 특히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은 규정사항이 많기 때문에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등에 정하여진 피선거권이 있다.

여기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 주민투표권은 전통적인 참정권에 해당하고 조례제정 등 청구권, 감사청구권, 주민소환청구권 및 주민소송권은 지방자치법에 인정된 특수한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하겠다(그 중 조례제정 등 청구권은 주민발안의 성격을 갖는다).

제5절 조례와 규칙

1. 조례의 종류와 규율범위

헌법이나 지방자치법이 예정하고 있는 조례는 자치조례이다. 그밖에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즉 법령에서 어떤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를 위임조례라고 한다.

가. 위임조례의 규율범위

헌법은 법률관계를 원칙적으로 법률로 규율하도록 하되(의회주의와 법치주의에 따라),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과 총리령 부령에서도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조례도 법규의 일종이기 때문에 법령에서 조례로 어떤 사항을 정하도록 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자치단체는 그 법령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

위임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범위 이탈 조례는 재의요구 대상도 될 것이고 대법원에 의하여 상위법령 위반 조례로서 당해 사건에 관하여 적용을 거부당하게 될 것이다.

위임조례는 국가의 법령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제정되는 것이므로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여야 할 사항은 원칙적으로 조례로 위임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위임조례 제정 근거를 마련하면서 국가 각 부처는 이른바 표준조례를 제정하여 시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는 입법 경제적으로도 바람직스럽지 못하고 지방의 자치입법권 신장과는 거리가 멀다.

위임조례에 있어 또 하나 유의할 사항은 위임입법의 법리에 있어 조례에는 포괄적 위임도 허용된다는 것이다(대판 1995.6.30. 93 추 83 경상북도의회에서 의증언감정등에 관한 조례안 무효확인소송, 헌법재판소 92 헌마 264 병합 결정 1995.4.20).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대의제를 어느 정도 실현할 수 있다는 취지이나 자치사무의 경우에도 권리 의무 사항에 관하여는 위임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고수하는데 대한 보상의 느낌을 갖게 한다.

위임조례는 국가사무에 관하여서도 제정될 수 있다. 따라서 기관위임 사무에 관하여 별도 규정이 없으면 자치단체장의 규칙으로 정하되, 명문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여도 법리에 어긋난 것은 아니다.

나. 자치조례의 규율범위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법령의 명문 규정은 물론 법령의 전체적 입법취지와 모순 저촉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한다.

법령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보면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닌 사무 또는 조례규정 대상사무가 아닌 사무에 관하여 규정한 경우 둘째, 명문의 법령에 위반한 경우로서 법령으로 이미 규정하고 있는 규제기준보다 강한 규제내용을 규정한 경우와 법령에 위임이 있는 경우 그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여 규정한 경우, 법령으로 규정할 것을 명백히 하고 있거나 조례로 규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경우, 조례로써 규정할 사항에 대하여 법령으로 조건 또는 제한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 그 조건 또는 제한기준에 위반한 경우 셋째, 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 또는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을 규정한 경우 넷째, 구체적 규정위반 여부는 불명확하더라도 법령의 전체적 입법취지에 맞지 아니하거나 법령의 전체적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주민의 권리의무나 벌칙과 직결되는 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입법의 소관원칙상 조례가 아닌 상위법령에 규정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법령이라 함은 법률과 하위법령 외에 법령의 위임에 의한 행정 규칙 중 법규성을 지닌 것, 이른바 법규 보충적 행정규칙 등도 포함하는 의미로 새겨야 한다(2001헌라1 강남구청과 대통령간의 권한쟁의).

조례는 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서만 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조례의 규율대상이 아니다. 다만 법령에서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 특별히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는 위에서 본 위임조례이기 때문에 허용된다고 본다.

그리고 상급 자치단체가 하급 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도 없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도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었다면 허용된다고 본다.

이를 이른바 통제조례라고 하는데 일본의 종전 지방자치법에서처럼 일반적 근거규정을 두지는 않았고 건축법에서 시·군·자치구의 사무에 대한 조례제정권을 시·도에 부여한 경우를 찾아 볼 수 있는데 이는 일본에서도 통제조례가 지방자치의 이념에 반한다는 주장이 우세하여 폐지한 점에 비추어 재검토되어야 한다(최근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서 종전의 시·도 사무를 대부분 시·군·[자치구로 이양하면서 조례만큼은 종전처럼 시·도에서 관장하도록 하려는 규정을 시행령에 담으려 했으나 심사과정에서 무산된 일이 있다. 물론 똑같은 내용의 조례를 여러 시·군·자치구에서 제정하는 것은 낭비라 하겠다. 그러나 그런 정도라면 국가의 법령에서 일괄적으로 정하거나 대강을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만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한편 국가의 법령에서 침묵하고 있는 사항, 이른바 국정의 공백상태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보겠지만(법령에서 전혀 아무 것도 정하지 않았다면 조례의 규율대상인 자치사무 자체가 존재하는지 의문이다. 즉 자치사무도 법령에 의하여서만 창설되고 조례로는 창설이 금지된다고 본다면 국정의 공백상태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대처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국정공백부분에 대한 조례제정의 허부를 논의하는 이상 조례로 자치사무를 창설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주민의 권리 의무나 벌칙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위 제22조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헌법상의 여러 원칙 중 법률유보 원칙(제37조 제2항)과 죄형법정주의 내지 조세법률주의만을 의식하고 이른바 제도적 보장으로서의 지방자치의 이념을 도외시한 해석으로서 조례에 의한 벌칙제정과 의무의 부과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조례제정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의 예시〉

법령구분	내 용	근거법령
지 방 자 치 법	• 행정운영상 동·리 설치 • 행정동·리의 하부조직 • 사무소 소재지 변경, 설치 •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지방의회, 위원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 • 지방의회 위원회의 설치 • 기타 위원회에 관한 사항 •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및 구성 • 의회의 사무직원 정수 • 사무의 위임, 위탁 • 소속직원의 임면권 • 직속기관의 설치 • 사업소의 설치 • 출장소의 설치 •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 • 지방채무이행, 채권관리 •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징수 • 사용료, 분담금 포탈자에 대한 과태료 • 재산의 보유, 자금의 적립 및 기금설치 • 공공시설의 설치	제4조제5항 제4조제6항 제6조제1항 제39조제2항 제42조제2항 제56조제1항 제62조 제90조 제91조제1항 제104조 제105조 제113조 제114조 제115조 제116조 제124조제4항, 제5항 제139조제1항 제139조제2항 제142조제2항 제144조제2항
지 방 자 치 법 시 행 령	• 조례·규칙의 공포에 관한 사항 • 지방의회의원의 일비와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 • 자문기관의 설치 • 감사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	제32조 제33조 제80조 제83조

2. 규칙의 종류와 규율범위

규칙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우선 조례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규칙이 있고(조례위임규칙), 법령에서 어떤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이에 따라 제정된 규칙(법령위임규칙)도 있을 수 있다(국가사무의 경우 규칙이 제정되려면 그 사무가 기관위임된 경우일 텐데 이 경우는 별도의 위임이 없어도 해석상 당연히

규칙의 규율대상이 된다. 문제는 자치사무에 대하여 법령에서 조례 대신 규칙으로 정하도록 특칙을 둘 수 있느냐가 문제된다. 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더욱 제한하는 이러한 조치는 바람직스럽지 못함은 분명하나 법리적으로 금지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칙도 있을 수 있고(조례 집행규칙), 또 위에서 말한 대로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 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을 제정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기관위임규칙).

규칙은 이러한 성격에 따라 그 규율범위가 정해진다.

먼저 조례위임규칙이나 조례집행규칙은 헌법상 법률의 하위법령인 위임 명령이나 집행명령과 같은 취지로 보면 된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실제 조례집행규칙이란 집행명령의 경우처럼 그 중요성이 낮아지고 있다. 법령위임규칙은 위임조례의 법리에 따르면 되지만 그 사례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

기관위임규칙은 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위임이 없더라도 기관위임사무를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행정규칙에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도 있다.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의 예시〉

법령 구분	내 용	근거법령
지 방 자 치 법	• 소속공무원의 복무, 징계, 교육훈련	제105조
지 방 자 치 법 시 행 령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인계 • 이장의 임명절차 등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제70조 제81조제2항
지 방 재 정 법	• 국가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 징수 • 세입의 징수와 납기	제31조 제61조
지방공무원법	• 제안제도의 운영	제78조제3항
지 방 공 무 원 임 용 령	• 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공개경쟁 신규임용 시험합격자의 등록에 관한 사항 • 신규임용후보자의 명부작성에 관한 사항 • 특별임용요건의 세부사항 규정	제4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7조제1항

3. 자치법규의 효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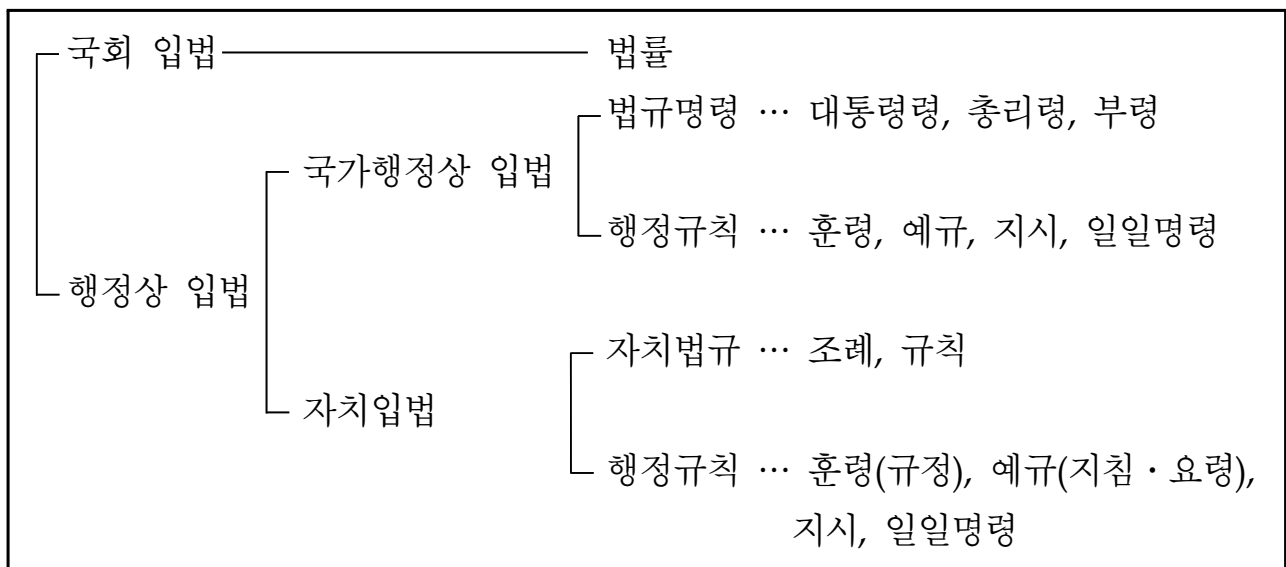
가. 자치법규 상호간의 효력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 사이의 우열관계는 앞에서 보았듯이 유형별로 차이가 있다. 법령에서 조례나 규칙으로 위임한 바에 따라 제정된 조례와 규칙은 동급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조례에서 규칙에 위임한 바에 따라 제정된 규칙은 당연히 조례의 하위에 놓이게 된다.

기관위임규칙과 같은 경우는 조례와 우열관계를 논의할 필요가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고유사무에 관하여 법률의 위임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제정하는 조례, 즉 직권조례의 경우에는 규칙보다 조례가 상위에 있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입법의 종류〉



나. 공간적 효력

자치법규의 공간적 효력의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치법규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서도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예로서 다음을 들 수 있다.

- 공공시설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한 경우(「지방자치법」 제144조제3항)

- 소관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하는 경우(『지방자치법』 제151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하는 경우(『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다. 시간적 효력

자치법규는 법령과 마찬가지로 공포·시행되어 실효 또는 폐지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자치법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하며(지방자치법 제26조제7항), 원칙적으로 시행 이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친다. 다만, 예외적으로 주민에게 이익을 주는 것은 소급 효가 인정될 수 있지만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의 부과 또는 벌칙을 정하는 자치법규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라. 인적 효력

자치법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들어 온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특별한 관계를 가진 자(공공시설의 이용자, 공물의 특별허가사용자 등)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친다.

지방세 중 공동세 등에 관한 자치법규의 효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도 직·간접적으로 미칠 수 있으며, 관광지 관리조례 등의 경우처럼 외지에서 온 다른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4. 상급자치단체 조례 등 우위의 원칙

조례는 자신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기 때문에 하급 자치단체 조례에 대하여 상급자치단체가 자신의 조례가 우월하다고 주장할 근거가 없다.

그리고 조례가 서로 충돌하여 상하관계가 문제될 소지도 거의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24조는 그 의미를 오해할 수가 있다.

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국법 체계의 일부로서 상하관계에 놓인 상급 법령에 위반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그런데 상급 자치단체인 시·도는 가끔 시·군·자치구에 대하여 국가를 대신하는 지위에 놓일 수 있다. 이 경우 시·군·자치구의 조례 등은 시·도의 조례 등에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는 논리가 성립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실정법상 이러한 경우는 많지 않고 따라서 위 조문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본다.

예컨대 어떤 도와 그 소속 시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중소기업 지원센터 건물을 지었을 때 그 건물의 임대료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 시 조례와 도 조례가 다를 경우 도 조례가 우선한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이는 대등한 지위에서 건물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고(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지분이 다른 경우 동일 것이다) 따라서 상급 조례의 우위 운운 여지가 없는 것이다.

5. 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법 제22조 단서에서는 조례로 벌칙을 규정하기 위하여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여기의 벌칙에 과태료가 포함되는지가 문제이다. 문언상 과태료도 넓은 의미의 벌칙에 해당하고 제27조는 제22조 단서에 대한 특례규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제22조 단서에서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과태료를 규정하기 전에 조례에서 어떠한 위반행위의 요건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위반행위는 의무의 부과를 전제로 하고 이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의무 부과를 위한 법률의 위임조항을 두면서 그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지 아니한 법률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독립적인 과태료 부과근거로서의 제27조는 그 의미를 거의 찾기 어렵다.

결국 제27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22조 단서를 완화하여 일정한 경우 법률의 위임 없이도 조례에서 의무위반을 정할 여지를 열어 두어야 하는 것이다.

과태료 부과절차는 일반적인 경우와 유사한데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재판제도와 연결된 현행제도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아 최근 법무부와 협의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을 하였다.

여기에 의하면 과태료는 행정관청이 부과하고 불복 시 과태료재판으로 넘어가되, 행정관청이 충분한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고(현행 제도는 당초의 과태료처분은 없던 것이 되어 행정관청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확정된 과태료는 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징수하고 그 수입으로 귀속시키도록 하고 있다(현재는 과태료재판으로 확정된 경우 검사가 집행하고 국고로 귀속 : 지방재정법 제28조 참조).

제6절 자치법규에 대한 재의요구와 대법원제소

1. 조례의 공포 및 재의요구

법 제26조는 조례의 제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제정절차라기보다는 공포 및 재의요구절차라고 보는 것이 옳다(제안과 의회심의 등 제정의 핵심절차는 빠져 있으므로).

이는 헌법 제53조에 규정된 법률의 이송 및 재의요구절차와 유사하다.

조례안은 의결 후 5일 이내에 집행부(자치단체의 장)로 이송하고 이송 후 20일 이내에 공포 또는 재의요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종전에는 15일이었으나 조례안 보고제도(법 제28조) 및 재의요구지시제도(제172조)의 운영과 관련하여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5일을 연장시킨 것이다(중앙정부도 국회 이송법률안의 공포 또는 재의요구여부 결정에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차관 회의를 생략하고 바로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에는 국회법 제165조와 같은 기간계산 시 초일산입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157조의 규정에 따라 초일 산입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는 집행부가 갖는 의회 견제수단이다. 재의요구된 조례안은 다시 찬반투표에 부쳐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되어야 당초의 효력을 유지한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국회와 정부 사이에는 이러한 의결정족수 강화가 큰 의미를 갖지만 지방에서는 재의요구가 의원들을 자극하여 당초 의결시보다 더 많은 표차로 재의결되는 경우가 자주 있어 견제의 의미를 살리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재의결된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되는데 이는 더 이상 재의요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따라서 집행부에서 재의요구하여 재의결된 조례를 뒤늦게 상급 자치단체에서 재의요구지시를 한 경우 그 지시는 별 의미가 없다). 재의결 정족수를 갖추지 못한 조례안은 폐기된다.

재의요구제도는 집행부의 강력한 견제수단이라는 전제 아래 일부거부는 금지된다는 것이 우리 법의 태도이고 학설도 일치한다.

재의요구와 관련하여 실무상 여러 가지 경우가 발생한다.

먼저 재의요구를 받은 의회가 그 원래의 조례안은 방치해 두고 다른 대안을 새로 발의하여 의결할 수 있느냐이다. 종전에는 재의요구된 의안은 반드시 의결에 부칠 것을 규정한 일도 있었으나 이는 훈시규정이었고 당초안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그 의안은 방치해 두고 새로 발의한 의안을 의결하여도 무방하고 국회에서도 이러한 방법을 자주 이용하였다. 당초안은 대체안 의결후에는 상정이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된다. 그리고 이때 대체안의 의결정족수는 새로운 일반의안이므로 정족수도 일반정족수에 의한다. 이 대체안은 설령 특별정족수로 의결되었더라도 “확정”되지는 아니하며 여기에 대해 다시 재의요구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음으로 재의요구지시를 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단체장이 재의요구를 하지 않고 20일을 경과한 후 의회의장도 공포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사전에 묵계를 두고(즉 확정된 조례안을 공포만 보류시켜 두고)새로이 조례안을 발의하여 의결할 수 있느냐 인데 확정된 조례안은 의회의장이 언제든지 공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두개의 조례가 병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은 집행부와 의회가 합의하더라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본다.

참고로 예를 들어 “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하였는데 7월 15일자 공보에 공포한 경우 그 시행일이 언제인가를 생각하면, 이 조례는 시행일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법 제26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공포 후 20일이 지난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고 본다.

조례와 규칙의 공포절차는 시행령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령등 공포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유사하다. 2011년 10월 15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공포한 때에는 즉시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방의회의 의장이 조례를 공포한 때에는 이를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하였다.

지 방 자 치 법

제28조(보고)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경우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규칙은 공포예정 15일 전에 시·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그 전문(全文)을 첨부하여 각각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①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訴)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제소의 지시는 제3항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소지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소하여야 한다.

⑥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5항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법령에 위반되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조례안인 경우로서 재의요구지시를 받기 전에 그 조례안을 공포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나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둘 이상의 부처와 관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하면 행정자치부장관이 재의요구 또는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재의요구에 관한 여러 규정간의 관계

법 제26조는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에 관하여 규정하였는데 이와 별도로 법 제107조는 지방의회의 모든 의결안에 대한 일반적 재의요구를 규정하고 제108조는 예산상 집행불가능한 의결의 재의요구의 특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제108조는 실무상 거의 활용가치가 없는 사문화되어야 할 조항이다).

이와 같이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의회를 견제할 광범위하고 무차별적 수단을 규정할 논거가 있는지도 문제이지만 실제 운영현실에서 지방의회는 재의요구를 받으면 더 단합하여 집행부에 대항하기 때문에(중앙정부에서는 과거의 경험을 보면 대통령이 집권당에 대하여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집권당은 정부에 대하여 같은 운명체라는 의식을 갖고 있으나 지방의 경우 정당의 역할 제한과 자치단체장의 영향력 한계 등으로 사정이 다르다) 사실상 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점도 있다.

어쨌든 법 제107조는 모든 의결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규정하면서 여기에 대하여는 재의결에 대한 대법원제소제도를 두고 있다.

대법원제소제도는 중앙의 법률안 재의요구의 경우와는 크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서 의결안건 중 조례에 대하여 대법원제소제도가 가장 빈번히 활용되고 있다.

법 제 107조의 재의요구의 요건은 월권 위법 또는 현저한 공익 침해의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며 대법원제소는 그중에서도 법령위반의 경우에 한정시키고 있다.

대법원제소의 효과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은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이는 당해 조례가 집행되기도 전에 그 효력에 관하여 다툴 수 있게 한 취지에 따라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고 그 효과로서 당해 조례의 실효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강력한 규범통제제도에 속한다.

법과 재판실무상 이처럼 강력한 효과를 가진 제소제도를 확립시킨 배경에는 지방의회에 대한 강한 불신이 깔려 있고 국가의 후견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소송은 이른바 객관소송의 유형에 속하며 사법의 한계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학계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지 아니하여 이론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남아 있다. 대법원제소에는 집행정지가 부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법 제26조의 재의요구와 제107조의 재의요구가 그 요건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자에 의한 재의요구가 있는 경우 대법원제소가 가능한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으나 대법원판례는 이를 긍정한다(99추23 판결 1999.4.27).

한편 법 제172조는 국가나 상급 자치단체의 지도 감독 차원의 재의요구 지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재의요구지시에 불응할 경우 대처방법에 문제가 있었으나 2005년 개정으로 재의요구지시 자체를 거부하여 재의요구나 재의결이 없이 공포되더라도 상급기관에서는 직접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제172조 제7항)

3. 절차

가. 재의안 환부

조례안 재의요구안은 그 요구권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교육감이 서명한 후 지방의회에 환부한다. 재의요구는 지방의회가 폐회 중일 때에도 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나. 재의요구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26조, 제107조 또는 제108조에 따라 재의를 요구한 경우에 그 사실과 재의 결과를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72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군 및 자치구의 지방의회 의결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게 한 경우나 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행정자치부장관과 주무부장관에게 즉시 보고(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해야 한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4조제2호).

다. 지방의회의 접수와 배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의 재의요구안이 지방의회에 접수되면(필요한 부수를 미리 유인하여 제출) 의장은 이를 지체 없이 소관위원회와 그 밖의 관련 부서에 알리고 그 재의요구안을 의원에게 배부한다.

라. 본회의 상정

재의를 요구받은 지방의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례안을 재의에 부쳐야 한다.

이 경우 폐회 또는 휴회 중인 기간과 초일은 이를 산입하지 않으며 재의요구안은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조례안재의의 건”으로 의사일정을 잡아 상정·처리한다. 본회의에 동 안건이 상정되면 재의요구자로부터 재의요구 이유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마. 본회의 표결

본회의는 재의요구된 조례안을 재의에 붙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재의에 붙인 결과 위와 같이 의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조례안은 폐기된다.

재의 시에 원칙적으로 수정가결을 할 수는 없으나, 재의요구가 타당하여 조례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일단 재의요구된 조례안은 부결시키고 새로운 조례안을 다시 제안하여 소관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바. 재의결과 이송 통지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재의결되어 그 조례안이 조례로서 확정되면 사무처(시·군·자치구는 사무국 또는 사무과)는 이를 재의요구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에게 이송한다. 그러나 재의에 붙인 결과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동 조례안은 폐기되었음을 재의요구자에게 통지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결정 통지를 받으면 그 재의결과를 시·도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자치구는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해야 한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4조제2호).

☼ 예산안에 대한 재의요구 가능 여부

예산안에 대한 재의요구는 「지방자치법」 제107조에 의하든 제108조에 의하든 삭감된 예산을 살려내려는 의도이거나 증액된 예산을 다시 삭감시키려는 의도에서 행사하게 될 것인 바, 삭감된 예산을 살리는 경우에는 재의결된 의안이 재의결(확정)되거나 부결(폐기)되더라도 결국 새로운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으면, 삭감된 예산을 다시 살릴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실익이 전혀 없고, 증액된 예산을 다시 삭감하는 경우에는 집행부의 사전 동의를 받아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집행부가 이를 다시 재의요구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설득력이 전혀 없는 것이므로, 예산안에 대한 재의요구는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견제수단으로서 부적합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제 행사될 여지가 거의 없다.

4. 대법원제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교육감은 지방의회에서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을 「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며, 소송절차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소송물에 따라 취소소송 또는 무효등확인소송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및 제46조).

❶ 대법원 계류 중인 위법 조례의 대체입법 가능 여부

재의결된 조례안이 대법원에 제소되어 공포가 보류된 상태에서 무효확인 판결이 날 경우, 지방의회의 위상이 실추될 것을 우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 취하를 요구하면서, 그 대신 그 조례의 공포를 포기하고 새로 조례안을 발의하여 의결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경우 기존 조례의 공포가 보류된 상태에서 대체조례의 제정을 추진할 수 있는지와 지방의회 측의 제안을 수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 재의결된 조례는 조례로서 확정되어 있고, 그 공포만이 보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조례가 공포·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며, 다른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하여 의결하더라도 확정 조례의 공포·시행을 저지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 ▶ 결국 대법원제소에 이르기 전에 지방의회와 집행부 측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원만히 처리해야 할 것이고, 일단 대법원에 제소되었다면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 그 조례가 무효로 확인된 후에 대체조례를 발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제2장 자치법규 제·개정

제1절 체 계 / 39

제2절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 방식 / 48

제3절 조 례 / 59

제4절 규 칙 / 134

제5절 훈령 및 예규 / 164

제6절 고시 및 공고 / 185

제1절 체 계

1. 자치법규의 제명

가. 제명을 표현하는 방식

- 자치법규의 제명은 법규의 내용을 요약하여 간결하게 작성하며, 필요할 때에는 “등” 또는 “.”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나, 제명이 긴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 “등”을 사용하기 보다는 주된 내용을 대표하는 것을 열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일반적으로 조례의 제명은 「○○ 조례」 또는 「○○에 관한 조례」로 하고, 규칙의 제명은 「○○ 조례 시행규칙」 또는 「○○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으로 한다.

나. 제명의 띄어쓰기⁹⁾

- 법령 제명의 경우 2004년까지는 법제처의 「법령 입안 심사기준」 및 국회의 「국회법률안입안기준」에서 한글 맞춤법의 예외로 인정함에 따라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붙여 써 왔고, 자치법규의 경우에도 법령의 영향을 받아 그 동안 제명을 모두 붙여서 표시하여 왔다.
- 그런데, 종전의 관행은 법령 제명에 포함된 조사, 어미, 부사 및 의존 명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용을 붙여 쓰고 있어 어문규범의 일반원칙에 어긋나고, 가독성이 현저히 떨어져 일반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관계로 법제처는 국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 2005년 1월 1일 이후 제·개정하는 법령부터 그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자치법규의 제명도 띄어쓰기를 하여야 한다.

9) 법제처 - 법령해석정보 - 알기쉬운법령 - 자료실 참조(<http://www.moleg.go.kr/lawinfo/easylaw/data>)

I. 법령제명 띄어쓰기의 기준

1. 법령명은 단어 별로 띄어 쓴다.

- 법령명에 포함된 조사 뒤, 어미 뒤, 부사 앞뒤, 의존 명사 앞(의존 명사 뒤에 조사가 오지 않으면 의존 명사 뒤에서도 띄)에서 반드시 띄어쓰기로 표기한다.
- 조사, 어미, 부사, 의존 명사가 없이 명사(복합명사)만으로 이루어진 법령명은 최대 8음절까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국립국어연구원의 의견에 따르면, 보통 사람이 한 번에 독해할 수 있는 적절한 음절의 수는 8음절 내외임.

2. 예외적으로 8음절을 초과하는 복합명사로 이루어진 조직 또는 단체 (공단, 공사, 조합 등) 및 기금의 명칭을 포함하는 법령명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명칭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고, 하나의 명사로 인식 되는 것이 통례이므로 붙여 쓴다.

예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3.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 도 하나의 명사의 성격을 갖고, “법률”의 제명과 같이 붙여 쓰는 경우 8음절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률”과 달리 “시행령”, “시행규칙”은 띄어쓰기로 표기한다.

4. 법령의 본문 중에서 다른 법령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 법령명 앞뒤에 낫표(「」)를 사용하여 본문의 다른 부분과 구별할 수 있도록 한다.

- 일반 본문의 문장 내용과 구분할 수 있고, 법의 고유명사로서 특성을 표시하기 위하여 낫표를 사용한다. 이는 법령명의 띄어쓰기로 인하여 하나의 고유한 법령명이 아닌 어떤 사항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로 오해될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예컨대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법률 ← ‘액화석유가스에관한법률’이 아닌 ‘액화석유가스’에 관련된 일반적인 법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될 우려

- 띄어쓰기 대상이 아닌 붙여쓰기로 표기하는 법령의 경우에도 본문에서 인용되는 경우 예외 없이 앞뒤에 낫표를 사용한다.

예시) 「민법」, 「증권거래법」, 「도로교통법」

-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명이 아닌 경우, 즉 법령집에서 법령 제목, 개정지시문, 의결주문, 공포문 등에서 낫표를 부기하지 아니한다.

예시)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지시문)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전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의결주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통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공포문)

II. 제명 띄어쓰기 표기의 예시

1. 조사와 어미를 포함한 법령명

- 실화책임에관한법률 → 「실화책임에∨관한∨법률」

2. 부사를 포함한 법령명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 ‘미술관진흥법’은 모두 명사이지만, ‘진흥법’이 ‘박물관’과 ‘미술관’ 양쪽에 걸리는 성분이므로, ‘미술관’과 ‘진흥법’을 띄어 쓰도록 함.

3. 의존 명사를 포함한 법령명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4. 부사, 의존 명사, 조사, 어미를 포함한 법령명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호에의한시설과구역
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
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른 시설과 구역 및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5. 8음절을 넘는 명사로 이루어진 법령명

○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경우 10음절이나, 하나의 명칭으로 사용되는 복합명사이므로 예외적으로 붙여 쓰기 인정)

2. 본칙과 부칙, 장·절 등의 구분

가. 본칙과 부칙의 구분

- 법령은 물론이고 자치법규도 본칙과 부칙으로 구성된다. 본칙은 법령의 본체가 되는 부분이고, 부칙은 본칙에 부수하여 법령의 시행일, 적용관계, 기존의 법률관계와 새로운 법률관계간의 연결 및 조정관계, 새로운 법률과 모순·저촉되는 기존법령의 개폐 등을 정하는 부대적 부분이다.
- 부칙과 구별되어야 할 것으로 보칙이 있다. 보칙은 일반적으로 본칙 중에서 보충적 규정을 정하는 부분의 장이나 절의 제목으로 사용된다. 본칙 부분에 대하여는 본칙이라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나 부칙부분은 맨 앞에 반드시 부칙이라고 표시한다.

나. 장·절의 구분

- 자치법규 본칙의 조문수가 많고(통상 조문수가 30조 이상이 되는 경우) 이를 그 성질에 따라 몇 개의 군으로 나누는 것이 법문의 이해에 편리한 때에는 이를 몇 개의 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장은 다시 절·관·목의 순서로 세분 할 수 있다. 특히, 조문수가 많은 경우에는 장 위에 편을 둘 수 있다.

- 장·절 등의 구분은 본칙규정에 한정되고, 부칙은 장·절 등으로 구분하지 아니한다. 장·절 등을 둘 경우에는 그 장·절 등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제목을 붙인다.

3. 조문 및 서식 등

가. 조, 항, 호, 목 등의 구분

- 자치법규를 입안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상 법규문서로 분류되고 있으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은 제3조 제1호에서 “법규문서는 조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누번 일련번호를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법규를 입안할 때에는 법률이나 대통령령 등의 경우와 같이 반드시 조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조문형식이 어떠한 형식인지에 관하여 법령상 명시된 것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규정내용을 조·항·호·목으로 구분하여 기술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규정내용은 우선 조로 나누어 작성하되, 조의 내용을 보다 세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를 항으로 세분하고, 항의 내용을 보다 세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항을 호로 세분하며, 호의 내용을 보다 세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호를 다시 목으로 세분하여 작성하는 형식이 바로 조문형식인 것이다.
- ※ 조는 “제1조, 제2조, 제3조” 등으로 표기하고(§1, §2, §3으로 표기하기도 한다), 인용할 때에도 “제1조, 제2조, 제3조” 등으로 인용한다. 항은 “①, ②, ③” 등으로 표기하되, 인용할 때에는 “제1항, 제2항, 제3항” 등으로 인용한다. 호는 “1., 2., 3.” 등으로 표기하되[(i),(ii),(iii)으로 표기하기도 한다], 인용할 때에는 “제1호, 제2호, 제3호” 등으로 인용한다. 목은 “가., 나., 다.” 등으로 표기하되, 인용할 때에는 “가목, 나목, 다목” 등으로 인용한다.
- 현행 법규는 모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제6조(기준정원의 책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적정한 정원의 범위(이하 “기준정원”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책정한다.

1. 서울특별시의 기준정원은 다음의 산식에 따른다

$$\text{공무원 수} = [-20,573 + (0.00329 \times \text{인구수})] \times 1.10$$

2. 3. (생략)

4. 시의 기준정원은 별표 1, 군의 기준정원은 별표 2의 산식에 따르며, 자치구(이하 “구”라 한다)의 기준정원은 다음 각목의 산식에 따른다.

가. 서울특별시의 구

$$\text{공무원 수} = [613.02082 + (0.00036 \times \text{인구수}) + (24.53364 \times \text{행정동의 수})] \times 1.05$$

나. 광역시의 구

$$\text{공무원 수} = [613.02082 + (0.000509 \times \text{인구수}) + (11.8097 \times \text{행정동의 수})] \times 1.05$$

②~④ (생략)

○ 종전에는 부칙의 경우 그 내용을 항으로 구분(호, 목으로 세분 가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항의 수가 5개를 넘거나 항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로 구분(항, 호, 목으로 세분 가능)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부칙도 본칙과 마찬가지로 조로 구분하고 조에 제목을 붙이되, 조 번호는 제1조부터 새로 시작하도록 하되, 부칙에 시행일 밖에 없는 경우에는 조와 조의 제목을 표시하지 아니하도록 변경되었다.

〈부칙 규정 형식의 예시〉

i) 원칙

제1조(시행일)-----.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3조(○○에 관한 경과조치) ①-----.

②-----.

ii) 시행일 밖에 없는 경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한편, 조문수가 많은 법규의 경우에는 본칙의 여러 조가 장, 절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장의 경우에는 장명을 붙이게 되는데, 장명은 일반적으로 총칙, 본칙(실제로는 본칙이라고 하지 않고 해당 장의 내용을 요약한 내용을 장명으로 한다), 보칙, 별칙 등의 순으로 붙인다.
- 장은 다시 절, 관의 순으로 세분할 수 있으며, 장의 수가 많은 경우에 장의 위에 편을 둘 수 있다. 또한, 본칙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문장으로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별표 또는 별지 서식으로 하여 부칙 다음 쪽에 작성할 수 있다.

나. 조문의 제목 및 내용표기

- 자치법규의 조문에는 그 조문이 무엇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자치법규의 내용을 찾는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문의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하여 제○조 바로 다음에 괄호를 하여 제목을 표시하되, 한 조문에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정하여 그 내용을 요약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조문의 제목을 “(○○ 등)”이라고 표시한다.
- 조문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문장으로 표기하되, 문장으로 표기하기가 곤란한 경우 또는 문장으로 표시하더라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식, 표 또는 그림으로 표기할 수 있고, 규정할 사항의 종류, 성질, 분량 등을 고려하여 당해 조문에서 바로 규정하기가 곤란하거나 조문 내용이 복잡하게 될 경우에는 부칙 다음에 별표, 별도, 부도, 별지서식 등을 만들어 사용한다.

다. 인용조항의 표시

(1) 해당 자치법규를 인용할 경우

- 동일 자치법규에서 그 자치법규 중 다른 조항을 인용할 경우에는 “이 조례”, “이 규칙” 등의 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바로 “제○조 제○항”, “제○조제○호”, “제○조제○항부터 제○항까지” 등과 같이 인용되는 조항만을 표기한다.

(2) 다른 자치법규를 인용할 경우

- 자치법규 중에서 다른 자치법규의 조항을 인용할 경우에는 다른 자치법규의 제명과 조항을 함께 표기하되, 둘 이상의 조항을 인용할 경우에는 “『○○조례』 제○조·제○조 및 제○조”와 같이 다른 법령의 제명 처음 나올 때에만 표기한다.

(3) 해당 법령과 다른 법령을 동시에 인용할 경우

- 해당 자치법규와 다른 자치법규의 조항을 동시에 인용할 경우에는 혼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조례』 제○조·제○조 및 제○조와 이 조례 제○조”라고 표기한다.

(4) 부칙규정에서 조문인용

- 부칙규정에서 해당 자치법규의 본칙규정을 인용할 경우에는 “본칙 제○조”라고 표기하지 아니하고 본칙의 조문만을 명시하고, 당해 법령의 다른 부칙규정을 인용할 경우에는 “부칙 제○조”라고 표기하여 본칙규정을 인용하는 경우와 구별한다.

(5) 조문에 나열된 각 호 중 일부를 인용하는 경우의 표현방식

- 조문에 각 호(예컨대 제1호부터 제5호까지)가 열거되어 있고, 다른 부분에서 각 호중 일부(예컨대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인용하려는 내용만을 표기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로 표현하고, “제1호 부터 제3호까지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표현하지 아니한다.

제○조(제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

1. -----.
2. -----.
3. -----.
4. -----.
5. -----.

라. 별표, 별지서식

(1) 별표, 별지서식의 표기방법

- 별표 또는 별지서식의 제목은 [별표], [별지서식]으로 하고, 법령문 안에서 인용할 때에는 “[]”를 하지 아니하고 별표, 별지 서식”으로 한다.

(2) 별표의 제목

- 별표의 제목에는 본칙의 관련 조·항을 괄호 속에 부기한다(예컨대 “제○조 관련”).

[별표 1]

○○○에 관한 기준(제○조 관련)

(3) 별표상의 기호표시 방식

- 별표에서 규정할 내용이 많을 때에는 적절한 기호를 사용하여 내용을 구분하여 주는 것이 좋은데, 참고로 법령의 경우에는 “1., 가., 1), 가), (1), (가)”의 순서로 표시하고 있다.

[별표 1]

○○○에 관한 기준(제○조 관련)

1. -----

가. -----

1) -----

가) -----

(1) -----

(가) -----

제2절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 방식

1. 기본원칙

- 법규를 제정한 후에 그 법규를 개정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 이 경우에도 법규제정의 경우와 똑 같이 기존 법규의 개정 또는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규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

2. 일부개정과 전부개정

기존 조례나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일부개정의 방법을 택하되, 개정되는 조문 수가 2/3 이상인 경우, 용어·가지번호 등에 관한 전체적 정비가 필요한 경우 또는 해당 조례나 규칙의 핵심부분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전부개정의 방식을 택한다.

3. 전부개정과 폐지·제정(대체입법)

조례나 규칙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개정의 방식과 폐지·제정(대체입법)의 방식 중 어느 방식을 택할 지 여부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신·구 자치입법 간 제도상 동질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부개정방식을 취하고, 제도 자체가 전면적 또는 본질적으로 변형되는 경우에는 대체입법방식을 취한다.

4. 여러 조례의 일괄개정

조례 개정 시에는 개정대상 조례별로 개정조례의 입법을 따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나, 하나의 조례로 다른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방식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른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방식은 극히 제한된 요건 하에서만 사용하는 방식으로서 한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관련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등 경미한 사항의 정리적 개정이 필요한 경우(예 : ○○국 → △△국)에는 ① 개정조례의 부칙에서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거나 ② 관련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일괄 개정하는 방식(예 : A조례의 시행에 따른 B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정책의 일괄실시를 위하여 A·B·C조례 등 관련 조례의 일괄개정이 필요한 때에는 당해 정책과 관련되는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일괄 개정하는 방식(예 : A조례 등 중 개정조례 또는 A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을 사용할 수 있다.

[Q&A] : 자치법규에서 “협의”, “승인” 및 “동의”

- 「협의」는 주로 대등자간에서 상대방의 의사를 구하는 경우에 쓰이고, 「승인」은 하위자가 상위자의 의사를 구하는 경우에 주로 쓰이며, 「동의」는 대등자간의 경우에도 하위자로부터 상위자의 경우에도 쓰이나 하위자에게 “동의를 하여 준다”는 취지로도 쓰인다. 동의와 승인은 상대방의 긍정적 의사표시를 받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이 명백하나 협의의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 「협의」라는 문자의 의미만을 보면 일응 상담만 하면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으나, 법령상의 용어로는 협의가 성립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된 경우가 많다. 같은 의미로서 「합의」라는 말이 있다.

[Q&A] : 자치법규서에서 “적용”과 “준용”

- 「적용한다」고 함은 특정조항(A사항에 관한 규정)이 조금도 수정됨이 없이 그대로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A사항)에 적용되는 경우에 사용한다.
- 「준용한다」고 함은 특정조항(A사항에 관한 규정)이 준용하고자 하는 사항(A와 다소 다르지만 대체로 유사한 B사항)의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되어 적용되는 경우에 사용 한다.

5. 자치법규 입안의 실제

자치법규의 개정방식(일부개정 or 전부개정) 또는 폐지여부를 결정하면 구체적으로 개정안 또는 폐지안을 입안하여야 한다. 아래에서는 자치법규안의 구성요소와 개정안 또는 폐지안의 구체적인 입안방식을 상술하기로 한다.

가. 자치법규안의 구성요소

(1) 제안이유·주요내용·참고사항

-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일정한 형식을 갖춘 문서로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하는 조례안인 경우에는 제출 연월일,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을 기재한 제안서식에 조례안을 첨부하여야 하며, 의원발의 조례안일 경우에는 발의연월일, 발의자, 제안이유, 주요내용 외에도 찬성자와 연서하여 서명날인한 찬성자명단(조례안발의 서명용지)을 첨부하여야 한다.
- 규칙안의 경우에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할 것이다.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참고사항 작성요령 예시 〉

1. 제안(폐지)이유

종전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노원구·강남구에 설치된 자원회수시설에서 다른 자치구의 생활 폐기물을 반입·처리하는 경우에는 시설소재지 자치구청장 및 주민지원협의체와 합의 하도록 되어 있고, 마포구의 경우에는 자치구청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시설소재지 자치구청장·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도록 그 절차를 통일함으로써 자원회수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안 제○조 or 안 제○조 신설)

(1)-----.

(2)-----.

(3)-----.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법 제○조

-----.

(※ 관련조문이 많은 경우에는 붙임 가능)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06년도 예산)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1(○쪽 ~ ○쪽)

(2) 입법예고(2011. 8. 23 ~ 9. 7) 결과, 붙임 2(○쪽 ~ ○쪽)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이견 없음

- 규제신설·폐지 등 : 없음

(or) - 규제신설 : 3건

(2) 법규형식 및 공포번호

○ 법규형식 및 공포번호는 당해 법규의 법규형식별로 붙이는 누년 일련 번호를 말하는데, 법령의 경우 법령문 첫 페이지 좌측상단에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행정자치부령” 등으로 법 형식을 기재하고, 공포 번호란을 “제 호” 형식으로 기재한다.

○ 자치법규의 경우에도 “○○조례”, “○○규칙” 등으로 법규형식을 쓰고 공포 번호란은 “제 호” 형식으로 기재하여 번호 부분은 공란으로 비워 둔다.

(3) 제명

○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경우에는 “~조례안” 또는 “~규칙안”으로 제명을 붙이며, 부분개정의 경우에는 “--조례(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 전문개정의 경우에는 “--조례(규칙) 전부개정조례(규칙)안”, 폐지의 경우에는 “--조례(규칙) 폐지조례(규칙)안”의 형식으로 제명을 붙이면 된다.

(4) 개정 또는 폐지의 주문

- 기존 조례(규칙)를 개정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명의 다음 줄에 일부개정의 경우에는 “--조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부개정의 경우에는 “--조례(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폐지의 경우에는 “--조례(규칙)는 폐지한다.”의 형식으로 개정주문을 작성한다.
- 제정의 경우에는 제정주문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5) 본칙

- 본칙 부분은 앞에서 설명한 조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분개정의 경우에는 개정주문의 다음 줄에 기존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의 개정문을 조문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작성하되
 - 조문의 부분개정의 경우에는 『제-조 중 “--”를 “--”로 한다.』
 - 조문의 전문개정의 경우에는 『제-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조문의 폐지의 경우에는 『제-조를 삭제한다.』
 - 조문의 신설의 경우에는 『제-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의 형식으로 조문의 개정문을 작성한다.

(6) 부칙

- 부칙에는 시행일, 유효기간, 다른 법령의 폐지, 적용례, 경과조치, 다른 법령의 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한다.

나. 제정 조례안

- 기존에 없던 새로운 조례를 만드는 것을 조례의 제정이라고 하며, 제정 조례안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을 기재한 제안서식과 조례의 본체부분을 규정한 법령문으로 구성된다. 법령문을 작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Q&A] : 자치법규서의 “간주한다”와 “추정한다”

- 「본다(간주한다)」고 함은 사실은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도 분쟁을 방지하고 법률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령으로써 그렇다고 의제하여 버리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간주되는 것에 대하여는 법령상 확정된 것이므로 반대증거의 제출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 「추정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쪽인지 증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일응 그러리라고 판단을 내려놓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반대증거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추정된 것은 전복된다.

〈 제정조례안의 형식 예시 〉

법규형식 및 공포번호	○○조례 제 호
제 명	○○○조례안 (or ○○○에 관한 조례안)
본 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제2조(○○) -----. · · 제2장 ○ ○ ○ 제○조(○○) ①-----. ②-----. 제○조(○○) -----. ·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 제2조(경과조치) -----.

다. 전부개정 조례안

- 전부개정 조례안이란 기존 조례의 내용을 전체적(제명 포함)으로 개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말한다. 전부개정조례안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을 기재한 제안서식과 법규의 본체부분을 규정한 법규로 구성되며, 법규를 작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전문개정조례안의 형식 예시 〉

법규형식 및 공포번호	○○조례 제 호
제 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주문	(or ○○○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 칙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제2조(○○) -----. .. 제2장 ○ ○ ○ 제○조(○○) ①-----. ②-----. 제○조(○○) -----.
부 칙	부칙 제1조(시행일) -----. 제2조(경과조치) -----.

라. 일부개정 조례안

- 일부개정 조례란 기존 조례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개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말한다.

부분개정조례안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을 기재한 제안서식과 법규의 본체 부분을 규정한 법규로 구성되며, 법규를 작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일부개정조례안의 형식 예시 〉

법규형식 및 공포번호	○○조례 제 호
제 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r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주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문	제명 “○○○조례”를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를 “-----”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를 “-----”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7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	부칙 제1조(시행일) -----. 제2조(경과조치) -----.

〈 일부개정 조례안 신·구 조문 대비표 예시〉

현행	개정안
제2조(수상대상자) ① 청소년대상 수상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u>1년이상</u> ○○시에 거주하고 있는 <u>13세이상 18세이하의</u> 청소년으로서 다음 각호의 부문에서 공적이 뚜렷한 자로 한다. 1. 대상 : <u>선행, 노력 등 여러 면에서 선행이 우수하여 모든 청소년의 귀감이 되는 자</u> 2.~4. (생략) ② (생략) <u><신설></u>	제2조(수상대상자) ①----- -----<u>3년 이상 계속</u>----- -----<u>9세 이상 24세 이하의</u>----- ----- -----. <u><삭제></u> 2.~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수상인원은 제2호 내지 제4호 각 부분별 부문상 1명 및 장려상 1명을 선정하며, 수상대상자가 없는 부분은 시상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5조(시상) ①청소년대상은 <u>매년 1회</u> 시상 하며, 수상자에게는 표창장과 메달 및 부상을 수여한다. ② (생략)	제5조(시상) ① -----<u>매년 청소년의 달인 5월에</u> ----- ----- ② (현행과 같음)

〈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의 개정문 예시〉

○○시자원회수시설축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시자원회수시설축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를 “○○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축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를 “---”로 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마. 폐지 조례안

- 폐지 조례안이란 기존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를 말한다. 기존 조례를 폐지하는 방식에는 ① 해당 조례의 폐지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방식과 ② 관련되는 다른 조례의 부칙에서 폐지하는 방식이 있다. 조례 자체에 당해 조례의 유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한시조례의 경우에는 유효기간 경과와 동시에 자동 실효되므로 폐지를 위한 별도의 입법을 요하지 아니한다.
- 폐지조례안도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을 기재한 제안서식과 법규의 본체부분을 규정한 법규로 구성되며, 법규를 작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폐지법규안의 형식 예시 〉

법규형식 및 공포번호	○○조례 제 호
제 명	○○○조례 폐지조례안
폐지주문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부칙 제1조(시행일) -----. 제2조(경과조치) -----.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조 중 “----”를 “-----”로 한다. 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조 중 “----”를 “-----”로 한다.

[Q&A] : 자치법규의 “통상적인 용어의 사용법”

가. 장명으로 사용하는 “잡칙”은 “보칙”으로 한다.

나. 조문제목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정의”로 한다.

다. “간주한다”는 “본다”로 한다.

라. “유고시” 또는 “사고가 있을 때”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한다.

마. 위원회규정 등에서 조문제목으로 사용하는 “직능”, “기능” 등은 “기능”으로 통일한다.

바. “경과규정”, “경과조치”는 “경과조치”로 통일한다.

사. “경유하여”는 “거쳐”로 한다.

아. “구두”는 “구술”로 한다.

자. 법령용어를 쉽게 하기 위하여 「익월」은 「다음달」로, 「익년」은 「다음해」로 한다.

차. 벌칙규정에서 “처할 수 있다”와 같은 표현 즉 처벌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준 것 같은 표현을 피하고 반드시 “---에 처한다”로 한다.

카.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을 둘 수 있다”라는 표현은 임의규정에 불과하므로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파. 호는 “---할 것” 등과 같은 표현방식을 사용하고 “---한다”와 같은 형식을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3절 조 레

1. 조례 입안시 유의사항

최근 지방자치단체별로 「○○시 기본조례」, 「○○시민 인권조례」 등 포괄적·선언적 내용을 담은 기본조례의 제정이 시도되고 있는데 현행 기본조례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선언적·상징적 조례 : 「○○시 기본조례」
- 방침·프로그램 조례 : 「○○시민 인권조례」, 「○○시 주민협약 기본조례」
- 총괄적·관리형 조례 : 「○○사무 위임 조례」, 「○○○ 민간위탁 기본조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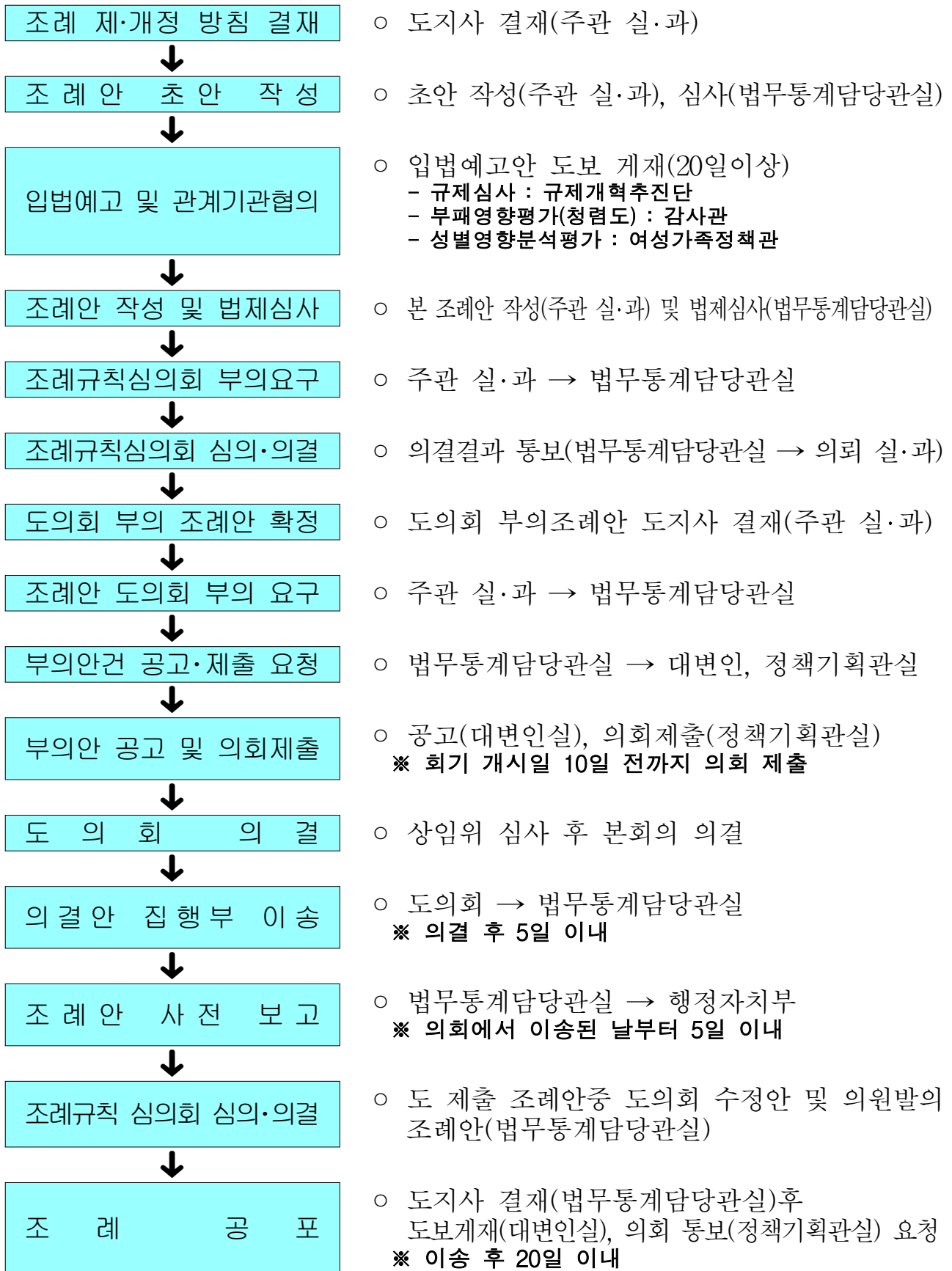
이런 기본조례 중 선언적·상징적 조례와 방침·프로그램 조례를 만들 때에는 위 자치법규 입안심사 원칙에 비추어 검토하는 것은 물론 우선적으로 담고자 하는 내용과 자치법규가 서로 어울리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예컨대, 흔히 법령은 정책을 담은 그릇으로 비유하는데, 밥이 국그릇에 담기면 안 되듯, ‘인권’ 문제는 법률이라는 그릇과 어울린다 할 것이다.

총괄적·관리형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위임” “민간위탁”을 모두 하나의 조례에 담음으로써 사무실태를 효율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나, 이러한 기본조례를 통하여만 해당 사무의 변경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조례를 통해서 ‘기본조례’의 정리적 차원에서 개별조례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을 두어 기본조례가 항상 현행성을 유지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비용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의회의 권한에 관한 사항, 소속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등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벌칙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개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이다.

2. 업무 흐름도



3. 부서별 담당 역할

가. 주관 실·과·소

- 방침 결정(도지사 결재) 및 조례안 작성
- 관계기관 사전승인·협의(규제심사 의뢰 등) 및 관련부서 의견 조회
- 조례안 입법예고
- 조례·규칙심의회 부의 요구
- 조례안 확정(도지사 결재)
- 조례안 도의회 부의 요구
- 도의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를 위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준비

나. 법무통계담당관실

- 조례안 초안심사, 입법예고 공고번호 부여
- 조례규칙심의회 의안번호 부여 및 조례규칙심의회 부의
- 도의회 부의안건 공고·제출의뢰
- 행정자치부 조례안 보고
 - ※ 의원 또는 위원회 발의 조례안이나 수정의결 조례안은 소관부서 통보
-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의결(도 제출 원안 가결 조례안은 제외)
- 조례 공포(도지사 결재), 공고 및 도의회 통보 의뢰

다. 대변인실

- 도의회 부의 조례안 공고(도보게재)
- 공포 조례 도보 게재

라. 정책기획관실

- 조례안 도의회 제출
- 도의회 의결조례안 접수 및 법무통계담당관실 통보
- 조례공포 내용 도의회 통보

마. 도 의회

- 상임위 상정·심사·의결 후 본회의 상정·심의·의결
- 의결조례안 집행부 이송

4. 제·개정 절차

가. 조례 제·개정 방침 결정 : 주관부서

-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입안부서에서는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근거법규와 필요성, 주요 내용 및 추진 일정 등을 명시한 입법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로부터 방침결정을 받아야 함
- 단, 조례안 방침결정시 준칙에 의한 제정이나 일부개정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초안까지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결심을 받는 것이 통상적이며, 반드시 이를 구분해야 할 필요성은 적어 보임
- 이 과정에서 특히 유의할 점은 입법논의 초기단계부터 입법내용의 적법성 여부와 입법 추진일정에 관하여 반드시 법무통계담당관의 협의(1차 법제심사)를 거쳐야 함
- 또한, 당해 자치법규의 실현 가능성을 확보하고 도정전반에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련부서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시 개별법령에서 사전 승인 또는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결재를 얻은 후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예를 들어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채의 발행 시 안행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거나, 위임사무의 시·군 재위임시 당초 위임기관(장관 등)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를 말함. 필요할 경우, 전라남도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거나 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방침결정(입법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 입법의 필요성(제도·정책)
-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 상위법령 등 근거(위임입법의 경우)
- 입법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 입법 내용의 현황 및 현 실태에 대한 문제점
- 입법으로 인하여 얻는 기대효과(개선방안)
- 입법 추진 일정 등

나. 조례안 초안 작성 : 주관부서

- 도지사의 결재를 받은 제·개정방침에 따라 주요 내용 등을 반영하여 조례안 초안을 작성하고 법무통계담당관실의 초안심사를 받아야 함
- 제정조례안·전부개정조례안·폐지조례안의 경우에는 제·개정·폐지 이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제·개정 조례 초안을 조문별 형식에 맞게 만들어야 하며
- 일부개정 조례안의 경우에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추가로 작성하여야 함

다.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 : 주관부서

- 입법예고는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널리 알려, 당해 주민의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행정절차법」 및 「전라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법적 절차임
- 입법예고대상
집행기관에서 마련하는 조례안은 원칙적으로 모두 입법예고의 대상이 됨. 다만,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되는 조례안으로서 입법예고를 생략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무통계담당관과 반드시 사전 협의하여야 함

예외적으로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 입법내용이 주민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등

- 입법예고 방법 및 기간 : 20일 이상

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도보 및 인터넷(도 홈페이지),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공고하는 방법에 의하되, 당해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법인 등에 대하여서는 개별적으로 지정,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하여 보다 실질적인 입법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기간 산정방법 :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초일(공고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말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로 만료됨에 유의하여 기간을 정해야 함

○ 관계기관(부서) 협의

자치법규를 입법함에 있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협의·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함

입법계획 협의·협조부서

- 규제개혁 : 규제개혁추진단
- 부패영향평가 결과, 청렴도 관련 : 감사관
- 성별영향분석 평가 : 여성가족정책관
- 국제통상 및 농수축산 관련 : FTA 조항 위배 여부
- 예산관련(비용추계서 등) : 예산담당관
- 수수료·사용료 등 : 세정담당관
- 공유재산 관련 : 회계과

○ 입법예고안의 작성

입법예고 내용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주민이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제명)
- 입법취지
- 입법 주요내용
- 의견 제출방법, 기간 등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출 의견 처리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고, 주관부서에서는 제출의견의 반영·미반영 등을 결정한 후, 그 처리결과 및 이유에 대해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함(행정절차법)

아울러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이를 관계기관 사전 협의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에 참고하도록 당해 안전에 첨부하여야 함

〈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예시) 〉

의견 제출자	제출의견	조치내용
전라남도 건축사회	제5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6. 준주 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를 500퍼센트 이하로 조정 요망	- 반영 - 준주거지역의 경우 종전 조례의 기준을 감안하여 50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의 경우 구도심 공동화 해소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용적률을 완화기로 함
전라남도 전세버스 운송조합	[별표16] 자연녹지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13호 단서 중 “주 진 입도로의 너비가 10m이상이고, 주 진입도로에 8m이상 접한 대지”를 “주 진입도로의 너비가 8m이상이고 준 진입도로에 6m이상 접한 대지”로 조정 요망	- 미반영 - 종전 ○○시 조례보다 완화된 규정으로 대형차량의 진출입으로 인한 주변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충분한 도로폭 확보가 필요함

◆ 조례안에 대한 규제심사

- 입법예고절차를 거친 모든 조례안은 규제담당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규제심의 여부를 판단받아야 함. 조례 내용에 규제가 신설되거나 현행보다 더 강화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규제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기존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삭제하는 내용만을 개정하는 경우 그 조례안은 규제심의를 받지 아니하여도 무방할 것임.
- 규제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규제심사를 생략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조례·규칙심의회 의안 심의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안전에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함

라. 조례안 작성 및 심사 : 주관부서(조례안 작성) 법무통계담당관실(심사)

- 주관부서는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또는 규제협의를 거친 후에는 최초에 작성한 조례안을 수정(입법예고 및 규제심의 등의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어 초안과 동일한 내용일지라도 입법예고기간, 방법 및 의견이 없었다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 조례안을 수정하여 주관부서 실·국장의 결재를 받기 전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통계담당관에게 2차 법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 방침결정문서 또는 표준안 시달문서
 - 입법예고 및 그 결과에 관한 문서
 - 사전승인·허가신청 및 승인·허가문서
 - 관련부서에의 의견조회 및 회신 관련 문서
 - 관계법령 및 관련사업계획서·예산수반사항
 -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마. 조례·규칙심의회 부의요구 : 주관부서 → 법무통계담당관실

- 심사를 마친 조례안은 주관부서의 실·국·본부장의 결재를 받아,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법무통계담당관에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함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서식(표지)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안건 전문서식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서 등
- 심의회에 부의할 조례안은 사전에 반드시 법무통계담당관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는 원칙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하나, 경미한 조례 제·개정이나 공포안의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음

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법무통계담당관실

- 지방자치법시행령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두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입법예고, 관계기관의 사전승인을 거친 후 도지사의 최종결재를 얻기 전에 반드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사. 조례안 도의회 부의 요구 : 주관부서 → 법무통계담당관실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을 거친 조례안은 조례규칙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최종결재를 얻어야 함(도의회에 부의할 조례안으로 확정됨)

- 주관부서에서는 도지사의 최종결재를 받으면 법무통계담당관실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조례안의 도의회 부의요구를 하여야 함
 - 도지사 결재 원안(방침결정부터 최종안까지 관련서류 일체)
 - 도 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 조례내용 및 도의회 제출 조례안이 수록된 컴퓨터용 파일

아. 부의안건 공고 및 제출 요청 : 법무통계담당관실

자. 부의안 공고 및 의회제출 : 회기 개시일 10일 전까지(도의회 회의규칙)

- 전라남도의회에 부의기로 확정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6조에 의하여 미리 부의안건을 도지사가 공고하여야 함
- 다만, 회기 중 긴급하게 제출할 조례안에 대하여는 공고를 생략할 수도 있음
- 공고방법 : 반드시 도보에 게재(보조수단 : 도 홈페이지, 일간지 등)
- 담당부서 : 부의안 공고(대변인), 도의회 조례안 제출(정책기획관)

차. 도의회 의결

- 도의회에 제출된 조례안은 의회 회의규칙 등에 따라 의결
- 주관과에서는 상임위 심사를 위하여 ①제안설명서 ②참고자료 ③질의답변 자료를 따로 준비하여야 함

카. 의결 조례안 집행부 이송 : 도의회 → 정책기획관 → 법무통계담당관

- 도의회는 조례안이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 도지사에게 이송해야 함
 - ※ 집행부 이송안 중 도의회에서 수정된 조례안과 의원발의(위원회 발의 포함) 조례안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사전 도의회에서 해당 실·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과에서 동의한 경우는 제외)

타. 조례안 공포 전 사전보고 : 법무통계담당관실 → 행정자치부

- 도의회에서 의결되어 도지사에게 이송되어 온 조례안은 사전보고 · 공포 또는 재의요구 절차를 취하여야 함
- 도지사는 조례를 제 ·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 도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방자치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전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함

파. 공 포 : 법무통계담당관실

- 의회에서 이송되어 온 조례안이 재의요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도의회에서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함
- 공포문에는 전문(前文)을 붙여야 하며, 공포문 전문에 제정·개정하는 뜻을 기재하여, 도지사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명기함
- 조례의 공포일 : 그 조례를 게재한 도보가 발행된 날
- 조례의 효력 발생 시기
 - 조례는 일반적으로 부칙에서 시행일을 정하며, 그 시행일로부터 효력이 발생
 - 조례에서 시행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

공포시 반드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경우

- 도에서 제출한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수정 의결된 경우
- 의원 발의 및 위원회 발의 조례안

5. 참고자료

주민의 청구에 의한 조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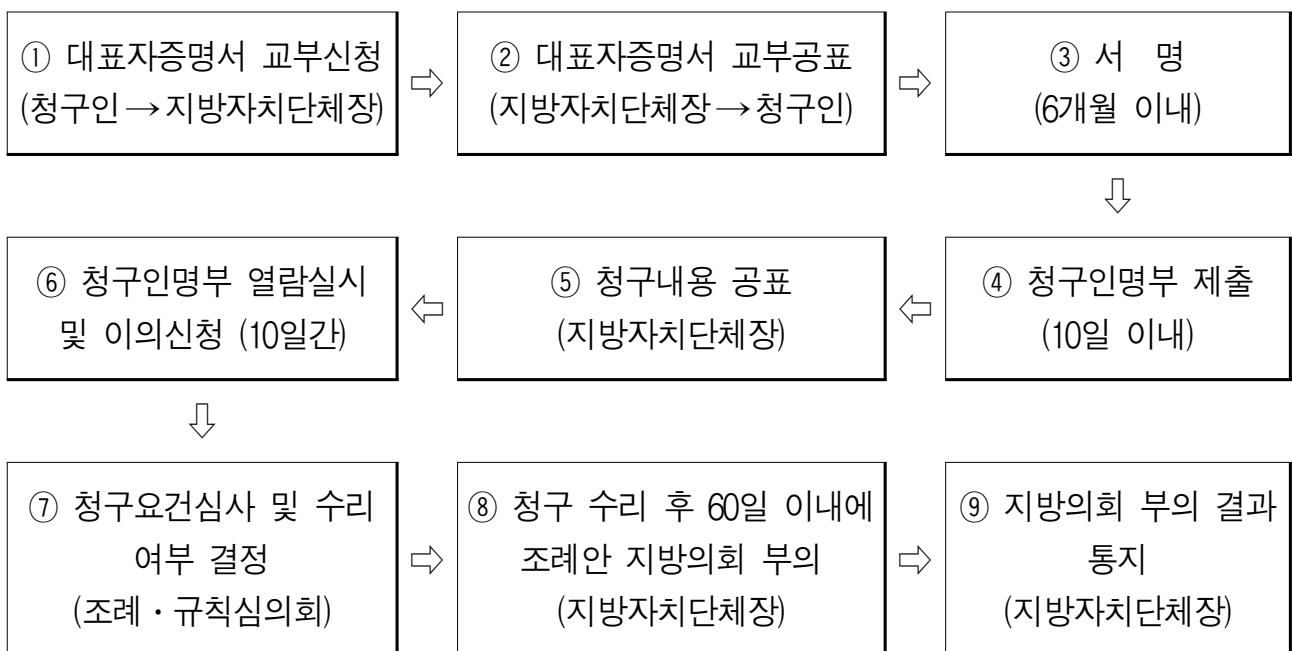
가. 청구권자 및 청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일정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일정 주민 수 이상이 연서하여 주민이 직접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5조). 여기서 주민이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와 「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청구인명부작성일 현재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전라남도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를 말하며, 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된다.

청구대상은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과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을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가 해당된다.

나. 청구 및 처리절차

주민청구에 의한 조례의 제정 및 개폐절차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2부터 제10조의 9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간단하게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1) 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대표자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 등을 기재한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서를 덧붙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문서로 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2) 대표자증명서 교부·공표

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표자가 19세 이상의 주민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취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3) 서명

① 서명요청권자

대표자는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청구인명부예의 서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청구서 또는 그 사본,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안 또는 그 사본 및 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또한 대표자는 19세 이상의 다른 주민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연월일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즉시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주민(수임자)은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조례제정 또는 개폐를 위한 청구인명부예의 서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임자는 청구서 또는 그 사본,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안 또는 그 사본, 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② 서명기간

이러한 청구인명부예의 서명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대표자증명서 교부 및 청구취지의 공표가 있는 날부터 시·도에 있어서는 6월 이내,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3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기간 중에는 서명을 요청할 수 없으므로 서명요청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선거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청구인명부 기재내용

한편 청구인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은 청구인명부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④ 서명의 취소

서명을 한 자가 당해 서명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기 전에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즉시 청구인명부에서 당해 서명을 삭제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명부 작성방법

청구인명부는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읍·면·동별로 작성하고, 시·도에 있어서는 시·군·자치구별로 읍·면·동으로 구분하여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청구인명부 제출

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9세 이상의 주민의 수가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 수 이상이 된 때에는 서명요청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도에 있어서는 10일 이내에,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5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청구내용 공표

청구인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표자의 성명·주소, 청구취지 및 이유, 연서 주민 수, 청구인명부 열람기간·장소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6)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① 열람기간 및 장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 또는 그 사본을 시·도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시·군·자치구별로,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읍·면·동별로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열람기간의 계산

- 실무상 혼돈하기 쉬운 것이 바로 법정기간의 계산이다. 기간의 계산 방법에 관한 규정은 법기술적 약속으로서 원칙적으로 공법과 사법에 있어서 다르지 않다. 따라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법상의 기간계산에 있어서도 민법(제156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기간계산의 기산점 : 기간을 일·주·월·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시·분·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부터 산입

- 기간계산의 종료점 : 기간을 일·주·월·년으로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됨으로써 종료되나 그 말일이 일요일 기타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날에 만료됨.
- 만일 12월 15일 청구인명부가 접수되었다면 열람기간은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7일을 계산하여 12월 16일부터 12월 22일까지이고, 만일 12월 22일이 일요일 기타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종료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열람기간 중 일반주민이 청구인명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조례·규칙심의회에 심의를 거쳐 이를 심사·결정하되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청구인명부에 기재된 서명이 정당한 서명자가 아니거나 누구의 서명인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때)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이를 이의신청을 한 자와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청구인명부의 보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으로 인한 청구인명부의 수정으로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9세 이상의 주민의 수가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 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로 하여금 시·도에 있어서는 5일 이내에, 시·군·자치구에 있어서는 3일 이내에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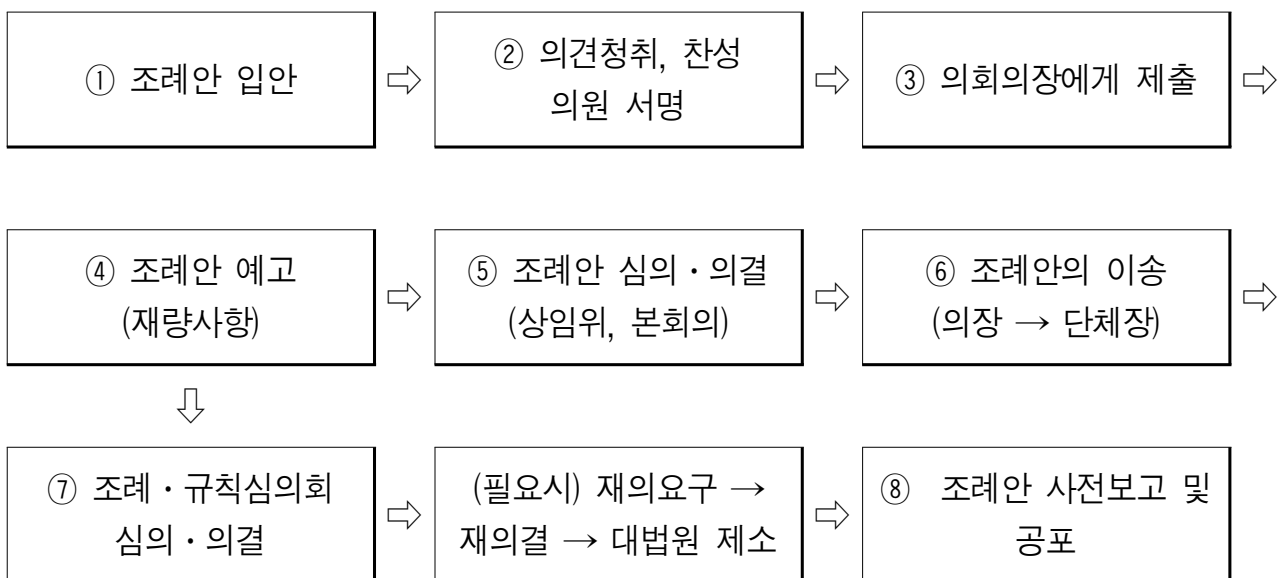
(7) 청구요건 심사 및 수리여부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명부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처리가 완료된 경우 청구를 수리 또는 각하하는 때에는 미리 조례·규칙심의회에 심의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하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7조를 준용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8) 지방의회에의 부의 및 결과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안에 그 의견을 덧붙여 지방의회에 부의할 수 있다.

의원이 발의한 조례



실제 사례 예시

[별지1-1] 방침결정(도지사결재) 및 조례안 초안 작성(제정)

문서번호	-	정책평가 담당	정 책 기획관	기 획 조정실장	부 지 사		도 지 사	결 재
보존기간					정 무	행 정		
결재일자	. .							
공개구분	공 개	협 법제담당 법무통계담당관 조						

전라남도지사 공약사항 관리조례 제정계획



전라남도
(정 책 기 획 관)

전라남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 제정계획

도민과의 약속인 전라남도지사 선거공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천계획의 수립과 추진상황 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전라남도지사 공약사항 관리조례』를 제정코자 함

□ 제정 필요성

- 도지사의 공약 이행여부를 검증·평가하는 것은 도민의 당연한 권리이며, 도지사는 공약이 도민과의 공적 계약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 추진할 의무가 있음
- 공약관리의 제반 절차 및 객관적인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범화 함으로써 공약 이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도민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음

□ 주요 제정내용(골자)

- 실천계획 및 실적 관리에 대한 공약사항 관리체계
- 도지사 선거공보 기초, 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변경
- 실천계획에 따른 공약사업의 이행방법과 실적 관리
- 공약사업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

□ 조례 제정안 : 붙임

□ 향후 추진일정

- 조례규칙 「입법 예고문」 공고 : '00. 0월
-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심의 : '00. 0월
- 조례안 최종확정 : '00. 0월
- 도의회 조례안 상정(제272회 임시회) : '00. 0월
- 조례 공포 : '00. 0월

전라남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지사의 선거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거 과정에서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그 밖의 방법으로 도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사업부서”란 공약사항의 사업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관련부서”란 사업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2장 관리체계

제3조(관리체계) ① 공약사항에 대한 총괄 관리 및 조정하는 총괄 부서는 정책평가업무 담당부서로 한다.

② 공약사항에 대한 사업부서 및 관련부서의 장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보부서에서는 공약사항 관련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해 도민에게 공개한다.

제3장 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

- 제4조(실천계획 수립)** ① 총괄부서의 장은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사항에 대하여 도정여건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 취임 100일 이내에 사업부서의 협조를 거쳐 공약사항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전라남도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내용을 공개한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적정성과 실천가능성, 투자계획에 대한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조정하고 이를 실천계획에 반영한다.
- ③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비전과 전략, 추진방향
 2. 실천계획의 총괄 개요
 3. 소요재원 및 조달방안
 4. 공약사업별 추진계획
- ④ 필요시 실천계획 수립과정에서 전문가 및 도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수 있다.

- 제5조(실천계획의 변경)** ① 실천계획 확정 후 재정여건 및 정책변화 등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실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공약사항 사업부서에서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후 즉시 그 사유 등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변경이 필요한 공약사항은 필요시 전문가 자문과 도민 설명회 등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④ 변경된 실천계획은 전라남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그 내용과 사유를 공개한다.

제4장 실천계획 이행

제6조(사업별 실천계획 수립) 사업부서의 장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소관 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이행실적 관리) ① 사업부서의 장은 공약 사업별 이행실적을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에서는 사업부서의 공약사업 성과관리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부진 또는 문제 사업이 있을 경우 해당 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이행실적 공개)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 이행 실적을 정리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도민 의견수렴) 총괄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의견수렴 창구 등을 통해 주민과 소통하고 수렴된 의견은 공약사항 추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다.

제5장 이행실적 평가 및 환류

제10조(자체평가) ① 총괄부서는 매년 공약사업의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의 장에게 보완·개선을 요구하거나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공약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독려하기 위하여 평가결과를 직무성과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공약이행평가)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위하여 공약이행주민평가단을 구성·운영한다.

② 공약이행평가단은 연 1회 이상 사업별 진척정도, 사업비 확보, 집행비율 등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추진이 미흡한 사업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③ 공약이행 평가 등에 참여한 평가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남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공보부서를 통하여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전라남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12조(평가결과의 환류) 총괄부서와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공약사항 실천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1-2] 방침결정(도지사결재) 및 조례안 작성(전부개정)

문서번호	-
보존기간	
결재일자	. .
공개여부	공 개

담 당	과장	국 장	부 지 사		도지사	결 재
			정무	행정		
법제담당 법무통계담당관						

전라남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계획



전라남도
(○○○○○○)

전라남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계획

노사민정이 일자리창출 및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10. 8.)됨에 따라 위 법률에 맞추어 동 조례를 전부개정 시행코자 함

I 조례 개정 계획

가. 개정 근거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0. 5. 25 법률 제10318호)
- 「같은 법 시행령」 제정('10. 8. 17 대통령령 제22349호)
- 2010년 고용노동부 유사협의체 통합운영 지침 ('10.6.16.)
 - 지역고용심의회를 지역 노사민정 협의체와 통합 운영으로 고용·노사관계 관련의제를 논의하는 지역 통합거버넌스 구축
- 2010년 고용노동부 및 행정자치부 정부종합평가 지표매뉴얼
 - 노사·고용관련 유사협의체 통합 운영 및 조례제정 여부 포함

나. 개정 이유

-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등을 위해서 유사·중복되는 기능의 협의체 통합운영을 통해 상생과 협력의 새로운 노사민정 관계 패러다임 구축이 필요
-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0. 5. 25)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10. 8. 17)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고용문제와 노사관계를 아우르는 통합 거버넌스로 발전시키기 위함

다. 연 혁

- 전라남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 '03. 12. 30
- 전라남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 : '08. 11. 13

라. 주요 내용

- 조례제명을 「전라남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고용과 민을 포함한 「전라남도 고용·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제명변경)
-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지역고용심의회 기능을 협의회의 기능에 포함하여 통합운영토록 함(안 제3조)
- 협의회의 구성을 각계 대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 청취를 위해 노사정 및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추가 위촉함(15인 ⇒ 30인 이내)(안 제4조)
- 지역파트너십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담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은 전라남도 노사협력 담당부서에서 운영(안 제10조 신설)
 - ※ 별도 전담인력을 두지 않고 겸직으로 운영
-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의 의결 또는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실무위원회” “노사갈등 조정·해결 실무위원회” “고용심의 실무위원회” 등 분과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음 (안 제11조 신설)

Ⅱ

향후 추진일정

- 조례안 입법예고(20일간) : '00. 0월중
- 조례규칙 심의회 부의 및 조례안 확정 : '00. 0월중
- 조례안 도의회 제출 : '00. 0월중
- 조례 공포 및 시행 : '00. 0월중

전라남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라남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라남도 고용·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 및 「경제사회 발전 노사정위원회법」 제19조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전라남도 지역의 근로자·사용자·주민 및 전라남도(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가 상호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지역의 고용안정과 인적자원개발, 노사협력증진을 통한 노사안정과 산업평화, 그 밖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고용·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지역의 노사민정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에 고용·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 일자리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민정협력방안 및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 고용정책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지역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대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경제와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 및 지역 고용문제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의한 지역고용 심의회 및 「경제사회 발전 노사정위원회법」 제19조에 의한 지역 노사정 협의회를 설치 한 것으로 보며, 같은 기능을 가진다.

~ 중 간 생 략 ~

제14조(수당 등) 협의회 또는 실무분과위원회의 회의 및 행사에 참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라남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전라남도 노사정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전라남도고용·노사민정협의회로 본다.

제3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전라남도노사정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전라남도 고용·노사민정협의회 위원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전라남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별지1-3] 방침결정(도지사결재) 및 조례안 초안 작성(일부개정)

문서번호	법무통계 담당관실	법 담	제 당	법무통계 담당관	기획조정 실장	부 지 사		도 지 사	결 재
보존기간	년					정 무	행 정		
결재일자	. . .								
공개여부	공 개								
		협조							

전라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 부 개 정 계 획



전라남도
(법무통계담당관실)

전라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계획

「행정절차법」 일부개정 법률이 공포('12. 10. 22)됨에 따라,
「전라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함.

□ 관련 법령(근거)

- 「행정절차법」 제 41조제1항 및 제4항
 - 행정상 입법예고 생략 사유의 구체화(제41조제1항)
 - 재 입법예고 규정의 상향 입법(제41조제4항)

□ 개정 이유

-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12. 10. 22)됨에 따라, 「전라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의 일부 개정 필요

□ 주요 내용

- 행정상 입법예고 생략사유의 구체화(안 제4조제1항)
- 재 입법예고 규정 마련(안 제4조제2항)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용어 정비

□ 향후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부의 및 조례안 확정 : '00. 0월중
- 조례안 도의회 제출 : '00. 0월중
- 조례공포 및 시행 : '00. 0월중

□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제4항
 - 일부개정 법률공포('00. 0. 0), 법률시행('00. 0. 0)
- 관련부서 의견 : 해당없음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입법예고 : 생략(전라남도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
- 사전협의(승인) : 해당없음

전라남도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제4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조 제3호를 제2호로, 제1호를 제3호로 하고,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 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도지사는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의한 복사에 따른 비용은”을 “따라 발생한 비용은”로 한다.

제12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3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관한”을 “관하여”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단서의”를 “제1항의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규정에 의한”을 “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규정에”를 “의 규정에”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5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입법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u>의한다</u> .	제3조(적용범위) ----- ----- ----- ----- <u>따른다</u> .
제4조(입법예고 대상) <u>도지사는 자치 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u>	제4조(입법예고 대상) ① <u>도지사는 자치 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u>
1. <u>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u>	1. <u>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u>
2. <u>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u>	<u><삭 제></u>
3. <u>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u>	2. <u>(현행 제3호와 같음)</u>
<u><신 설></u>	3. <u>(현행 1호와 같음)</u>
4. <u>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u>	4. <u>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 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u>
5. <u>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u>	5. <u>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u>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7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도보 및 인터넷에 게재하여 공고하는 방법에 <u>의한다</u>.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예고방법 외에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협회 또는 기타의 자에게 직권 또는 신청에 <u>의하여</u>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8조(입법안의 열람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u>의한 복사에 따른 비용</u>은 「전라남도 행정정보공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12조(입법안 작성) 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하는 때에는 제정의 필요성, 내용 및 절차의 정당성 등을 감안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별표 1의 전라남도 자치법규 입안심사기준표(이하 “입안심사기준표”라 한다)에 <u>의하여</u> 자체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u>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u> 제7조(예고방법) ① ----- ----- -----<u>따른다.</u> ② ----- ----- ----- -----<u>따라</u>----- -----. 제8조(입법안의 열람 등) ② ----- -----<u>따라 발생한 비용은</u>----- ----- -----. 제12조(입법안 작성)----- ----- ----- ----- ----- -----<u>따라</u>-----.

현행	개정안
제13조(입법안 심사) 법무통계담당관은 제12조에 따라 작성된 입법안을 별표1의 입안심사기준표에 의하여 자체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입법안 심사) ----- ----- ----- 따라 ----- -----.
제14조(입법안 평가 및 심사방법) ① 별표1의 입안심사기준표에 의하여 입법안을 평가 및 심사하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의 성격 및 내용에 따라 각 입법절차단계에서 필요한 항목을 선별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하거나 심사할 수 있다.	제14조(입법안 평가 및 심사방법) ①----- ----- 따라 ----- ----- ----- ----- -----.
② 별표1의 입안심사기준표에 의한 자치법규 입법안의 평가 및 심사의 구체적인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 따른 ----- ----- ----- 관하여 ----- -----.
제15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및 제출) ① 도지사는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및 제출) ①----- ----- ----- ----- ----- ----- 따른 ----- -----.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유서(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단서----- ----- ----- -----.

현행	개정안
③ 「지방자치법」 제15조 <u>규정에 의한</u>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작성부기 및 제출시기) ①·② 생략 ③ 「지방자치법」 제15조 <u>규정에 따른</u> 주민청구 조례안을 의회에 부의할 때 소관 부서는 제15조에<u>의한</u> 비용추계서 및 의견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전문) ①~③ (생략) ④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도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도의회의 의결을 거친 뜻과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후단의 <u>규정에 의하여</u>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도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명기한다. 제25조(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에 <u>의하여</u> 도지사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③ -----<u>의</u> <u>규정에 따른</u> ----- -----. 제18조(작성부기 및 제출시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의</u> <u>규정에</u>----- -----<u>따른</u>----- -----. 제20조(전문) ①~③ (현행과 같음) ④ ----- ----- ----- ----- -----<u>따라</u>----- ----- -----. 제25조(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 ----- -----<u>따라</u>----- ----- ----- -----.

[별지1-4] 방침결정(도지사결재) 및 자치법규안 초안 작성(폐지)

문서번호	-	담 당 과 장	국 장	부 지 사		도 지 사	결 재
보존기한				정 무	행 정		
결재일자	. .						
공개여부							
법제담당 법무통계담당관							

전라남도 여성회관 운영 조례 폐지계획



전라남도 여성회관 운영 조례 폐지 계획

전라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전라남도 여성회관이 폐지됨에 따라 전라남도 여성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전라남도 여성회관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여성회관 연혁

- 1967. 6. 22. 「전라남도 여성회관 운영 조례」 제정
- 1967. 12. 15. 개관
- 1989. 4. 21. 사업계 신설
- 1991. 12. 23. 상담실 신설(서무계, 사업계, 상담실)
- 1998. 9. 11. 조직개편 : 관장, 상담담당, 사업담당
- 2007. 7. 1. 전라남도 여성회관 폐지

□ 여성회관 소관사무

- 여성의 자질향상과 부덕 함양을 위한 교양 강좌 및 부업지도
- 가정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상담 및 선도
- 정부시책 계몽지도 및 여성의 향토문화 진흥사업 전개
- 기타 여성의 복리증진을 위한 업무

□ 기구폐지 사유

- 여성회관의 집행기능과 여성개발원의 정책개발기능을 접목한 복합시설로서 전남지역 여성의 문화·교육·복지의 중심역할을 수행할 전남여성플라자 건립('03~'08)
- 전라남도 여성플라자 개관 준비인력 확보와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전라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제5장 제13절 “전라남도여성회관”을 삭제한다)으로 전라남도 여성회관 폐지

□ 향후 추진일정

- '09. 8월 조례 폐지 방침 결정
- '09. 9월 조례폐지안 입법예고
- '09. 9월 조례폐지안 확정
- '09. 10월 조례폐지안 도의회 제출
- '09. 10월 조례 공포

□ 보유재산처분

- 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사동 177-35
- 규모 : 대지 886㎡, 건물 1,062㎡(지하1층, 지상4층)
- 재산처분 : 광주광역시에 재산매각('09. 4. 15, 000백만원)

붙임 전라남도 여성회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부

전라남도 여성회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전라남도 여성회관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2] 조례안 입법예고

삶이 풍요로워지는 미래도시, 녹색의 땅 전남



전라남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조례안 입법예고 및 공고의뢰

1. 「재단법인 전남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라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코자 합니다.

2. 「재단법인 전남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내용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대변인은 공고 내용을 도보 등에 게재하여 주시고, 법무통계담당관은 검토·심의 및 공고번호를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재단법인 전남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안 1부. 끝.

사회복지과장

수신자 대변인, 법무통계담당관

주무관

복지정책
담당

사회복지
과장

협조자

시행 사회복지과-22163

접수 법무통계담당관-7549

우 534-700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 <http://www.jeonnam.go.kr>

전화번호 061-286-5722 팩스번호 061-286-4776 / kij0118@korea.kr

/ 대국민 공개

재단법인 전남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재단법인 전남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라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0000년 0월 일

전라남도지사

1. 조 례 명 : 「재단법인 전남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도민들의 복지욕구는 증가한 반면 복지서비스 전달속도는 떨어져 이에 대한 실증·현장연구를 통한 복지사업의 타당성을 분석·조정하고
- 지역복지 정책의 입안의 비전문성·근시안적 대응에서 전문성·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하는 전문가 그룹의 정책수립과
- 복지자원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예산의 중복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복지 예산의 합리적인 배분과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연계 모형의 개발, 평가, 위탁사업 등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재단법인 전남복지재단 설치
- 재단법인 사업 - 연구, 개발, 교육, 평가, 기금관리, 위탁사업
- 법인의 정관 기재사항, 임원구성, 이사회운영
- 기금의 조성 및 관리, 복지기금 등 재정지원
- 재단 지도감독 및 재단법인에 도 공무원 파견
-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4. 「재단법인 전남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9월 2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남도지사(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의견제출할 곳

우534-700/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오룡길 1 전남도청 사회복지과
(전화 : 061-286-5722, FAX : 061-286-4776)
이메일 : kij0118x@korea.kr
- 의견제출 방법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전남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전문화된 복지서비스의 제공으로 도민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 위한 재단법인 전남복지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전남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법인격) 재단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2.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3. 사회복지자원의 네트워크 구축·교류 및 협력
 4.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5. 전남복지재단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
 6. 사회복지단체·시설 수탁기관에 대한 심의 및 평가
 7.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가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8.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2.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3. 이사회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해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중 간 생 략 ~

제19조(운영규정)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전라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 「전라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전라남도 사회복지기금은 제9조에 따른 전남복지 재단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다만, 전남복지재단 기금이 설치될 때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조례·규칙심의회 부의 서류

원안

의안번호	제 81 호
의결(보고) 년 월 일	0000. 0. (제 28 회)

심의의결사항

전라남도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출자	투자정책국장 (기업유치과장)
제출년월일	0000. 0. .

법무통계담당관 심사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안건

1. 심의주문

- 전라남도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수시로 개정되는 지식경제부의 지방촉진보조금 지원 기준에 탄력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 도내기업 보조금의 사후관리 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

3. 주요내용

가. 지방촉진보조금을 조례에 의해 지원이 가능토록 개정

- 지식경제부의 지원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현행 “규칙에 따라”의 문구를 삭제(조례 제25조)

※· 현행 규정은 지원기준 변경 후 규칙개정 때까지 지원근거 공백 발생
· 지경부의 지원기준에 지원범위 및 대상, 지원한도, 절차 등 세부사항까지 규정되어 조례로 지원사항 명문화

나. 보조금 지원기업 의무사업 기간 등 에 관한 규정 개정

- 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사업기간을 단축하고 기간산정 기준을 명확히 명시(규칙 제30조 제3항)

현행) 10년 이상 → 개정)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상

※ 지나치게 긴 사후관리 기간으로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곤란하므로, 기업이 정착하는데 필요한 실질적 기간으로 단축 개정

- 의무 사업기간내 토지 매각시 기업부담금을 제외한 매각금액 전부를 반환하도록 개정.(규칙 제30조 제4항)

현행) 매각대금 가운데 보조금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

개정) 매각대금 가운데 기업이 부담한 원금과 이자등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또는 지원한 보조금중 큰 금액을 환수

- 타 시·도 이전에 대한 제한 기간을 의무사업기간과 동일하게 조정(규칙 제30조 제5항)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28호, 2012.6.29)

6. 예산 상황 : 해당없음

7. 관련부서 의견 : 해당없음

8.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00. 0. 0~0. 00

9. 사전 협의(승인)사항 : 해당 없음

10. 기타 참고사항 : 없음

전라남도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남도 국내·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에 따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10년 이상”을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5년 내에 처분할 수 없으며”를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내에 처분할 수 없으며”로, “계약후 10년 내에 처분하는 경우는 매각대금 가운데 보조금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을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내 처분한 경우 매각대금 가운데 기업이 부담한 원금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5항에 따른 이자 및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또는 지원한 보조금 중 큰 금액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10년 내에 다른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를 “5년 내에 다른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장 국내기업 투자지원 제25조(수도권기업의 도내 이전 등에 대한 지원 특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정한 지원대상에 해당될 때에는 <u>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에 따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u> 제5장 보칙 제30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등) ①·②(생략) ③자금을 지원받은 국내·외국인투자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금지원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u>10년 이상</u> 지속 운영하여야 하며, 사업을 시행한 후에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국내·외국인 투자기업은 도지사로부터 지원받아 매입한 투지 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u>5년 내에</u> 처분할 수 없으며,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되어 부득이 처분할 때에는 매각대금 가운데 기업이 부담한 원금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5항에 따른 이자 및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수할 수 있고, <u>계약 후 10년 내에</u> 처분하는 경우는 매각대금 가운데 보조금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4장 국내기업 투자지원 제25조(수도권기업의 도내 이전 등에 대한 지원 특례) ----- ----- ----- ----- <u>예산의 범위에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u> 제5장 보칙 제30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등) ①·②(현행과 같음) ③----- ----- <u>사업개시일로 부터 5년 이상</u>----- ----- ④----- ----- -----<u>사업개시일로부터 5년내에</u>----- ----- <u>사업개시일로부터 5년내에</u> 처분한 경우 매각대금 가운데 기업이 부담한 원금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5항에 따른 이자 및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또는 지원한 보조금 중 큰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⑤ 도지사에게 임대료를 지원받은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은 임대한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으면 계약 후 5년 이상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u>5년 내에 사용을 중지하거나 10년 내에 다른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u> 임대료 가운데 지원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 ----- ----- ----- -----5년 <u>내에 사용을 중지하거나 다른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u> ----- -----.

[별지4-1] 조례 최종안(도의회부의안)(도지사 결재, 제정)

문서번호	-	담 당 과 장 국 장	부 지 사		도지사	결재
보존기간	년		정 무	행 정		
결재일자	. .					
공개여부						
협 조		법무통계담당관 법제담당				

전라남도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보 건 복 지 국

(사 회 복 지 과)

전라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제 출 자 : 전라남도지사

1. 제정이유

- 「국가보훈기본법」 제정시행에 따라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들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전라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 예우 및 지원대상은 도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와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관리·감독을 받는 단체(안 제4조)
- 국가보훈대상자와 주민의 나라사랑 정신함양을 위한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추진(안 제8조)
-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한 공훈선양시설의 건립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안 제9조)
-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호국·보훈정신 함양 등을 위한 각종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지원(안 제10조)
-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에 대해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민 등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안 제11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관련 법령

○ 국가보훈기본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5. 예산 상황 : 해당없음

6. 관련부서 의견 : 해당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해당없음

8. 사전 협의(승인)사항 : 해당없음

9.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전라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라남도 보훈복지 시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하여 예우시책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는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중 간 생 략 ~

제12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도지사가 희생·공헌자에 대한 공훈선양 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4-2] 조례 최종안(도의회부의안)(도지사 결재, 개정)

문서번호	-	공공디자인 담당	공공디자인 과장	관광문화 국장	부 지 사		도 지 사
보존기간	년				정 무	행 정	
결재일자	. .						
공개여부	공 개	협 조 법제담당 경관관리담당					

- 녹색디자인으로 남도의 브랜드 가치 향상 -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0000. 0.

제 출 자 : 전라남도지사

1. 제안이유

- 중앙정부(행정자치부)로부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 공포에 따른 시·도 및 시·군·구의 관리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에 따라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도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업소별 간판 총수량 규정(안 제2조)

- 1개 업소에서 설치하는 간판의 개수를 2011. 10. 10 이전에는 시행령에서 3~4개(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4개)이내에 표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3~4개 범위내에서 시·도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바, 우리도에서는 3개 내로 정함
- 상업지역·공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2개 이하, 그 외의 지역 1개
 - 1개 추가할 수 있는 경우를 곡각지점과 300m² 이상인 업소로서 초과 설치하도록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 1개의 업소가 2개 이상의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각 건물을 하나의 업소로 보아 간판의 총 수량을 각각 산정하는 근거 신설
 -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한 건물(백화점 등)
 - 그 밖에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경우
 - 간판의 총수량 산정시 간판의 수량 산정에서 제외하는 사례
 -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타사광고
 - 1면의 면적 0.36m² 이하이고, 두께 0.2m 이하인 돌출간판 1개
 - 공연간판, 1개 업소당 0.36m²이하(이·미용 싸인볼 포함) 연립간판, 주유소 차양면 현수식 간판

- 물가안정, 품질 인증 등을 위해 설치한 간판으로서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착한가격표시, 옥외가격표시, 각종 인증 마크 등)

나. 물가안정 표시 등을 가로형 간판에서 예외로 설치 허용(안 제2조)

- 모범업소 표시, 가격표시 안내 등을 간판의 총수량에서 제외한 취지를 감안하여 가로형 간판 설치개수에서 예외 인정

다. 시공중인 건물의 가림막에 표시하는 현수막 표시기준 신설 등(안 제12조)

-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가설 울타리의 허용 사례를 참고하여 최소한으로 허용
 - 가림막에 직접 도료 등으로 표시하고, 전기 사용 제한
 - 시공자·발주자 등 공사내용을 알리거나 공공의 목적만 허용
 - 건물의 10층 이하에 표시하되 그 면적은 벽면 면적의 1/3 이내 표시 등

라.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에 공연간판 추가 (안 제24조)

-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

마.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대상 추가(안 제11조)

- 지상변압기함, 공공자전거보관대, 공중전화부스 등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관련기관 의견 : 의견없음(행정자치부 및 22개 시·군)

5. 예산조치 상황 : 해당없음

6. 사전예고 결과 : 제출의견 없음(예고기간 '12. 4. 13 ~ '12. 5. 2)

7.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협의

8. 기타 참고사항 : 행정자치부 생활공감정책과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판의 총수량) ①「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8항에 따라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공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 2개 이하
2. 제1호에 규정한 지역을 제외한 지역 : 1개 이하
3. 제1호 및 제2호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를 추가할 수 있다.

가. 도로의 굵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

나. 그 업소가 사용하고 있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업소로서 광고물 등을 표시하는 것이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을 초과하여 표시가 필요하다고 시 또는 군의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시·군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가 2개 이상의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건물을 하나의 업소로 보아 간판의 총수량을 각각 산정할 수 있다.

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나.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한 건물

다. 그 밖에 시·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간판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타사(他社)광고
2. 1면의 면적 0.36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 0.2미터 이하인 돌출간판 1개
3. 제8조에 따른 공연간판
4. 하나의 업소마다 표시면적이 0.36제곱미터 이하로 표시하는 연립 간판
5.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차양면의 측면 또는 현수식으로 표시하는 가로형 간판 2개 이내
6. 물가 안정, 품질인증 등을 위해 표시한 간판으로서 시장·군수가 시·군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표시하도록 결정한 경우

~ 중 간 생 략 ~

제28조(권한위임)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와 협의하여 특정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대하여는 이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본다)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제4조(안전점검에 대한 경과조치) 제24조제1호에 따라 새로이 안전점검 대상인 광고물 등은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제25조 관련)

광고물 등	적용 기준	이행강제금 ※시·구 지역	이행강제금 ※군 지역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 연면적 3㎡ 미만		
	- 0.5㎡ 이하	30만원	30만원
	- 0.6㎡ 이상 1.0㎡ 이하	35만원	33만원
	- 1.1㎡ 이상 2.0㎡ 이하	40만원	38만원
	- 2.1㎡ 이상 3.0㎡ 미만	48만원	45만원
	2)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5㎡ 이하	55만원	50만원
	- 3.6㎡ 이상 4.0㎡ 이하	65만원	60만원
	- 4.1㎡ 이상 4.5㎡ 이하	80만원	80만원
	- 4.6㎡ 이상 5.0㎡ 미만	95만원	90만원
	3)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110만원	100만원
	- 6.1㎡ 이상 7.0㎡ 이하	130만원	120만원
	- 7.1㎡ 이상 8.0㎡ 이하	150만원	140만원
	- 8.1㎡ 이상 9.0㎡ 이하	170만원	160만원
	- 9.1㎡ 이상 10.0㎡ 미만	190만원	180만원
	4) 연면적 10㎡ 이상	200만원+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200만원+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비고 :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은 영 제43조제1항 관련 별표 5(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의 비고란을 따른다.

광역단위 광고물 등의 허가 수수료 (제27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	적용 기준	이행강제금 ※시·구	이행강제금 ※군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 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3,000원 1,000원

비고 : 수수료 징수방법

1.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 등의 규격·사용자재·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광고물 실명제 표시관련 인식마크(제26조제3항 관련)



<스티커형 인식마크>

스티커형 전자태그 광고물 실명제 인식마크



<스티커형 전자태그>

비고

1. 표시규격 : 가로 5cm × 세로 5cm
2. 표시내용 : '2012'는 허가·신고 연도 표시,
'10001 또는 20001'은 일련번호(허가1, 신고2) 표시
3. 스티커형 인식마크 또는 전자태그 선택

[별지 5] 조례·규칙심의회 부의 요구

삶이 풍요로워지는 미래도시, 녹색의 땅 전남



전라남도



수신 법무통계담당관
(경유)

제목 전라남도조례규칙심의회 부의의뢰

「전라남도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사전예고기간이 0000. 0. 0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라남도조례규칙심의회 부의를 의뢰합니다.

- 붙임 : 1. 조례규칙심의회 부의서류 1부.
2. 전라남도 자치법규 입안심사기준표 1부. 끝.

기업유치과장

주무관	유치총괄 팀장	기업유치 2012. 9. 20. 과 과장
협조자		
시행 기업유치과-5319	(2012. 9. 20.)	접수 법무통계담당관-8253 (2012. 9. 20.)
우 534-700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전라남도청) / http://www.jeonnam.go.kr/		
전화번호 061-286-5122 팩스번호 286-4746 / invuiou@provin.jeonnam.kr / 대국민 공개		

“청렴한 세상, 전라남도와 함께”

[별지 6] 부의안 공고 · 제출의뢰

삶이 풍요로워지는 미래도시, 녹색의 땅 전남



(경유)

제 목 전라남도의회 부의안건 공고 및 도의회 제출 요청

전라남도의회에 부의할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 등 2건의 조례안을 불임과 같이 송부하니 대변인은 도의회 부의안건으로 도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정책기획관은 도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1. 도의회 부의 공고문 1부

2.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안 1부.

3. 전라남도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전라남도지사

수신자 대변인, 정책기획관, 기업도시과장, 관광정책과장

주무관	법제담당	법무통계담당관	전결 30.	2012. 10.
-----	------	---------	--------	-----------

협조자

시행 법무통계담당관-9470 접수

우 534-700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 <http://www.jeonnam.go.kr>

전화번호 061-286-2621 팩스번호 061-286-4777 / ekna0310@korea.kr / 대국민 공개

누리샘 남도 나눌샘 도민

전라남도의회에 부의할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의회에 부의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0000년 0월 일

전라남도지사

- 부의안건 : 1.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안 1부.
2. 전라남도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부. 끝.

[별지 7] 조례안 의견 조희

삶이 풍요로워지는 미래도시, 녹색의 땅 전남



전라남도



수신 정책기획관

(경유)

제목 **도의회 의결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희**

전라남도의회 27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12. 11. 15)에서 의결·이송된 의원(위원회)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라남도 법무행정사무처리 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주관 실·과의 의견을 조희하니,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공포 동의 여부를 우리 실로 0000. 0. 0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내역 -

의안 번호	의안명	발의자 (제출자)	의결 결과	주관실과
492	전라남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원안가결	정책기획관실
493	전라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원안가결	정책기획관실

붙임 : 의결 조례안 1부 끝.

법무통계담당관

주무관

법제담당

법무통계전결 2012. 11. 19.
담당관

협조자

시행 법무통계담당관-10092

접수

우 534-700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 <http://www.jeonnam.go.kr>

전화번호 061-286-2621

팩스번호 061-286-4777

/ ekna0310@korea.kr

/ 대국민 공개

[별지 8] 조례안 사전보고

삶이 풍요로워지는 미래도시, 녹색의 땅 전남



전라남도



수신자 행정자치부장관(선거의회과장)
(경유)

제목 전라남도 자치법규 사전 보고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전라남도 자치법규안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연번	제명	관련부처명 (소관과명)	공포예정일
1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	0000.0.0.

붙임 :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전라남도지사

주무관

법제담당

법무통계담당관

전결 06/13

협조자

시행 법무통계담당관-4970

접수

우 534-700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청

/ <http://www.jeonnam.go.kr>

전화 061-286-2621

전송 061-286-4740

/ ko1468@korea.kr

/ 대국민 공개

“청렴한 세상, 전라남도와 함께”

조례 개정 상황 보고

□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

제안자	시·도지사(), 의회의원(○), 주민 ()		
규제개혁위원회	제 회	규제 심사 결과	신설, 강화, 폐지, 완화 중 선택
조례규칙심의회	심의회 의결(2012. 6. 13)		
의회 의결 일	0000. 0. 0.	이 송 일	0000. 0. 0.
공포 예정 일 (공포게시예정일)	0000. 0. 0. (0000. 0 .0.)	재 의 요 구 기 한	0000. 0. 0.
근거 법령	「지방자치법」 제56조		
소관 부서	전라남도의회 운영위원회		
관련 중앙 행정 기관	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		
제정·개폐 사유	- 교섭단체 추가 구성 등으로 인해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조정 - 본 조례 중 효율성이 낮아 운영되지 않고 있는 복수 상임위원회 관련 규정을 개정 - 불가피한 상황 등으로 인해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이 지연 되더라도 상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상임 위원 임기 관련 규정을 보완		
주요 내용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를 10명 이내에서 11명 이내로 조정함 (안 제4조제1호) - 복수 상임위원회 위원 관련 규정 삭제, 의원은 하나의 상임 위원회 위원이 되며, 의회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은 겸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제1항 및 제4항) -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있어서 상임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 다음 날까지 위원 선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이 위원이 선임되는 전일까지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재임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제1항)		
검토 의견	의견 없음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10명”을 “11명”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임기만료 다음 날까지 위원선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운 위원이 선임되는 전일까지 재임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u>10명</u> 이내 2.~7. (생략)	제4조(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 ----- -----. 1. -----<u>11명</u>----- 2.~7. (현행과 같음)
제6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되며 2개의 복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된다. 복수 상임위원회 위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에서는 의결권과 발언권을, 겸직한 상임위원회에서는 발언권만 가진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2개의 복수상임위원회의 위원에 추가하여 겸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제1항의 복수상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 삭제 >
제7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의장·부의장의 임기와 같다. < 단서신설 > ② · ③ (생략)	제7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 -----. 다만, 임기만료 다음 날까지 위원선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운 위원이 선임되는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별지 9] 조례·규칙심의회 부의자료(공포시)
(도제출안수정안, 의원발의·위원회발의안 공포여부 심사)

조례·규칙심의회 부의 서류

원 안

의 안 번 호	제118-119호
의 결 (보 고)	0000. 0. .
년 월 일	(제35회)

심
의
의
결
사
항

1. 전라남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포안
2. 전라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포안

제 출 자	기획조정실장 (법무통계담당관)
제 출 년 월 일	0000. 0. .

법무통계담당관 심사필

조례 · 규칙심의회 심의 안건

1. 심의 주문

전라남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포안 등 2건의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심의·의결한다.

2. 제안 사유

전라남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가 전라남도의회(제27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안 공포를 위해 부의

3. 주요 제·개정 내용

- 전라남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개정)
 - 현행 120일의 연간 총 회의일수를 130일로 하고, 연간 정례회 회의 일수를 55일에서 60일로 연장함 (안 제3조)
 -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현행 11월 15일에서 11월 7일로 앞당기고, 대통령 선거 등 국가중대사가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 전라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개정)
 - 지방자치법 제33조에 의거 의원 월정수당은 공무원 봉급 인상률, 재정력 지수, 의원 1인당 인구수와 지역주민 의견 등을 반영해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2009년부터 4년간 동결된 월정수당을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와 도민 여론조사를 거쳐 인상된 월정수당 지급액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
 -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고 있는 월정수당을 현행 월2,456,600원에서 월2,733,330원으로 함.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8조

6. 관련기관 의견 : 없음

7. 예산상황 : 해당없음

8. 사전예고 : 의원발의 등으로 예고 생략

9. 사전협의(승인)사항 : 행정자치부 사전 보고

10.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삶이 풍요로워지는 미래도시, 녹색의 땅 전남



전라남도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조례 공포

제268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2.6.12.)에서 의결된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지방자치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2012.6.20.일 공포하고자 합니다.

붙임: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문 1부. 끝

주무관	법제담당	법무통계담당관	기획조정실장
경제부지사	행정부지사	도지사	
협조자			
시행	접수		
우 534-700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청			/ http://www.jeonnam.go.kr
전화번호 061-286-2621	팩스번호 061-286-4740	/ ko1468@korea.kr	/

“청렴한 세상, 전라남도와 함께”



전라남도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조례 공포

1. 제268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2.6.12.)에서 의결된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지방자치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2012년 6월 20일(수) 공포할 예정이니,

2. 정책기획관은 도의회에 통보하시고, 대변인은 위 조례 공포일에 도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의회 운영수석전문위원은 동 조례 시행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문 1부.
끝.

전라남도지사

수신자 대변인, 정책기획관, 전라남도의회사무처장(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주무관

법제담당

법무통계담당관

전결 06/18

협조자

시행 법무통계담당관-5074

접수

우 534-700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청

/ <http://www.jeonnam.go.kr>

전화 061-286-2621

전송 061-286-4740

/ ko1468@korea.kr

/ 대국민 공개

제4절 규 칙

1. 규칙 입안시 유의사항

조례와 마찬가지로 규칙(規則)의 경우에도 법령 또는 조례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되어 법규적 성질을 갖는 ‘위임규칙’과, 교육훈련이나 내부조직과 관련되어 행정규칙적인 성질을 갖는 ‘직권규칙’이 있다. 여기서 위임규칙은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법령위임규칙’과 조례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위임규칙’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또한, 조례의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데, 이를 조례위임규칙과 구별하기 위하여 ‘조례집행규칙’이라 부르기도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기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이나 조례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제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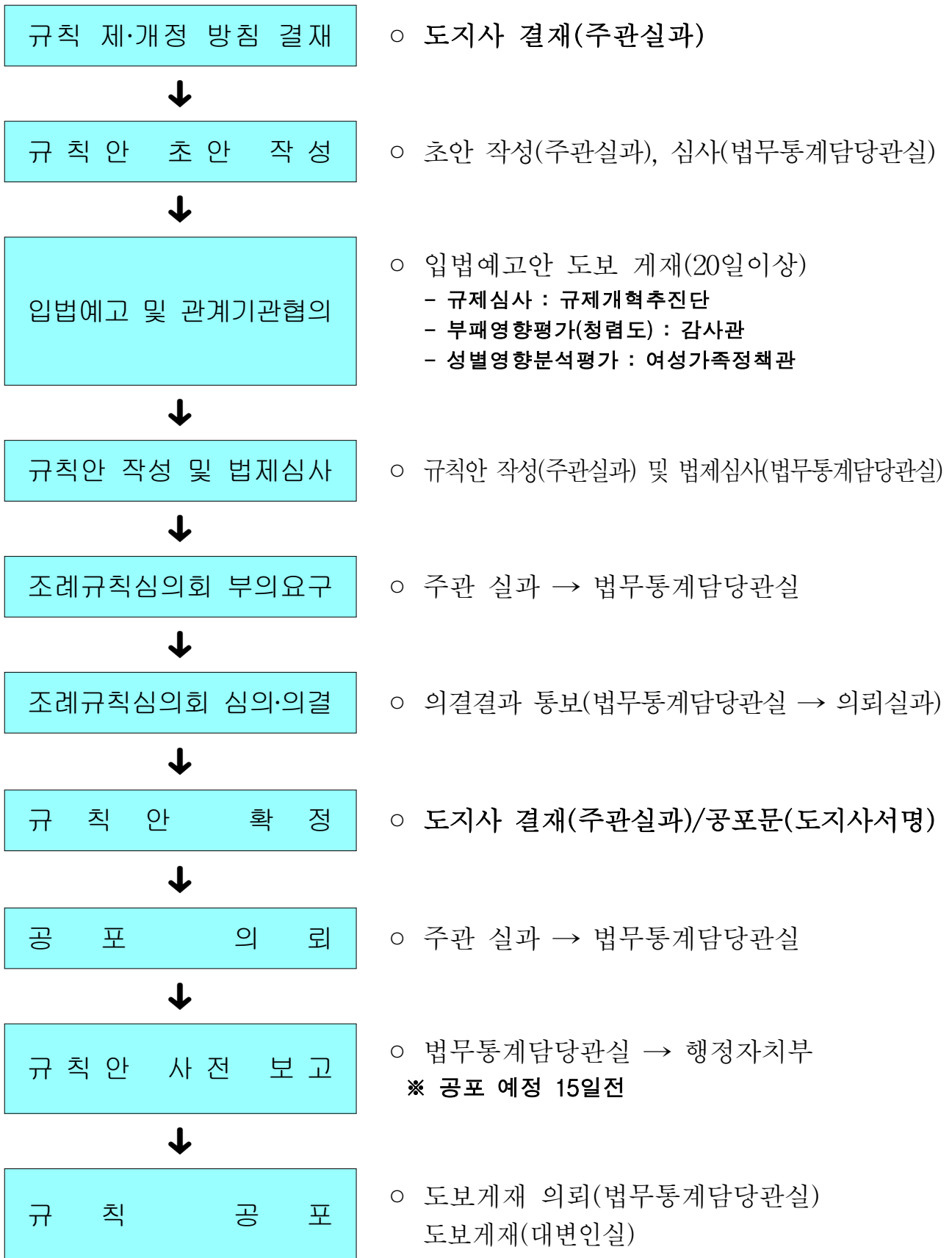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가 있는데, 이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전속적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조례로서 규정할 수 없으며, 규칙으로 규정하게 되고 이를 ‘기관위임규칙’이라 한다.

조례와 규칙 사이에는 일반적 의미에 있어서의 형식적 효력에는 그 우열의 차이가 없다. 즉, 원칙적으로 조례로써 규율할 사항과 규칙으로 규율할 사항이 서로 다른 분야이므로 충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떤 자치법규로써 정할 사항인가에 대해 명확히 구분되어있지 않은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서로 혼용되고 있고, 이들 사이에 서로 상충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 때 자치법규 상호간의 효력은 조례가 우선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규칙으로 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사무의 집행절차에 관한 사항, 기관의 내부적인 관계에 관한 사항, 법령 또는 조례의 세부집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개별법령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들이다.

다만, 개별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개별법령에 따른다.

2. 업무 흐름도



3. 부서별 담당 역할

가. 주관 실·과·소

- 방침 결정(도지사 결재) 및 규칙안 초안작성
- 관계기관 사전승인·협의(필요시 규제심사 의뢰) 및 관련부서 의견 조회
- 규칙안 입법예고
- 조례·규칙심의회 부의 요구
- 규칙안 확정(도지사 결재)
- 규칙안 송부

나. 법무통계담당관실

- 규칙안 초안심사
- 입법예고 공고번호 부여
- 조례규칙심의회 의안번호 부여 및 조례규칙심의회 부의
- 행정자치부 규칙안 사전보고
- 규칙 공포 및 해당실과 공포결과 통보

다. 대변인실

- 공포 규칙 도보 게재

4. 제·개정 절차

가. 방침 결정

- 규칙을 제정(개정, 폐지시에도 같다)하고자 할 때에는 입안부서에서 규칙을 제·개정(폐지 포함)하고자 하는 근거법규와 사유, 주요 내용 및 향후 추진일정 등을 명시하여 도지사로부터 방침결정을 받아야 함
- 이때, 주민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관내부에만 한정되거나 입법예고·사전승인 등이 불필요한 경미한 규칙안(일부개정 또는 폐지, 조례시행규칙) 등에 대해서는 방침결정과 최종결재까지 전과정을 일괄하여 받을 수 있음

나. 규칙안 초안 작성

- 도지사의 결재를 받은 제·개정방침에 따라 주요 내용 등을 반영하여 규칙안 초안을 작성하여 법무통계담당관실의 초안심사를 받아야 함
- 제정규칙안·전부개정규칙안·폐지규칙안의 경우에는 제·개정·폐지 이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제·개정 규칙 초안을 조문별 형식에 맞게 만들어야 하며, 일부개정 규칙안의 경우에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추가로 작성하여야 함

다. 규칙안 입법예고

- 도지사의 방침결정과 법무통계담당관실의 초안심사를 마친 규칙안은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도보 등에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여야 함
- 또한 예고결과 의견이 제시된 경우에는 의견제시자에게 반영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관계기관 사전 협의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시 포함 제출하여야 함

라. 관계기관 사전승인·협의

- 규칙의 제정·개정·폐지시 개별법령에서 사전 승인 또는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마.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규칙안은 사전 입법예고, 관계기관의 사전승인을 거친 후 도지사의 최종결재를 얻기 전에 반드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는 원칙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나, 경미한 조례 제·개정이나 공포안의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 심의회 부의시 작성·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①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서식(표지)과 ②조례·규칙심의회 심의안건 전문서식 ③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서 등과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바. 규칙안 확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을 거친 규칙안은, 도지사의 결재를 얻으면 규칙안으로 확정됨
- 업무 주관과에서는 도지사의 결재를 받을 때 공포문을 붙여 도지사의 서명을 받아야 함

사. 규칙안 송부

- 주관과에서는 도지사의 최종결재를 받으면 도지사가 결제한 원안 및 규칙안으로 확정된 내용이 수록된 컴퓨터용 파일을 법무통계담당관실로 송부하여 공포토록 요청하여야 함

아. 규칙안 보고

- 규칙안은 공포예정 15일전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방자치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전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함

자. 공 포

- 규칙안은 15일이 경과하도록 행정자치부로부터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공포함
- 규칙 전문(前文)에는 도지사가 서명한 공포문에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 도보에 게재하여야 함

실제 사례 예시

[별지1] 방침결재 및 규칙안 초안(도지사 결재)

		법제담당	법무통계 담당관	기획조정 실장	행정부 지사	도지사	결 재
등록번호	법무통계담당관-						
등록일자	. .						
결재일자	. .						
공개구분	공개						

전라남도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에 관한 규칙 제정계획

전라남도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에 관한 규칙 제정계획

전라남도 규칙의 제명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 하고, 인용되는 법령·자치법규명에 낫표 (「」)를 사용하여 도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규칙을 일괄 개정코자 함

1 법적근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지침 : 법제처

2 제정의 필요성

- '05년부터 시행되어 온 법제처 법률 한글화사업의 일환으로 전라남도 규칙의 제명 띄어쓰기와 아울러 자치법규에 인용되는 법령·자치법규에 낫표(「 」)를 사용하여 도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함

3 주 요 내 용

- 현 규칙의 제명을 법제처 법률 한글화 사업 기준에 맞는 띄어쓰기 실시(규칙 69건)
- 규칙의 본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 낫표 (「 」)를 사용(규칙 81건)
- 규칙의 단순 오·탈자 및 개정된 관계법령의 인용조항 변경

4

기타 사항

- 관계법령 : 해당없음
- 예산상황 : 해당없음
- 사전협의사항 : 해당없음
- 입법예고 사항 : 「전라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 생략

5

향후 추진일정

- 방침결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0000. 0월 중
- 규칙안 확정 : 0000. 0월 중
- 규칙 공포 및 시행 : 0000. 0월 중

붙임 : 전라남도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에 관한 규칙안 1부.

전라남도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규칙의 제명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는 낫표를 사용하는 등 도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명 띄어쓰기) 전라남도 규칙의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며, 그 내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3조(법령 및 자치법규명 표시변경 등) 전라남도 규칙의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 낫표(「」)를 사용하고, 상위법령 등의 개·폐에 따른 조문과 오·탈자를 정비하여, 그 내용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례·규칙심의회 부의 서류

원안

의안번호	제호
의결(보고) 년 월 일	0000. . . (제회)

심의의결사항

전라남도 아이디어뱅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출자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제출년월일	0000. . .

법무통계담당관 심사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안건

1. 심의주문

- 전라남도 아이디어뱅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심의·의결한다.

2.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공무원제안규정」과 「국민제안규정」의 일부개정에 따른 「전라남도 아이디어뱅크 운영 조례」 개정사항 반영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보편적인 사항, 이미 채택된 제안이나 그와 유사한 것, 단순건의 및 민원성 의견제시 등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에 대한 처리방법 명시
- 어려운 법률 용어를 정확하고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여 도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기 위해 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 제4조(제안의 접수) 제안의 접수 및 처리상황 공개 방법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방법으로 개정
- 제6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의 처리) 비제안 중 민원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처리토록 하고, 일반적인 비제안의 경우 관련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안자와 제안주관 부서에 통보하고 불채택 처리토록 개정
- 기타 법제처의 법령용어 정비 원칙인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 ‘한글 표기’, ‘일반 한자어의 순화’ 등에 맞게 정비

4. 일부개정규칙안 : 붙임

5.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공무원제안규정(대통령령 제22965호, 2011.6.8개정)
-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224호, 2011.6.8개정)
- 국민제안규정(대통령령 제22957호, 2011.6.7개정)
- 국민제안규정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223호, 2011.6.7개정)
- 전라남도 아이디어뱅크 운영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 입법예고 대상 아님

- 「전라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

라.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 동의[여성가족과-9710(2012.4.26)]
-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감사관-3328(2012.4.24)]

전라남도 아이디어뱅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라남도 아이디어뱅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도 홈페이지를 통하여”를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를 작성하여”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모사전송”을 “팩스”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도 홈페이지”를 “인터넷”으로 한다.

~ 중 간 생 략 ~

제14조 중 “창안의 실시부서의 장은”을 “창안 실시부서의 장은”으로, “창안실시평가서를 작성”을 “창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 또는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제안의 제출)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④ (생 략)	제3조(제안의 제출) ①----- ----- -----제1호서식의 제안서를 작성 하여 -----. ②~④ (현행과 같음)
제4조(제안의 접수)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 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 <u>모사전송</u> 및 인터넷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안 주관부서의 장은 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u>도 홈페이지</u>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제안의 접수) ①----- ----- ----- ----- 팩스 -- ----- -----. ②----- ----- 인터넷 ----- ----- ----- -----.
~ 중간생략 ~	~ 중간생략 ~
제14조(창안실시평가서의 제출) <u>창안의 실시부서의 장은</u> 조례 제31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창안의 실시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창안실시평가서를 작성 제안 주 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창안실시평가서의 제출) <u>창안 실시부서의 장은</u> ----- ----- ----- ----- 작성하여 ----- -----.

[별지 3] 규칙 최종안 (도지사 결재, 개정)

문서번호	-	정책개발 담당	정 책 기 획 관	기획조정 실 장	행 정 부지사	도지사	결 재
보존기간							
결재일자	. . .						
공개구분	공 개						
협조							

「전라남도 아이디어뱅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 부 개 정 규 칙 안



전라남도
JeollaNamdo
(정책기획관)

전라남도 아이디어뱅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공무원제안규정」과 「국민제안규정」의 일부개정에 따른 「전라남도 아이디어뱅크 운영 조례」 개정사항 반영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보편적인 사항, 이미 채택된 제안이나 그와 유사한 것, 단순건의 및 민원성 의견제시 등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에 대한 처리방법 명시
- 어려운 법률 용어를 정확하고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여 도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기 위해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 「전라남도 아이디어뱅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알기 쉽게 변경
- 제4조(제안의 접수) 제안의 접수 및 처리상황 공개 방법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방법으로 개정
- 제6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의 처리) 비제안 중 민원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처리토록 하고, 일반적인 비제안의 경우 관련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안자와 제안주관부서에 통보하고 불채택 처리토록 개정
- 기타 법제처의 법령용어 정비 원칙인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 ‘한글 표기’, ‘일반 한자어의 순화’ 등에 맞게 정비

3. 일부개정규칙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공무원제안규정(대통령령 제22965호, 2011.6.8개정)
-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224호, 2011.6.8개정)
- 국민제안규정(대통령령 제22957호, 2011.6.7개정)
- 국민제안규정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223호, 2011.6.7개정)
- 전라남도 아이디어뱅크 운영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 입법예고 대상 아님

- 「전라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

라.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 동의[여성가족과-9710(2012.4.26)]
-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감사관-3328(2012.4.24)]

전라남도 아이디어뱅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라남도 아이디어뱅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라남도 아이디어뱅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전라남도 아이디어뱅크 운영 조례”를 “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도 홈페이지를 통하여”를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를 작성하여”로 한다.

~ 중 간 생 략 ~

제14조 중 “창안의 실시부서의 장은”을 “창안 실시부서의 장은”으로, “창안실시평가서를 작성”을 “창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로 한다.

별지 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9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 또는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 <u>전라남도 아이 디어뱅크 운영조례</u> 」(이하 “ <u>조례</u> ”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조례</u> 」----- ----- ----- -----.
제3조(제안의 제출)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④ (생 략)	제3조(제안의 제출) ①----- ----- -----제1호서식의 제안서를 작성 하여 -----. ②~④ (현행과 같음)
~ 중간생략 ~	~ 중간생략 ~
제14조(창안실시평가서의 제출) <u>창안의 실시부서의 장은</u> 조례 제31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창안의 실시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창안실시평가서를 작성 제안 주 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창안실시평가서의 제출) <u>창안 실시부서의 장은</u> ----- ----- ----- -----작성하여 ----- -----.

제 안 제 목	
제 안 종 류	
개 요	
현황 및 문제점	
개 선 방 안 (개 선 내 용)	
기 대 효 과 (개 선 성 과)	
조 치 사 항	☐ 관련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 예산확보·지원() ☐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련기관 협의() ☐ 기 타 ()

<작 성 요 령>

- ☐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 ☐ 제안종류 : 도민제안, 아이디어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 ☐ 개 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 ☐ 개선방안(개선내용) : 도민·아이디어·공모제안⇒개선방안, 실시제안⇒개선내용을 기술
- 당해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 내용을 기술함.
- ☐ 기대효과(개선성과) : 도민·아이디어·공모제안⇒기대효과, 실시제안⇒개선성과를 기술
-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하고 기타 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기재함
- ☐ 조치사항 : 당해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기타사항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 작성 형식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교재에서는 이하 별지는 생략함 ~

전라남도 아이디어뱅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0000년 월 일

전라남도지사 _____

전라남도규칙 제 호

붙임 : 전라남도 아이디어뱅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

[별지4] 규칙안 송부 및 공포요청

지방세 전자 고지 · 신고 · 납부는 위택스(WeTax)로 !



전라남도



수신자 법무통계담당관
(경유)

제목 전라남도 친환경농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송부

1.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시행규칙의 제명을 개정하고,

2. 친환경농업육성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유통활성화를 위해 시행규칙을 일부개정코자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전라남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규칙안(별도송부) 1부. 끝.

친환경농업과장

지방행정주사보

친환경정책담당

친환경농업과장

12/08

협조자

시행 친환경농업과-16242

접수 법무통계담당관-7577

우 534-821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오룡길 1번지 친환경농업과 / <http://www.jeonnam.go.kr/>

전화 061-286-6323 전송 061-286-4784 / mjko1@jeonnam.go.kr / 대국민공개

위택스 인터넷 주소 : <http://www.wetax.go.kr/>

[별지5] 규칙안 사전보고

삶이 풍요로워지는 미래도시, 녹색의 땅 전남



전라남도



수신 행정자치부장관(선거의회과장)
(경유)

제목 자치법규(규칙) 사전보고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전라남도 자치법규안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연번	제명	관련부처명 (소관과명)	공포예정일
1	전라남도 어업지도선 관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농림수산식품부 (지도안전과)	0000.0.0.
2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행정자치부 (공기업과)	0000.0.0.
3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자치부 (공기업과)	0000.0.0.

붙임 : 1. 자치법규안 사전보고 목록 1부.
2. 자치법규안 3부. 끝.

전라남도지사

주무관

법제담당

법무통계전결 2012. 11. 12.
담당관

협조자

시행 법무통계담당관-9846

접수

우 534-700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 <http://www.jeonnam.go.kr>

전화번호 061-286-2621

팩스번호 061-286-4777

/ ekna0310@korea.kr

/ 대국민 공개

온새미로 누리쉼터 순천만과 함께해요

규칙 제·개정 개폐상황 보고

□ 전라남도 어업지도선 관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개정)

제안자	시·도지사(○), 의회의원(), 주민 ()		
규제개혁위원회	해당없음	규제심사결과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회 의결(0000. 0. 0.)		
의회의결일	-	이송일	-
공포예정일 (공포게시예정일)	0000. 0. 0. (0000. 0.)	재의요구기한	-
근거법령	선박안전법		
소관부서	전라남도 수산자원과		
관련중앙 행정기관	농림수산식품부 지도안전과		
개정·개폐사유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관공선 관리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전라남도 어업지도선 관리 운영 규칙’에서 준용하였던 조항을 삭제하고, 중복된 별지 제13호 서식을 삭제 개정 코자함		
주요내용	○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관공선 관리규정’이 행정자치부 훈령 제105호(2008. 6. 5.)에 의거 폐지되었으므로, 그 규정의 일부를 준용한 ‘전라남도 어업지도선 관리 운영 규칙’의 제28조를 삭제		
검토의견	의견 없음		

전라남도 어업지도선 관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라남도 어업지도선 관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8호 중 “기타보고서철(별지제8호서식 ~ 별지제21호서식)”을 “기타 보고서(별지 제8호서식 ~ 별지 제21호 서식, 단 별지 13호 서식은 삭제한다.)”로 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 (선내 서류 비치 및 작성) (조 전문개정 2009. 9. 4) 어업지도선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 및 작성하 여야 한다. 1. ~ 7.(생략) 8. <u>기타보고서철(별지제8호서식 ~ 별지 제21호서식)</u>	제18조 (선내 서류 비치 및 작성) (현행과 같음) 1. ~ 7.(현행과 같음) 8. <u>기타 보고서(별지 제8호서식 ~ 별지 제21호 서식, 단 별지 제13호 서식은 삭제한다.)</u>
제28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 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관 공선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u>제28조 삭제</u>

[별지6] 규칙 공포

삶이 풍요로워지는 미래도시, 녹색의 땅 전남



전라남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전라남도 아이디어뱅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전라남도 아이디어뱅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붙임과 같이 '12. 10. 12.(금) 공포할 예정이니 대변인은 도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정책기획관실은 동 규칙의 시행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전라남도 아이디어뱅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문 1부. 끝.

법무통계담당관

수신자 대변인, 정책기획관

주무관

법제담당

법무통계전결 2012. 10. 9.
담당관

협조자

시행 법무통계담당관-8774

접수

우 534-700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 <http://www.jeonnam.go.kr>

전화번호 061-286-2621

팩스번호 061-286-4777

/ ekna0310@korea.kr

/ 대국민 공개

“청렴한 세상, 전라남도와 함께”

전라남도 아이디어뱅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0000년 월 일

전라남도지사

인

전라남도규칙 제 호

붙임 : 전라남도 아이디어뱅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

전라남도 아이디어뱅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전라남도 아이디어뱅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라남도 아이디어뱅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전라남도 아이디어뱅크 운영 조례”를 “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도 홈페이지를 통하여”를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를 작성하여”로 한다.

~ 중 간 생 략 ~

제14조 중 “창안의 실시부서의 장은”을 “창안 실시부서의 장은”으로, “창안실시평가서를 작성”을 “창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로 한다.

별지 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9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 또는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절 훈령 및 예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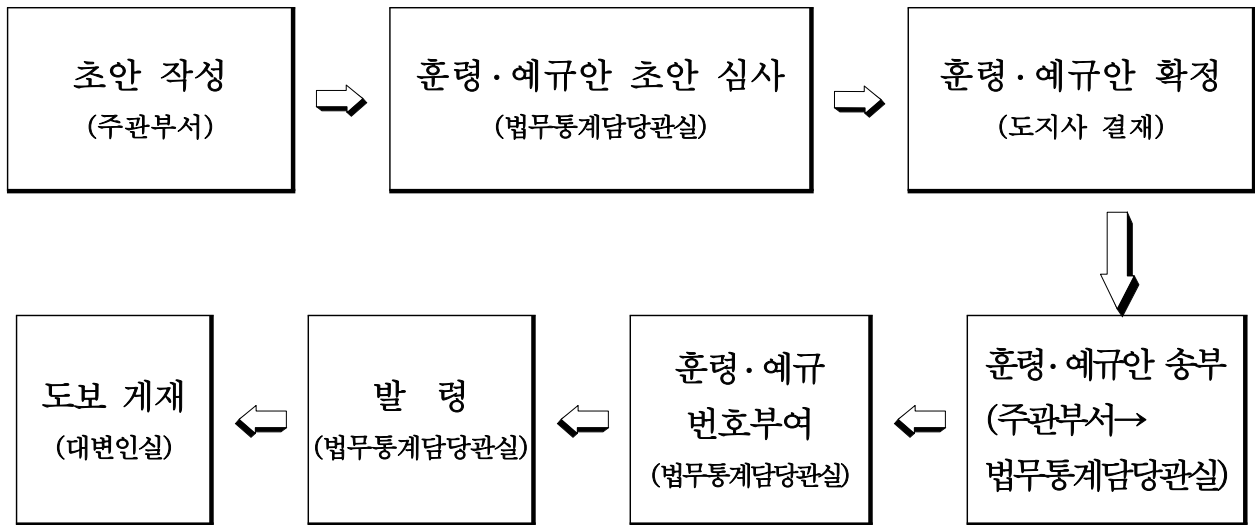
1. 훈령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행사를 지휘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 직무수행에 관한 지침을 시달하고 법령해석에 통일을 기할 목적으로 발하여 진다. 원칙적으로 법규와 같은 성질을 갖지 않으므로, 하급행정청을 구속할 뿐이지 직접 국민을 구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훈령에 위반하여도 특별권력관계의 명령위반이 될 뿐이며,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행위가 바로 위법 또는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명령적 훈령은 직무기준이나 법령해석의 기준을 설정한 것이며,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는 하급행정청을 구속하므로 사실상 법규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훈령의 실정법상 근거는 정부조직법 제6조 1항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통할권 및 지휘·감독권에서 당연히 유래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훈령은 하급기관에 대한 일반적인 명령이며, 직무명령은 상사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구체적 명령이라 하여 양자를 구별하는 것이 보통이다.

2. 예규

예규는 상급행정관청이 하급행정관청에 대하여 그 지휘권 내지 감독권으로서 발하는 명령 내지 지시로서 행정규칙의 한 형식이다. 예규통첩이라는 말과도 비슷하게 쓰이고 있는데, 예규는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명령할 때 취하는 형식이고 통첩은 세부적인 사항 및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항을 시달할 때 쓰이는 것이나, 엄격한 구분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예규는 법원이 될 수 없으므로 행정조직 내부 또는 특별권력관계의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국민에게 준수의무를 부과할 수 없으며, 재판의 규범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예규를 믿고 한 납세의무자의 행위가 반복됨으로써 과세관행이 성립된 경우에는 신의칙, 소급과세금지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3. 업무 흐름도



4. 부서별 담당 역할

《주관 실과》	《법무통계담당관실》
1. 초안 작성 ◦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조문 또는 일반문서 형식 ◦ 참고자료 작성·첨부 2. 훈령·예규안 확정 (도지사 결재) 3. 훈령·예규안 송부 ◦ 도보에 게재할 경우에 한하며 ◦ 일반시행문 형식으로 송달할 경우에는 번호만 부여받아 자체 처리 가능	1-1. 훈령 및 예규안 심사 3-1. 훈령·예규 번호 부여 4. 발령(대외적 공포는 필요치 않음) ◦ 도보에 게재할 경우에 한함 ※일반 시행문 형식으로 관계 기관(자)에게 송달하여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음

《대변인실》 - 필요시

4-1. 도보 게재

♣ 번호 순서대로 업무흐름이 진행됨

5. 제·개정 절차

가. 훈령·예규안 초안 작성

- 훈령 또는 예규의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제·개정안과 관계법령 등 참고자료를 포함한 결재초안을 작성하여 법무통계담당관실의 초안 심사를 받아야 함
- 이 경우 조문별 형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문서 형식으로 할 것인지는 주관부서의 판단사항이라 할 것이나, 개정의 경우에는 당초 개정대상 훈령 또는 예규의 형식에 따르는 것이 좋음

나. 훈령·예규안 초안 심사

- 도지사의 최종 결재전에 조문형식, 권한범위, 법령 적합성 등 일반적 유효요건 구비여부를 사전에 검토 받아 훈령·예규안을 확정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하급관청에서의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음

다. 훈령·예규안 확정

- 법무통계담당관실의 사전 심사를 마치고 도지사의 결재를 얻으면 훈령 또는 예규로 확정됨

라. 훈령·예규 송부

- 주관부서에서는 도지사의 최종결재를 받으면 도지사 결재원안과 훈령·예규가 수록된 컴퓨터용 파일을 법무통계담당관실로 송부하여 함

마. 발 령

- 훈령·예규는 도지사의 최종결재를 받으면 훈령·예규로 확정되기는 하나, 그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도보에 게재하거나 관계기관에 문서로써 송부하여야 함

실제 사례 예시

[별지 1-1] 방침결정(도지사결재) 및 훈령 등 초안 작성(개정)

문서번호	-	담	당	과	장	국	장	행	정	부	지	사	도	지	사	결
등록일자	. .															재
결재일자	. .															
공개여부	공개															
		공직감찰담당 법무통계담당관 법제담당														

전라남도 직장어린이집 운영규정 개정계획



전라남도
JeollaNamdo
(○○○○○○)

전라남도 직장어린이집 운영규정 개정계획

전남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규정상 모호한 조항, 관련 법령 및 규정의 개정, 보육여건의 변화 등으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1. 개정이유

-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 보육여건 변화에 따른 보육아동 정원 변경
-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 인용된 규정 명칭 변경사항 반영 등

2. 주요내용

- 보육정원 변경(아동 91명 → 아동 99명)
- 보호자의 전출 또는 퇴직으로 퇴소하는 경우 그 달의 마지막날 까지 보육가능하며, 잔여기간에 대한 보육료는 학부모가 부담 하도록 함.
-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용어의 변경(보육시설 → 어린이집)
- 인용된 규정 개정(「전라남도 상근인력규정」이 「전라남도 무기 계약근로자 관리규정」으로 변경)

3. 일부개정규정안 : 붙임

4.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1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

- 5. 관련부서 의견 : 이견없음
- 6. 예산조치 상황 : 해당없음
- 7. 사전예고 결과 : 해당없음
- 8. 사전협의(승인) 사항 : 해당없음
- 9.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전라남도 직장어린이집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0000년 월 일

전라남도지사 _____

전라남도 훈령 제 호

붙임 : 전라남도 직장어린이집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 1부

전라남도 직장어린이집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전라남도 직장어린이집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조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전라남도 상근인력규정에 의한 상근인력을”을 “전라남도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를”로 한다.

제4조 중 “삼향면 남악리 1000번지”를 “삼향읍 오룡길 1”로 한다.

제5조제3호, 제15조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종사원의”를 “보육교직원의”로, “교사”를 “보육교사”로, “91명”을 “99명”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어린이를”을 “아동을”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범위내에서”를 “범위에서”로 제3항 중 “일할계산에 의해 반환한다”를 “출석일수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한다”로 “전출에 의해 퇴소하고자 하는 경우”를 “전출 또는 퇴직으로 퇴소하는 경우”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시설장”을 “도지사”로 한다.

제15조 중 “사회복지법인”을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로 한다.

제1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제2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 제3항·제4항, 제11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제9조제1항 중 “의하며”를 “따르며”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전라남도청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생략) ② “공무원”이라 함은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과 전라남도 상근인력규정에 의한 상근인력을 말한다. 제3조(명칭) 전라남도청 직장보육시설 명칭을 전라남도청 비둘기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위치) 어린이집은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000번지 전라남도청내에 둔다. 제5조(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2. (생략) 3. <u>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u> 4. (생략) 제8조(보육교사 및 보육정원) ① 어린이집 종사원의 정원은 원장, 교사10명, 취사원 2명 등 <u>총13명으로</u> 하고 보육정원은 91명으로 한다. ② ~ ③ 생략 제9조(보육대상) ① 어린이집의 보육대상자는 도 분청·직속기관사업소 및 의회사무처 직원 자녀로 만6세 미만의 취학전 어린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육대상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동일순위일 경우 하위직 공무원 자녀를 우선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따라 ----- <u>직장어린이집의</u> ----- -----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① (현행과 같음) ② ----- ----- <u>다른</u> ----- <u>전라남도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를</u> -----. 제3조(명칭) ----- <u>직장어린이집</u> ----- ----- -----. 제4조(위치) ----- <u>삼향읍 오룡길 1</u> -----. 제5조(업무)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u>어린이집의</u> ----- 4. (현행과 같음) 제8조(보육교사 및 보육정원) ① ----- <u>보육교직원의</u> ----- <u>보육교사 10명,</u> ----- ----- <u>총 13명으로</u> ----- <u>99</u>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보육대상) ① ----- ----- ----- ----- <u>아동을</u> ----- ----- ----- <u>따르며</u> ----- -----.

현행	개정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대상자가 정원에 미달될 경우에는 도지사가 허가하는 도청구내 유관기관의 직원자녀도 보육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보육료) ① 어린이집의 보육료는 매년 도지사가 정하는 표준보육 단가의 범위내에서 보육을 위탁한 보호자로부터 소정의 보육료를 수납한다. ② (생략) ③ 입소후 결석에 의한 보육료는 공제하지 아니하며 보호자의 전출에 의해 퇴소하고자 하는 경우 그 달의 마지막날까지 보육할 수 있으며 잔여기간에 대한 보육료는 일할계산에 의해 반환한다. ④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간을 초과하여 보육할 때와 보육료 이외의 불가피한 경비를 징수할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보육신청) ① 어린이집에 영유아를 입소시키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보육신청서를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육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입소신청자 명부에 등재하여 신청순위에 따라 입소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재무·회계) 보육시설의 재무·회계는 사회복지법인의 재무·회계 규정을 준용한다.	② ----- 따른 ----- ----- ----- -----. 제10조(보육료) ① ----- ----- 범위에서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전출 또는 퇴직으로 퇴소하는 경우 ----- ----- 출석일수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한다. ④ ----- 따른 ----- ----- ----- ----- 따른다. 제11조(보육신청) ① ----- ----- - 따른 ----- 도지사에게 ----- -----. ② ----- ----- 신청순위와 제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 -----. 제15조(재무·회계) 어린이집의 -----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의 ----- ---.

[별지 1-2] 방침결정(도지사결재) 및 훈령 등 초안 작성(폐지)



녹색의 땅 전남

Green Jeonnam

감사담당 감사관 행정부지사 도지사		결
문서번호	-	재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 .	
공개여부	공 개	협조 법제담당 회계감사담당 공직감찰담당 기술감사담당 법무통계담당관

전라남도 감사심의실 운영규정 폐지계획



전라남도
(감사관실)

전라남도 감사심의실 운영규정 폐지 계획

자체감사계획의 타당성 및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의 심의·검토를 위해 전라남도 감사심의실 운영 규정을 제정하였으나 운영실적이 전무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폐지코자 함.

□ 규정 연혁

- 전라남도 감사심의실 운영규정 제정 : 1995. 7. 31(훈령 제915호)

□ 규정 주요내용

- 감사심의관 구성(제3조)
 - 심의관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
- 심의관 기능(제4조)
 - 자체감사계획의 타당성 심의·검토,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심의 등

□ 규정 폐지사유

- 자체감사계획의 타당성 및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의 심의·검토를 위해 전라남도 감사심의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였으나
- 1995년 제정 이후 감사심의실 운영실적이 전무함에 따라 본 운영 규정을 폐지코자 함

□ 참고사항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사전협의사항 : 없음
- 기타참고사항 : 없음

※ 붙임 : 전라남도 감사심의실 운영규정 폐지규정안 1부.

전라남도 감사심의실 운영규정 폐지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0000년 월 일

전라남도지사 _____

전라남도 훈령 제 호

붙임 : 전라남도 감사심의실 운영규정 폐지규정 1부.

전라남도 감사심의실 운영규정 폐지규정

전라남도 감사심의실 운영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2] 훈령(예규) 발령의뢰

삶이 풍요로워지는 미래도시, 녹색의 땅 전남



전라남도



수신 법무통계담당관
(경유)

제목 훈령·예규 발령 의뢰

전라남도청의무실 운영규정 등 2건의 훈령 및 예규안을 붙임과 같이 발령의뢰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훈령 등 개정안 1부. 끝.

사회복지과장

주무관

복지정책
담당

사회복지
과장

전결 2012. 11. 14.

협조자

시행 사회복지과-28718

(2012. 11. 14.)

접수 법무통계담당관-9962

(2012. 11. 14.)

우 534-700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 <http://www.jeonnam.go.kr>

전화번호 061-286-5721

팩스번호 061-286-4776

/ yo0401ho@korea.kr

/ 대국민 공개

도란도란 푸른전남, 초롱초롱 팔도강산

전라남도청의무실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전라남도청의무실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삼향면”을 “삼향읍”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명칭과 소재지) ① (생략) ② 의무실의 위치는 전라남도 무안군 <u>삼향면</u> 오룡길 1 전라남도청 구내에 둔다.	제2조(명칭과 소재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u>삼향읍</u> ----- -----.

전라남도청의무실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년 월 일

전 라 남 도 지 사 _____

전라남도 훈령 제 호

붙임 : 전라남도청의무실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 1부.

[별지 3] 훈령(예규) 발령공포

삶이 풍요로워지는 미래도시, 녹색의 땅 전남



전라남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훈령·예규 발령**

「전라남도청의무실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 등 2건의 훈령 및 예규를 0000. 0. 0. 발령할 예정이니 도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관련 실과는 동 규정의 시행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전라남도청의무실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 발령문 1부.

2. 전라남도 친환경농산물 음식점 인증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지침 발령문 1부. 끝.

법무통계담당관

수신자 대변인, 식품안전과장, 보건한방과장

주무관

법제담당

법무통계전결 2012. 11. 15.
담당관

협조자

시행 법무통계담당관-9992

접수

우 534-700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 <http://www.jeonnam.go.kr>

전화번호 061-286-2621

팩스번호 061-286-4777

/ ekna0310@korea.kr

/ 대국민 공개

도란도란 푸른전남, 초롱초롱 팔도강산

전라남도청의무실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0000년 0월 0일

전 라 남 도 지 사

인

전라남도 훈령 제 1289 호

붙임 : 전라남도청의무실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 1부.

전라남도청의무실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

전라남도청의무실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2항 중 “삼향면”을 “삼향읍”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절 고시 및 공고

1. 고시

행정기관이 결정한 사항, 또는 일정한 사항을 공식적으로 일반에게 널리 알리는 것으로, 공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내려진다. 대외적이기는 하나 명령적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법규성은 없으나 보충적으로 법규성을 가지는 일이 있으며, 일반처분성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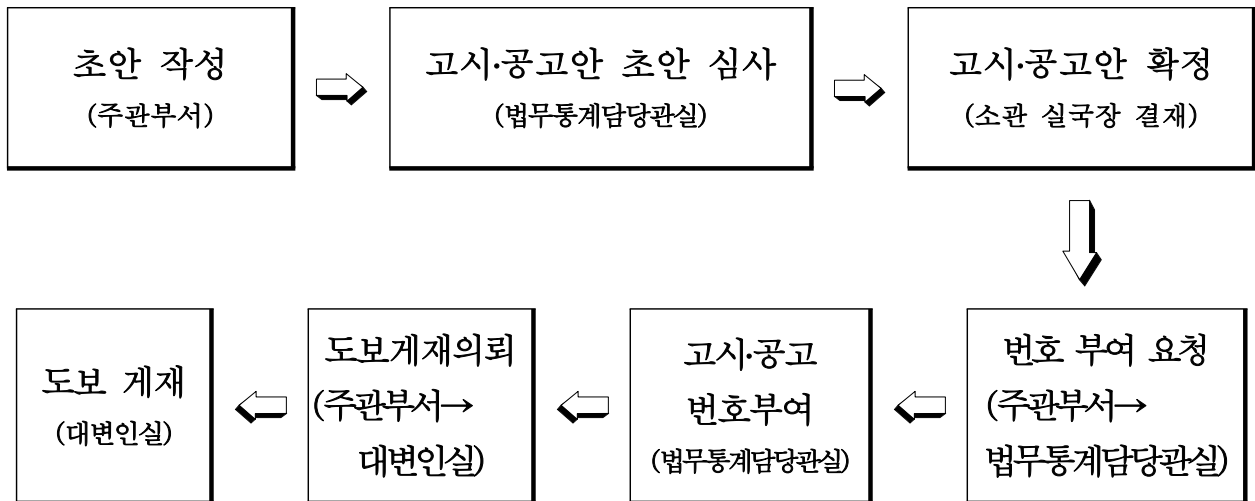
2. 공고

관청이나 공공단체 등이 광고나 게시 등에 의하여 어떤 사항을 널리 일반 대중에게 알리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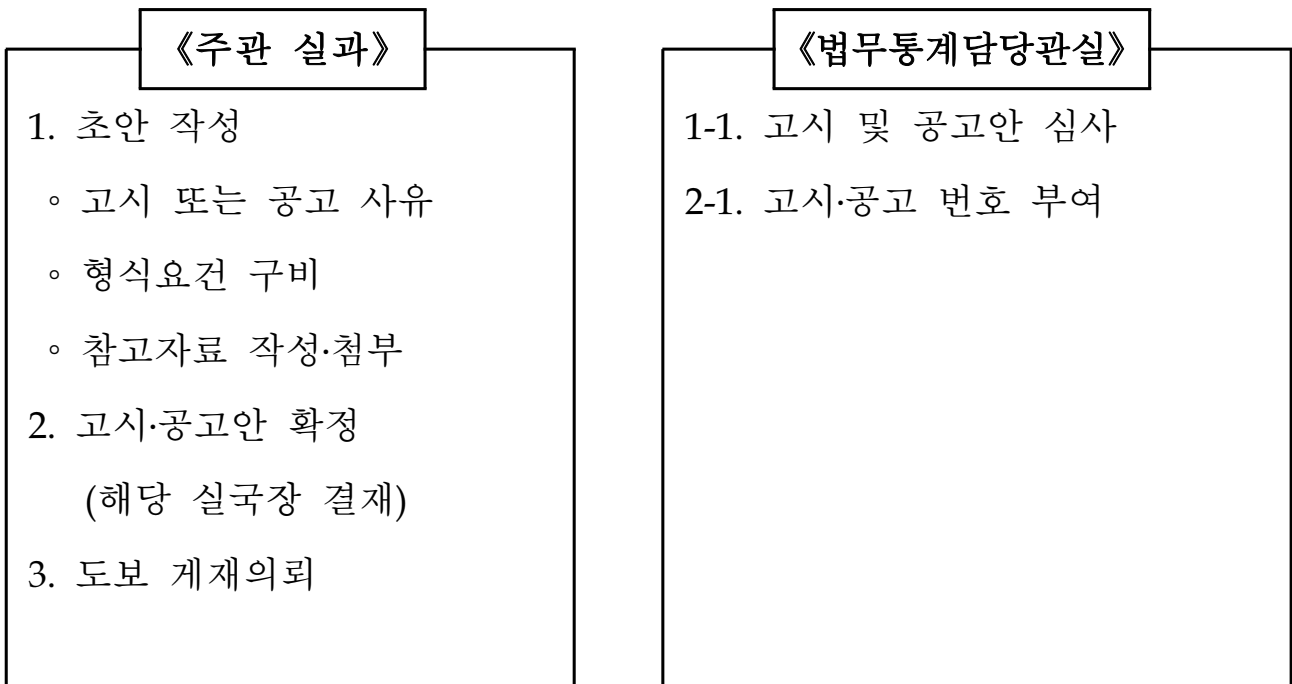
공고를 하는 경우는 법률상으로도 매우 많다. 목적은 일정한 사항을 사회에 공시하거나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신청의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해서, 또는 소재가 불명한 사람에 대한 통지의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방법으로는 관보나 신문에 게재하는 일이 많으며, 법원이나 시·구·읍·면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공보에 의하는 수도 있다.

특히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신문이나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도 무방하다. 공고된 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절차를 밟지 않으면 실권 등의 불리한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또 공고에 의하여 법률상 효과가 생기는 것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업무 흐름도



4. 부서별 담당 역할



《대변인실》

3-1. 도보 게재

♣ 번호 순서대로 업무흐름이 진행됨

5. 고시·공고 절차

가. 고시·공고안 초안 작성

- 고시 또는 공고 이유 및 주요내용, 고시·공고안과 관계법령 등 참고 자료를 포함한 결재안을 작성하여 법무통계담당관실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함
- 이 경우 체제는 전문 및 내용의 순으로 구성하되, 전문은 고시(공고)를 하는 취지, 고시(공고)의 년·월·일 및 기관장의 명칭 순으로 되어 있음
- 그러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하는 고시·공고에 있어서는 전문에서 그 근거법규의 명칭과 조문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

나. 고시·공고안 사전 심사

- 결재권자의 최종결재를 받기 전에 고시(공고)문의 형식, 알리는 방법, 법령 적합성 등 일반적 구비요건을 사전에 검토 받아 고시·공고안을 확정하는 것이 대외적 효력발생에 있어 문제의 소지를 없애고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음
- 예를 들자면 고시와 공고의 차이점과 효력요건을 간과한 채 과거의 관례만을 따라 고시로 하여야 할 것을 공고로 한다거나 또는 지정된 기일이 지난 후에 공고 또는 고시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행정행위의 성립에 있어 중대한 흠결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함

다. 고시·공고안 확정

- 법무통계담당관실의 사전 심사를 마치고 결재권자의 결재를 얻으면 고시 또는 공고안으로 확정됨

라. 고시·공고방법 및 효력발생 시기

- 고시·공고의 방법은 도보에 게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른 법령 및 고시·공고문서에 특별히 규정 또는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후 5일이 경과 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함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실제 사례 예시

삶이 풍요로워지는 미래도시, 녹색의 땅 전남



전라남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산림사업법인 등록고시 의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에 의거 도내 산림사업 법인
으로 등록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고시 의뢰하오니, 법무통계담당관은 고시번호를 부여해 주시고,
대변인은 홈페이지 및 도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사업법인 신규 등록 현황 -

법 인 명	등록번호	등 록 연월일	대표자	소 재 지	산림사업의 종 류	비고
(유)○○산림개발	전남2012-121	2012.11.12	○○○	전남 ○○군 ○○읍 ○○1길 26	도시림등 조성	업종 추가
(유)○○산림개발	전남2012-122	2012.11.12	○○○	전남 ○○군 ○○읍 ○○길 6-18	도시림등 조성	업종 추가
(유)○○산림개발	전남2012-123	2012.11.12	○○○	전남 ○○군 ○○읍 ○○1길 26	도시림등 조성	업종 추가

붙 임 산림사업법인 등록고시문 1부. 끝.

산 림 산 업 과 장

수신자 법무통계담당관, 대변인

주무관

산림기획담당 2012. 11. 12.
당

협조자 법제담당

시행 산림산업과-25815 (2012. 11. 12.)

접수 법무통계담당관-9863 (2012. 11. 12.)

우 534-700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 <http://www.jeonnam.go.kr>

전화번호 061-286-6624 팩스번호 061-286-4789

/ ljh8214@korea.kr

/ 대국민 공개

산림사업법인 등록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도내 산림사업 법인으로 등록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다 음 -

법 인 명	등록번호	등 록 연월일	대표자	소 재 지	산림사업의 종 류	비고
(유)○○산림개발	전남2012-121	2012.11.12	○○○	전남 ○○군 ○○읍 ○○1길 26	도시림등 조성	업종 추가
(유)○○산림개발	전남2012-122	2012.11.12	○○○	전남 ○○군 ○○읍 성내길 6-18	도시림등 조성	업종 추가
(유)○○산림개발	전남2012-123	2012.11.12	○○○	전남 ○○군 ○○읍 ○○1길 26	도시림등 조성	업종 추가

0000 년 0 월 0 일

전 라 남 도 지 사



전라남도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 공고 의뢰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수리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코자 하오니

2. 대변인실에서는 도보(전남새뜸)에 게재하여 주시고,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는 공고번호를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전라남도지사

수신자 대변인, 법무통계담당관

주무관

민간협력담당

종합민원실장

전결 11/07

협조자

시행 종합민원실-11219 (2012. 11. 08.) 접수 법무통계담당관-9781 (2012. 11. 08.)

우 534-700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 <http://www.jeonnam.go.kr/>

전화 061-286-2361 전송 062-286-4732 / oak925@korea.kr / 대국민 공개

온새미로 누리쉼터 순천만과 함께해요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등록 하였고 공고합니다.

0000. 0.

전라남도지사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 】

□ 등록 변경

단체명	변경구분	변경 내역		비고
		당 초	변 경	
전남장애인재활수련 협회	단체명칭	전남장애인재활수련센터	전남장애인재활수련협회	
	대표자	○ ○ ○	○ ○ ○	



제3장 부 록

-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 195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 225
- 전라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 245
- 전라남도 법무행정사무처리 규칙 / 254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법률 제12687호, 2014.5.28, 타법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제1장 총강(總綱) 제1절 총칙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6, 2007.5.17, 2009.12.29, 2011.7.14>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제1장 총칙

지방자치법 [법률 제12687호, 2014.5.28, 타법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 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 개선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전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지방자치법 [법률 제12687호, 2014.5.28, 타법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지방자치법 [법률 제12687호, 2014.5.28, 타법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 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 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 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①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배분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9조제2항제1호의 사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통된 사무로 한다.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인구 50만 이상 시의 사무의 특례)

지방자치법 [법률 제12687호, 2014.5.28, 타법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1. 시·도 가.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 나. 시·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다.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라. 국가와 시·군 및 자치구 사이의 연락·조정 등의 사무 마. 시·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부적당한 사무 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무 2. 시·군 및 자치구 제1호에서 시·도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는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경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무가 서로 경합하면 시·군 및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한다. 제11조(국가사무의 처리제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① 삭제 <2008.10.8> ② 법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의 예시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0.8>

지방자치법 [법률 제12687호, 2014.5.28, 타법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1. 외교, 국방, 사법(司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2.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 3.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 4. 국가종합경제개발계획, 국가하천, 국유림, 국토종합개발계획, 지정항만, 고속국도·일반국도, 국립공원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5. 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 6. 우편, 철도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7.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검사·시험·연구, 항공관리, 기상행정, 원자력개발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과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	
제2장 주민 제15조(조례의 제정과 폐지 청구) ①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19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도와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제11조(주민 총수의 공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19세 이상의 주민(이하 "19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의 총수를 매년 1월 10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13]

지방자치법 [법률 제12687호, 2014.5.28, 타법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4.1>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9.4.1>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3.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제12조(청구인의 대표자 증명 등) ①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하려는 청구인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 등을 적은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 및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안(이하 "주민청구조례안"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문서로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4>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표자가 19세 이상의 주민인 경우에만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취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5조(청구인명부의 제출) ① 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9세 이상의 주민의 수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민 수 이상이 되면 제13조제4항에 따른 서명 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인명부가 제출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표자의 성명·주소, 청구취지 및 이유, 연서주민수, 청구인명부 열람기간·장소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법률 제12687호, 2014.5.28, 타법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③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이 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인명부에 적어야 하며, 청구인의 대표자는 조례의 제정안·개정안 및 폐지안(이하 "주민청구조례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1.7.1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청구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⑤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4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4.1>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제4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이를 이의신청을 한 자와 제3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4.1>	제16조(청구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의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시·군·자치구별로,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읍·면·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③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명부에 적힌 서명이 정당한 서명자가 아니거나 누구의 서명인가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조례·규칙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서명을 무효로 결정하고 청구인명부를 수정한 후 그 사실을 즉시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8.13>

지방자치법 [법률 제12687호, 2014.5.28, 타법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 제5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6항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청구를 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를 각하하되,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4.1>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청구를 각하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9.4.1>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4.1, 2011.7.14> ⑩ 제1항에 따른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표, 외국인등록표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9.4.1> ⑪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제15조의2(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청구된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제15조제9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할 때 그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결정으로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9세 이상의 주민수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민 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대표자로 하여금 시·도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에 따라 보정된 청구인명부가 제출되면 열람기간·장소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7조(청구요건 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8.13> ② 법 제15조제8항에 따른 청구인 대표자의 의견 제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8.13>

지방자치법 [법률 제12687호, 2014.5.28, 타법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② 지방의회는 심사 안건으로 부쳐진 주민 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14]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와 제17조 제1항에 따라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주무부장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 내용이 둘 이상의 부처와 관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처리 주무 부처를 지정하고 그 부처로 하여금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하여 주민 감사청구를 일괄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20조(주민의 감사청구 절차) ① 19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4조,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 제1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는 "감사"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로, "조례·규칙심의회"는 "감사청구심의회"로 본다.

지방자치법 [법률 제12687호, 2014.5.28, 타법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③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끝내야 하며, 감사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감사를 끝내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미리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④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이 감사를 청구한 사항이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이거나 감사 중인 사항이면 그 기관에서 실시한 감사결과 또는 감사 중인 사실과 감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알리겠다는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기관에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21> ⑤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 감사청구를 처리(각하를 포함한다)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1.7.14> ⑥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감사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그 조치 결과를 지방의회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대표자가 19세 이상의 주민인 경우에만 대표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서명은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시·도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명 요청 기간을 계산할 때에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대표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9세 이상의 주민 수가 법 제16조에 따른 주민 수 이상이 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서명 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시·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주무부장관에게,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청구인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주무부장관은 해당 부처와 시·도 및 시·군·자치구별로,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와 시·군·자치구 및 읍·면·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고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⑥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제1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결정으로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19세 이상의 주민 수가 법 제16조에 따른 주민 수에 못 미칠 때에는 대표자로 하여금 시·도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법률 제12687호, 2014.5.28, 타법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⑦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조치요구내용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19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19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은 "감사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로 본다. <개정 2009.4.1>	제21조(감사 절차 등)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법 제16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감사와 감사결과에 따른 필요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10.13> 제22조(감사결과의 공표)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감사가 끝나면 지체 없이 감사 실시 개요와 청구 대상 사무 처리의 적법 여부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3조(부처 간 협조) ①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 감사청구를 처리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부처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요구나 관계 공무원의 지원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이나 감사 중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가 청구된 경우에는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감사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그 감사기관에 감사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감사가 끝나면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부처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감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법률 제12687호, 2014.5.28, 타법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제3장 조례와 규칙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24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공표 방법 등) 법 제16조제7항, 이 영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7항 및 제22조에 따른 관련 사항의 공표는 관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게시판·전산망 또는 일간신문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5조(보고 등)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1. 법 제16조제7항, 이 영 제12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7항 및 제22조에 따른 공표를 한 경우 2.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감사결과에 따른 필요 조치를 요구하고 그 조치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제2장 조례와 규칙

지방자치법 [법률 제12687호, 2014.5.28, 타법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제25조(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하거나 격을 변경할 때의 조례·규칙의 시행) 지방자치단체를 나누거나 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격이 변경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새로운 조례나 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종래 그 지역에 시행되던 조례나 규칙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의회가 재의에 부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기간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요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도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제29조(조례와 규칙의 공포 절차) ① 조례와 규칙의 공포문에는 전문(全文)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③ 법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법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제30조(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 등) ① 법 제26조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지방자치법 [법률 제12687호, 2014.5.28, 타법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따른 확정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 제2항 및 제6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공포한 때에는 즉시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조례를 공포한 때에는 이를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4> ⑧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11.7.14> ⑨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14>	②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공고하거나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을 준용하되, 법 제133조제2항에 따른 예산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71조(지방의회의 재의 및 절차) ① 법 제26조와 법 제107조 또는 법 제108조에 따른 재의(再議)의 요구는 지방의회가 폐회 중일 때에도 할 수 있으며, 재의를 요구받은 지방의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의에 부쳐야 한다. 이 경우 폐회 중 또는 휴회 중인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그 의결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114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 및 제소 등의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주무부장관에게 즉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1. 법 제26조제3항, 법 제107조제1항 또는 법 제10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한 경우 또는 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2. 법 제1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군 및 자치구의 지방의회 의결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게 한 경우 또는 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3. 법 제107조제3항 및 법 제172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경우 또는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결정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법 [법률 제12687호, 2014.5.28, 타법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제27조(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관할 구역 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4.1> ③ 삭제 <2009.4.1> ④ 삭제 <2009.4.1> ⑤ 삭제 <2009.4.1> 제28조(보고)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경우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규칙은 공포예정 15일 전에 시·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그 전문(全文)을 첨부하여 각각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4. 법 제172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소를 지시한 경우나 직접 제소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경우 또는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결정이 있는 경우 5. 법 제172조제7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대법원에 직접 제소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경우 또는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결정이 있는 경우 제28조(조례·규칙심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지방자치법 [법률 제12687호, 2014.5.28, 타법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제외한다. 3.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 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규칙안 5. 예산안·결산안, 그 밖에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③ 심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부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실장·국장 또는 실장·과장이 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대학교수 및 시민단체대표 등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8.13>

지방자치법 [법률 제12687호, 2014.5.28, 타법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제5장 지방의회 제3절 권한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지방의회 제36조(중요 재산, 공공시설의 취득·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①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해당하면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7.7> ③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이란 법 제144조에 따라 조례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신·증설, 용도폐지·변경 및 공공시설로서의 성질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讓與)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으면 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 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이나 공공시설의 설치·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거나 의견을 청취한 경우에는 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

지방자치법 [법률 제12687호, 2014.5.28, 타법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제4절 소집과 회기 제46조(부의안건의 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중 긴급한 안건을 부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절 회의 제6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위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4>	제37조(교류협력의 범위) 법 제39조제1항제 10호에서 "교류협력"이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을 말한다.

지방자치법 [법률 제12687호, 2014.5.28, 타법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⑤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 개정조례안 중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신설 2011.7.14> 제66조의2(조례안예고) ① 지방의회는 심사 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② 조례안예고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14] 제66조의3(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14]	

지방자치법 [법률 제12687호, 2014.5.28, 타법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제6장 집행기관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2관 권한 제102조(국가사무의 위임)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제103조(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장 집행기관

지방자치법 [법률 제12687호, 2014.5.28, 타법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 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관 지방의회와의 관계 제107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72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71조(지방의회의 재의 및 절차) ① 법 제26조와 법 제107조 또는 법 제108조에 따른 재의(再議)의 요구는 지방의회가 폐회 중일 때에도 할 수 있으며, 재의를 요구받은 지방의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의에 부쳐야 한다. 이 경우 폐회 중 또는 휴회 중인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그 의결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114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 및 제소 등의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주무부장관에게 즉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1. 법 제26조제3항, 법 제107조제1항 또는 법 제10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한 경우 또는 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법 [법률 제12687호, 2014.5.28, 타법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제108조(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 요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를 줄이는 의결을 할 때에도 제1항과 같다. 1.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2.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법 제1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군 및 자치구의 지방의회 의결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게 한 경우 또는 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3. 법 제107조제3항 및 법 제172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경우 또는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결정이 있는 경우 4. 법 제172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재소를 지시한 경우나 직접 제소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경우 또는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결정이 있는 경우 5. 법 제172조제7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대법원에 직접 제소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경우 또는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결정이 있는 경우 제71조(지방의회의 재의 및 절차) ① 법 제26조와 법 제107조 또는 법 제108조에 따른 재의(再議)의 요구는 지방의회가 폐회 중일 때에도 할 수 있으며, 재의를 요구받은 지방의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의에 부쳐야 한다. 이 경우 폐회 중 또는 휴회 중인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그 의결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114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 및 제소 등의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지방자치법 [법률 제12687호, 2014.5.28, 타법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제107조제2항을 준용한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주무부장관에게 즉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1. 법 제26조제3항, 법 제107조제1항 또는 법 제10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한 경우 또는 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2. 법 제1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군 및 자치구의 지방의회의결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게 한 경우 또는 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3. 법 제107조제3항 및 법 제172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경우 또는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결정이 있는 경우 4. 법 제172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소를 지시한 경우나 직접 제소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경우 또는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결정이 있는 경우 5. 법 제172조제7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대법원에 직접 제소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경우 또는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결정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법 [법률 제12687호, 2014.5.28, 타법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제109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제64조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게 될 때를 말한다)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선결처분(先決處分)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결처분은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에서 제2항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선결처분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이나 제3항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72조(선결처분) ① 법 제109조제1항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2.29> 1. 천재지변이나 대형화재로 인한 피해의 복구 및 구호 2. 중요한 군사안보상의 지원 3. 급성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4. 그 밖에 긴급하게 조치하지 아니하면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결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시·도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13, 2013.3.23, 2014.11.19>
제7장 재무	제5장 재무
제2절 예산과 결산	
제132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절 수입과 지출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법률 제12687호, 2014.5.28, 타법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9.4.1>	
제9장 국가의 지도·감독	제7장 국가의 지도·감독
제166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정지원이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청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법 제166조와 제167조에 따른 조언·권고 또는 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정책이나 시책 수립·결정·집행과정 등에서 정책이나 시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주민의 여론이나 지역실태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법률 제12687호, 2014.5.28, 타법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제167조(국가사무나 시·도사무 처리의 지도·감독)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차로 시·도지사의,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② 시·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도의 사무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제169조(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제170조(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나 시·도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제111조(명령·처분의 취소·정지 등의 보고)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즉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1. 법 제16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한 경우와 명령·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한 경우 2. 법 제169조제2항에 따라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또는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 제112조(직무이행명령 등의 통보 및 보고) 법 제170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제1호와 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지방자치법 [법률 제12687호, 2014.5.28, 타법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②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기간에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으로 대집행하거나 행정상·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명령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71조(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①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개정 2008.2.29, 2010.6.8, 2013.3.23,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해당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0.6.8, 개정 2013.3.23, 2014.11.19> 제17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①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1. 법 제170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이행명령을 한 경우 2. 법 제170조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대집행(代執行)하거나 행정·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3. 법 제170조제3항에 따라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경우 또는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결정이 있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명령을 이행한 경우 제115조(주무부장관의 통보)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즉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1. 법 제172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한 경우 2. 법 제172조제4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경우나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결정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법 [법률 제12687호, 2014.5.28, 타법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②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訴)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제소의 지시는 제3항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소지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소하여야 한다. ⑥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5항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어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법령에 위반되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조례안인 경우로서 재의요구지시를 받기 전에 그 조례안을 공포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3. 법 제172조제7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경우와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결정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법 [법률 제12687호, 2014.5.28, 타법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⑧ 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나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둘 이상의 부처와 관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하면 행정자치부장관이 재의요구 또는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개정 2011.10.14>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의 별표 1

구분	시·도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조직 및 행정 관리 등에 관한 사무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에 각각 공통된다.	
2.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1) 주민복지 증진 및 주민보건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 2) 시·군·자치구에 공통되는 복지업무의 연계·조정·지도 및 조언	1) 주민복지 증진사업계획의 수립·시행 2) 시·군·자치구 단위 주민복지시설의 운영·지원 3) 주민복지 상담 4) 환경위생 증진 등 주민보건 향상을 위한 사업 실시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1) 사회복지시설의 수요 판단과 지역별 배치 등 기본계획의 수립 2)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3) 사회복지법인의 지도·감독 및 지원 4) 사회복지시설 수혜자에게 비용 수납 및 승인	1)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2) 사회복지시설 수혜자에게 비용 수납 3)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보조 및 지도 4) 사회복지법인 등의 시설 설치 허가 및 그 시설의 운영 지도
다. 생활이 어려운 자의 보호 및 지원	1) 생활보호 실시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 2) 생활보호비용의 일정액 지원 3) 시·군·자치구에 대한 생활보호 보조금 지급	1) 생활보호대상자 조사·선정 2) 생활보호대상자의 보호·관리 3) 생활보호의 실시(생업자금대여, 직업훈련, 취로사업, 수업료 지급, 장제보호비 지급 등)

구분	시·도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 증진	4) 생활보호기금의 적립 및 운용 관리 5) 의료보호진료 지구의 설정 6) 의료보호시설의 지정 7) 의료보호기금의 설치·운용	4) 생활보호비용의 일정액 지원 5) 생활보호대상자의 부양의무자에게 보호비용 징수 6) 생활보호기금의 적립 및 운용 관리 7) 생활보호의 변경과 중지 8) 의료보호대상자 관리 및 의료보호의 실시(진료증 발급 등) 9) 의료보호기금의 설치·운용
	1) 노인복지사업계획 수립·조정 2) 경로사업의 실시·지원 3)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 4) 아동복지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 5) 아동상담소의 설치·운영 6) 아동전용시설의 운영 7) 아동보호조치 8)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지원 9) 아동복지단체의 지도·육성 10) 장애인복지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조정 11) 장애인의 검진·재활상담 및 시설에의 입소 12) 장애인의 고용 촉진 13)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지도·권고 14)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15) 청소년 건전육성계획 수립·조정 16)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1) 노인복지사업계획 수립·시행 2) 노인복지사업의 시행 3) 경로행사 등 경로사업의 실시·지원 4)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 5) 아동복지사업계획 수립·시행 6) 아동상담소의 설치·운영 7) 아동전용시설의 운용 8) 아동보호조치 9)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지원 10) 아동복지단체의 지도·육성 11)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후견인 지정 12) 장애인복지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 13) 장애인의 파악·관리 14) 장애인의 검진, 재활상담 및 시설에의 입소 15) 장애인의 고용 촉진 16)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지도 17)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구분	시·도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17)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시·도 단위) 18) 청소년육성 기본계획의 연도 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19) 청소년의 달 행사 추진 20) 청소년단체 육성·지원 21)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 22) 불우청소년 보호 지원 23) 여성복지 종합계획 수립·조정 24) 모자보건사업계획의 수립·조정 25) 여성단체 육성·지원 26) 여성복지시설의 운영·지원 27) 성매매피해자 등의 선도 및 직업교육·지원	18) 청소년선도대책 수립·추진 19) 보호할 필요가 있는 청소년의 선도·계몽 20) 불우청소년보호 21)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22)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시·군·구 단위) 23)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24) 청소년의 달 행사 추진 25) 여성복지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 26) 모자보건사업의 세부계획 수립·시행 27) 모자보건기구의 설치·운영 28) 모자보건대상자의 선정(수첩의 발급 등) 29)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 30) 여성교실 운영 및 여성 교육 31) 여성단체 육성·지원 32) 여성복지시설의 운영·지원 33) 성매매피해자 등의 선도 및 직업교육·지원
마. 국민건강증진 사업	1) 주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계획 수립 2)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운영 3) 보건교육 지도·감독 4) 영양개선업무 지도·감독 5) 구강건강사업계획 수립	1) 주민건강증진업무 세부계획수립 2) 주민건강실천운동 지원 3)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운영 4) 보건교육의 실시 및 지도·감독 5) 영양개선업무 수행 및 조사 6) 구강건강사업의 수행
바.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1) 시·군·자치구 보건소 설치·운영비의 지원 2) 보건환경연구원의 설치	1) 보건소 및 지소의 설치·운영 2) 무의촌(無醫村) 및 오지 주민에 대한 순회 진료

구분	시·도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사. 전염병 및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3) 시·도의료원의 설치·운영 4) 공중보건역사의 배치·지도 5) 보건진료소 설치·운영비의 지원	3) 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
	1) 전염병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및 주민 홍보 2) 전염병 예방시설 설치 3) 전염병 예방·방역과 그에 따른 비용 지원 4) 전염병 진료를 위한 대응기관의 지정 및 기관에 대한 경비 보조 5)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1) 전염병 예방을 위한 주민 홍보·제도 2) 전염병 예방접종 실시 3) 전염병 예방대응시설 지정 및 운영 4) 전염병의 예방조치와 소독의 실시 5) 전염병환자의 격리수용 및 진료 조치 6)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아.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1)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및 공설 납골당의 설치·운영(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의 허가 3) 재단법인이 설치한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의 구역 및 시설 변경과 폐지허가 4) 재단법인이 설치한 묘지·화장장·납골당의 이전명령, 시설 개수 또는 허가취소 5) 분묘의 일제신고 6) 시체운반업 허가	1)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및 공설 납골당의 설치·운영(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매장·화장 및 개장신고와 묘적 부관리 3) 종중·문중 또는 자연인이 설치하는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의 허가 4) 종중·문중 또는 자연인이 설치한 묘지·화장장·납골당의 구역 및 시설변경과 폐지허가 5) 종중·문중 또는 자연인이 설치한 묘지 등의 이전명령, 시설개수 또는 허가취소 6) 무연분묘(無緣墳墓)의 정리 7) 분묘의 개장명령 8)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구분	시·도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자. 공중접객업소의 위생 개선을 위한 지도	1) 공중접객업소의 위생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1)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종합지도계획 수립·시행 2) 식품접객업소 시설의 설치 지도 3)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4)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현장검사·수거 등 5) 식품접객영업소의 영업 허가 및 취소 6) 위생접객업소의 등급 설정 7) 위생접객업 등의 허가 및 신고 수리 8) 위생접객업 등의 휴업·폐업 신고 수리 9) 위생접객업자 등에 대한 공중 위생 지도·명령 10) 위생접객시설의 개선명령 11) 위생접객업 허가의 취소 등 제재처분 12) 공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신고 수리 13) 공중이용시설 관리상태의 검사 및 시정지시
차. 청소·오물의 수거 및 처리	1)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수립 2) 일반폐기물(분뇨, 쓰레기 등) 처리시설의 설치·운영(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일반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및 지도·감독(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제외한다) 4) 광역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	1) 일반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수립 2) 일반폐기물(분뇨, 쓰레기 등) 처리 시설의 설치·운영(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일반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및 지도·감독(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만 해당한다) 4) 일반폐기물의 적정관리 조치 5) 일반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한 지도

구분	시·도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5) 분뇨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설계 시공업의 등록 및 지도·감독 6) 일반폐기물 처리사업자가 받아야 하는 일반폐기물의 처리 수수료 요율 결정 7) 일반폐기물의 처리수수료 요율 결정(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6) 일반폐기물 처리수수료의 요율 결정 7)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의 신고 수리 및 관리 8) 일반폐기물 재활용신고의 수리 및 관리 9) 폐기물 처리에 관한 보고·검사 등 조치명령 10) 특별청소지역의 지정 및 조정 11) 특별청소지역 내의 일반폐기물 수집·처리 12) 특별청소지역 내의 분뇨사용 제한 13) 분뇨·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등 14)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설치 신고 수리 및 관리 15) 대청소 실시계획의 수립·시행 16) 공중변소, 공중용 쓰레기용기 및 쓰레기 적환장(積換場)의 설치·유지 관리
카.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1) 지방공기업사업 운영계획 수립·시행 2) 지방공기업자산의 취득 관리·처분 3)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의 설치 4) 지방공기업 관련 지방채의 발행 5) 시·군·자치구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지도·조언 6) 지방공사의 설립·운영 7) 지방공단단의 설립·운영	1) 지방공기업사업 운영계획 수립·시행 2) 지방공기업자산의 취득 관리·처분 3)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의 설치 4) 지방공기업 관련 지방채의 발행

구분	시·도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타.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지원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3.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가. 늪지·보(浞)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1) 농업용수 개발사업계획 수립·조정 2) 농업용수시설의 유지·관리 3) 전천후 농업용수원 개발 4) 관정·양수장비 관리 지침 시달·지원 5) 농업용수시설 사업의 보조금 지원	1) 농업용수 개발사업 추진 2) 관개시설의 유지·관리 3) 관정·양수장비 확보·관리 4) 소규모 농업용수시설의 유지·관리 5) 농업용수개발을 위한 농지개발계조직·운영
나. 농림·축·수산물 의 생산 및 유통 지원	1) 농림·축·수산물 생산사업의 지원 2)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지원 3) 양식사업 및 어업기반조성 계획의 수립·조정 4) 농작물병충해 방제계획 수립·조정 5) 우량종자 보급의 권장과 안정공급 6)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운영 (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7) 축산물 유통개선 지도 지원 8) 축산물 등급제 지도 지원 9) 도축장 허가 및 지도 감독 10) 경지이용도 제고대책 강구 지도 11) 농지 및 농지임대차의 관리 지도	1) 농림·축·수산물 생산 지원 및 관리 지도 2)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의 시행 3) 양식사업 및 어업기반 조성을 위한 지도 및 지원 4) 식량작물 생산 장려 5) 농작물병충해 방제계획 수립 및 조정 6)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운영 (군과 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7) 가축시장 개설·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8) 축산물 유통개선 지도 9) 축산물 등급제 지도 10) 관영(官營)도축장 운영관리 11) 경지이용계획 수립 추진 12) 농지 및 농지임대차의 관리

구분	시·도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다. 농업자재의 관리	1) 농기계·비료·농약 등 농업자재의 공급계획·시달 2) 농업기계의 공동이용 촉진·연구 개발 3) 농업기계화 공동이용 시범단지 조성	1) 농기계·비료·농약 등 농업자재의 원활한 공급관리 2) 농업자재의 보유량 파악 및 관리 지도 3) 농기계 수리센터의 설치 권장 4) 영농자재의 공급 알선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1) 도단위 복합영농사업 세부추진 계획 수립·추진 2) 복합영농 시범단지 확정 3) 복합영농 시범사업 용자금 관리	1) 복합영농기획단 설치·운영 2) 복합영농권역 설정 및 시범단지 선정 3) 복합영농 시범마을 확정 4) 면 단위 복합영농지원협의회 구성 및 마을단위 복합영농 지도반 편성 5) 복합영농 시범단지 사업계획수립 지도 6) 복합영농생산 지원 및 출하 조정
마. 농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1) 농어촌 소득원 개발 기본계획 수립 2)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계획 추진 3) 농어촌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계획 수립 4) 농어촌 휴양사업 추진	1) 농어촌 소득원 개발 시행계획 수립 2)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지원·지도 3) 농어촌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지도·운영 4) 농어촌 휴양사업 지정개발 및 지원과 운영·지도
바. 공유림관리	1) 지역산림계획 작성 2) 산림병충해 방제 지도 3) 천연림 보육사업 지도 4) 농촌임산연료 수급계획 수립·추진 5) 특수조림지 관리 6) 공유림 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소 운영	1)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및 변경 명령 2) 산림경영계획에 의한 시업(施業) 신고 수리 3) 조림사업 추진 및 육림 관리 4) 산불예방, 도·남벌 단속 등 산림 보호 5) 산림병충해 방제

구분	시·도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6) 천연림 보육사업 추진 7) 입목벌채 등 산림 훼손 허가와 신고 수리 8)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및 해제 9) 입산허가 10) 농촌입산연료 수급 지도 11) 지역공동 산불예방 활동 전개 12) 부정입산물 단속 등 입산물 반출·반입 통제
사. 소규모 축산 개발 및 낙농진흥사업	1) 소규모 축산 개발 및 낙농진흥사업계획 수립·조정 2) 전업양축농가 육성사업 추진 3) 초지조성 및 사료작물재배 사업계획 등 수립·조정 4) 종축장 운영 5) 보호종축의 지정 6) 가축 개량·증식·보호	1) 축산진흥·지방특화사업 추진 2) 초지조성 관리 및 사료작물재배사업 추진 3) 축산단지 조성 및 종축 관리 4) 가축개량·증식 및 유축농가 조성 5) 가축인공수정소 등록수리 6) 우량종축의 보급 7) 종축검사
아. 가축전염병 예방	1)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검진·투약조치 등 2) 전염병 발생 가축의 격리·이동제한 등 3)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설비 명령 4) 가축위생시험소 운영 5) 가축방역관의 위촉 및 지도·감독	1) 병든 가축의 신고수리 2) 가축전염병 예찰 및 발생보고 3)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진료 4) 공수의와 가축방역관의 위촉 및 지도·감독 5) 동물병원 개설 신고수리
자.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1) 지역산업의 육성계획 수립추진 2) 지역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유지 및 보급 3) 지역산업의 발전방향 제시 4) 지역 내 기업의 정보, 기술 및 자금의 알선 지원	1)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2) 지역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유지 및 보급 3) 지역 내 기업의 정보·기술 및 자금수요 파악 및 지원

구분	시·도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차. 소비자보호 및 저축의 장려	5) 지역산품전시회 개최 및 구매자 유치 지원 6) 지역 내 노사관계 동향파악 및 지원 7)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공장 유치	4) 지역산품전시회 개최 및 구매자 유치 지원 5) 지역 내 노사관계 동향 파악 및 지원 6)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공장 유치
	1) 소비자보호시책 수립 2) 물가 지도를 위한 시책 수립·추진 3) 소비자 계몽과 교육 4) 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설치·운영 5)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험·검사 시설의 지정 또는 설치 6) 지방소비자보호위원회 설치 7) 민간 소비자보호단체 육성 8) 국민저축운동의 전개	1)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시행 2) 가격표시제 실시업소 지정·관리 3) 물가지도 단속 4) 소비자 계몽과 교육 5) 소비자고발센터 등 소비자보호 전담기구의 운영·관리 6) 민간 소비자보호단체의 육성 7) 저축장려 및 주민홍보
카. 중소기업의 육성	1) 지방중소기업 육성지원계획수립 2) 중소기업 창업 및 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운영 3) 중소기업협동화 사업단지 조성 지원 4) 중소기업이전 실시계획의 작성 5)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6) 중소기업 시범공단 조성 7)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1) 지방중소기업 육성지원 세부 계획의 수립·추진 2) 중소기업 창업계획의 승인 3) 중소기업 창업 및 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운영 4) 중소기업협동화 사업단지 조성 지원 5) 중소기업이전 실시계획의 작성 6) 해당 지역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7) 중소기업 육성보조금 지급 8) 중소기업 육성·지원업체의 선정·추천

구분	시·도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타.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 지원	1) 지역특화산업 육성개발계획 수립·조정 2) 지역특화산업 업종선정 3) 지역특화산업 발전을 위한 지도 4) 지역특화산업 개발을 위한 연구 및 지원	1) 시·군·자치구 단위지역특화산업 육성개발계획 수립·시행 2) 지역특화산업체의 유치 3) 지역특화산업체의 육성·지원 4) 지역특화산업 생산물의 판로 개척
파.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 민예품 개발	1) 민속공예산업 육성실시계획작성 2) 민속공예품 생산업체 지정 3) 공예품 전시판매장 운영 4) 우수토산품 개발·보급	1) 민속공예산업 육성실시계획수립·시행 2) 우수토산품 등의 개발·보급 3) 토산품 전시관 운영 4) 공예품 등 전문생산업체 지원 5) 토산품 등 생산기술전승자의 발굴·보호
4.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 설치 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1) 지역개발사업계획의 수립·조정 2) 국가개발계획과 지역개발계획과의 연계·조정 3) 새마을사업 종합계획 수립·추진 4) 농어촌 새마을사업 지도 5) 도시 새마을운동 지도 6) 국토공원화 사업 지원 7) 취약지역 및 특수지역 개발	1) 지역개발사업계획의 수립·시행 2) 읍·면·동 개발위원회의 설치·운영 3) 새마을사업 추진계획 수립·시행 4) 새마을 광역권사업 추진 5) 새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 6) 소도읍 가꾸기 사업 시행 7) 농어촌 휴양지의 개발 8) 도시 새마을운동 추진 9) 국토공원화 사업의 추진 10) 취약지역 및 특수지역의 개발 사업 시행
나. 지방토목·건설 사업의 시행	1) 시·도 건설종합계획의 수립·조정 2) 토목·건설공사의 시행 및 지도 3) 국민주택 건설사업의 시행(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시·군·자치구 건설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토목·건설공사의 시행 및 지도

구분	시·도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4)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설치·운영(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주택건설사업소 운영 6) 택지개발사업의 시행 7)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3) 해당 시·군·자치구가 시행하는 토목사업의 조사·측량·설계와 시공 감독(일정 규모 이하) 4) 국민주택건설 사업의 시행 5) 택지개발사업의 시행 6)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7)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8) 건축허가 등에 관한 업무 9) 무허가건축물 단속
	1)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2) 도시계획구역의 입안(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3) 도시계획시설의 입안(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4) 도시계획 용도지역·지구의 입안(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5) 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6) 도시계획사업의 시행(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7) 도시재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8) 도시계획도로의 유지·관리(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1)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도시계획구역의 입안(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도시계획시설의 입안(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4) 도시계획 용도지역·지구의 입안(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5) 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6)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7)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8) 도시계획도로의 유지·관리
라. 지방도·시·군 도로의 신설·개수 및 유지	1) 도로관리계획 수립 2) 특별시도 및 지방도의 노선인정과 폐지·변경 3) 특별시도·지방도의 신설·개축 및 수선	1) 시·군도관리계획 수립·시행 2) 시·군도의 노선인정과 폐지·변경 3) 시·군도의 신설·개축 및 수선 4) 시·군도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구분	시·도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4) 특별시도·지방도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5) 도로통행료의 징수 6) 접도구역의 지정·관리 7) 도로부속물의 유지·관리 8) 도로관리사업소의 설치·운영 9) 도로유지기동반 운영 및 수로원 관리	5) 도로통행료의 징수 6) 접도구역의 지정·관리 7) 도로부속물의 유지·관리 8) 도로정비 및 수로원 배치·관리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1) 주거생활환경 개선계획 수립·조정 2) 농촌쓰레기 수거계획 수립·지도 3) 위생변소 개량사업계획 수립·시달 4) 새마을 환경정비사업 계획 수립 5) 생활개선사업 지원·지도 6) 광고물관리 기본지침 수립·조정 7)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계획의 수립·조정 8)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계획의 수립·조정 9) 지역별 대기보전관리계획 수립·집행 및 배출시설별 배출량 조사	1) 주거생활환경 개선실천계획 수립·시행 2) 농촌쓰레기 수거 및 지도·단속 3) 위생변소 개량사업 시행 4) 새마을 환경정비사업 추진 5) 생활개선사업 추진 6) 광고물 설치허가와 신고수리 7) 광고물 정비·단속 8) 광고물 제작업자 지도·단속 9)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 시행 10)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시행
바. 농촌주택개량 및 취락구조개선	1) 농어촌주택개량 기본계획 수립·조정 2) 취락구조 개선사업 기본계획 수립·조정·지도 3) 취락구조 개선사업 추진 지도 4)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관리 5) 농어촌주택개량 기술 보급·지도 6)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7) 농어촌주택표준 설계도서 및 자재의 연구·개발	1) 농어촌주택개량 사업계획 수립·시행 2) 취락구조 개선사업 추진 3) 농어촌주택단지 조성 4)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관리 5)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6)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 및 자재의 보급

구분	시·도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사. 자연보호 활동	1) 지역환경보전계획 수립·시행 2)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등 보호 지역 관리 3) 자연환경 개선지역 지정·관리 및 개선계획 수립·시행 4)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수립·시행 5) 특정 야생동·식물 보호관리 대책 수립·시행 6) 자연보호계획 수립 7) 자연보호교육 및 홍보 8) 자연보호 시범학교 육성·지도 9) 심신수련장 조성·관리 10) 자연보호 명예감시관 위촉·관리 11) 자연보호 대상물 지정·관리 12) 자연학습원 조성·관리	1) 지역환경보전 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 2)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등 보호 지역 관리 3) 자연환경 개선지역 지정·관리 및 개선계획 수립·시행 4)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수립·시행 5) 특정 야생동·식물 보호관리 대책 수립·시행 6) 자연보호계획 수립·추진 7) 자연보호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8) 자연보호 시범학교 육성 9) 자연보호 명예감시관 위촉·관리 10) 자연보호 지도·계몽 11) 자연보호 캠페인 실시 및 지도
아. 지방하천·준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1) 지방·준용하천 정비기본계획 및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대한 종합 계획 수립 2) 하천예정지의 지정 3) 지방·준용하천의 공사와 유지관리 4) 지방·준용하천의 점용허가와 점용료 징수 5) 하천부속물의 관리규정 제정 6) 지방하천 연안구역의 지정·고시와 그 구역 내에서의 공작물 설치 허가 등 7) 폐천부지의 교환 및 양여 8) 하천감시(사리채취단속 등)	1) 오염하천 정화사업 및 소하천 정비계획 수립·시행 2) 오염하천 정화사업 및 소하천 정비사업 대상지구 선정 3) 오염하천 정화사업 및 소하천 정비사업지구 측량·설계 4) 소하천정비사업 기술지도반 편성·운영 5) 소하천공사와 보수 등 유지·관리 6) 하천감시

구분	시·도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1) 상수도사업 기본계획 수립 2) 상수도의 신설·개축 및 수선 (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상수도공채 발행 4)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5) 수도사업소 설치·운영(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6) 정수 및 수도시설관리소 운영 (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7) 공공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의 수립(둘 이상 도·시·군의 통합 계획 수립만 해당한다) 8) 중수도 설치관리 권장 및 기술 지원 9) 먹는물 공동시설의 위생관리 계획 수립 10) 공공하수도의 설치·개축 및 수선(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11) 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와 유지· 관리(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상수도사업 기본계획 수립 2) 상수도의 신설·개축 및 수선과 이의 유지·관리(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상수도공채 발행(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4)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수도사업소 설치·운영(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6) 공공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7) 중수도 설치관리 권장 및 기술 지원 8) 먹는물 공동시설의 위생관리 9) 공공하수도의 설치·개축 및 수선 (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10) 하수종말처리장의 유지·관리 (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11) 공공하수도의 점용료 및 사용 료의 징수
차. 간이상수도의 설치 및 관리	1) 간이상수도 설치계획 수립·조정 2) 간이상수도사업 자금 지원과 기술 지도	1) 간이상수도 설치계획 수립·시행 2) 간이상수도사업장 선정 3) 간이상수도공사의 지도 4) 간이상수도의 위생 및 수질 관리 5) 간이상수도의 폐쇄 결정
카. 도립·군립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 설의 설치 및 관리	1) 도립공원계획의 결정·고시 2) 도립공원의 지정·고시 및 관리 3) 도립공원 내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 관리 4) 도립공원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1) 군립공원계획의 결정·고시 2) 군립공원의 지정·고시 및 관리 3) 군립공원 내 공원사업 시행 및 공원시설 관리 4) 군립공원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구분	시·도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다. 지방궤도사업의 경영	5) 도립공원의 입장료·사용료 및 점용료 징수	5) 군립공원 입장료·사용료·점용 료의 징수
	6)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계획 수립·집행	6) 도시공원 및 유원지 조성계획의 입안(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7) 관광휴양지의 관리	7) 도시공원·유원지의 설치 및 관리 (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8) 도시공원 및 유원지 조성계획의 입안(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8) 녹지의 설치 및 관리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 설의 설치 및 관리	9) 도시공원·유원지의 설치 및 관리(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9) 도시공원·유원지의 입장료·사 용료·점용료의 징수(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10) 도시공원·유원지의 입장료· 사용료·점용료의 징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10) 관광자원 개발·보존
		11)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시행
		12) 관광휴양지의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13) 유선·도선업의 안전관리 및 지도 감독
	1) 지방궤도사업 운영계획 수립	1) 지방궤도사업 운영계획 수립 (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궤도사업의 설치·운영	2) 지방궤도사업의 설치·운영(자 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궤도사업의 경영 평가	3) 지방궤도사업의 경영 평가
	4) 지방궤도사업에 따른 요금징수	4) 지방궤도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지방궤도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6) 지하철도채권의 발행	
	7) 지하철도공사의 설립·운영	
	1) 주차장 정비 및 개발계획의 수립	1) 주차장 정비 및 개발계획의 추진
	2) 교통신호기, 안전표지 등의 설치지도 및 지원	2) 관할 도로에 도로표지 등 설치
	3) 관할 도로에 도로표지 등 설치	3) 버스정류소의 유지·관리
		4) 가로등의 유지·관리
		5) 교통신호기, 안전표지 등의 설치· 관리
	1) 시·도 방재계획의 수립·집행	1) 시·군·자치구 방재계획의 수립·집행
	2) 시·도 재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2) 시·군·자치구 재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3)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 장이 실행할 응급조치 대행	3) 수방단(水防團)의 조직·운영

구분	시·도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4) 재해예방 및 재해응급대책의 추진 5) 재해구호 6) 재해복구사업의 추진 7) 지역수질오염사고 대책본부 운영	4) 방재훈련의 실시 5) 재해예방 및 재해응급대책의 추진 6) 재해방재를 위한 출동명령 등 행정조치 7) 재해발생 경계구역의 설정 8) 재해복구사업의 추진 9) 재해구호 10) 지역수질오염사고 대책반의 설치·운영 11) 지역수질오염사고 방재 및 대응 체계 수립·운영
	1) 지역경제 육성계획의 수립 2) 지역경제 관련 정책의 종합조정 3) 공장정비 특별구역 내의 공업 정비 실시계획 수립·시행 4) 지방공업단지의 조성·관리 5) 지방공업 장려지구 조성사업 시행 6) 지역경제 육성을 위한 자금·세제 등의 지원 7) 농공지구 생산제품의 판매지원 8) 지역 민간경제 부문에 대한 산업기술정보의 제공 9) 상공회의소 등 상공단체의 육성·지원 10) 생산 및 유통시설의 적정배치 11) 유통산업 근대화 사업의 시행 및 지원 12) 유통단지의 조성 및 운영·관리 (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13) 지방유통 근대화 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	1) 지역경제 육성 세부계획의 수립·시행 2) 지방공업개발 장려 및 지원 3) 지방공업단지의 조성·관리 4) 지역경제 육성을 위한 자금·세제 등의 지원 5) 농공지구의 지정·공고 6) 농공지구의 조성·분양 및 관리 7) 농공지구 입주업체 승인 및 그 사업계획 승인 8) 농공지구 생산제품의 판매지원 9) 지역상공단체의 지도·육성 10) 주민 지역경제 교육 및 홍보 11) 유통산업 근대화 사업의 시행 및 지원 12) 유통단지의 조성 및 운영관리 (자치구의 경우는 제외한다) 13) 시장 개설허가 14) 시장관리자 지정

구분	시·도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14) 대규모 소매점 개설허가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점) 15) 도매센터 개설허가 16) 연쇄화 사업자 지정 17) 지방도·소매업진흥 심의위원 회의 설치·운영	
5. 교육·체육·문화· 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치원·초등학교· 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 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 광장·체육관· 박물관·공연장· 미술관·음악당 등 공공 교육· 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1) 유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2) 공립의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립·경영 3) 공·사립의 고등학교, 고등기술 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지휘·감독 1) 공공도서관·문고의 설립·운영 2)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관리(운 동장·체육관·수영장 등) 3)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치· 운영 4) 시민회관의 운영·관리(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5)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 이용 자로부터의 사용료 징수 6) 그 밖에 공공교육·체육·문화 시설의 운영·관리 및 지원	1) 유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2) 공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기술 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 학 교의 설립·경영 3) 공·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 학교,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지휘·감독 1) 공공도서관·문고의 설립·운영 2)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관리(운 동장·체육관·수영장 등) 3)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치· 운영 4) 시·군·자치구민회관 운영·관리 5) 문화원운영·관리(자치구의 경 우는 제외한다) 6)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 이용 자로부터의 사용료 징수 7) 그 밖에 공공교육·체육·문화 시설의 운영·관리 및 지원

구분	시·도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1)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의 지정·보존 및 관리 2)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3)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무형 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과 그 해제 4)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의 반출 허가 5) 관할구역 내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1)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의 보존·관리 2) 비지정문화재(향토유적 등)의 보존·관리 3) 지방민속자료 발굴·조사 4) 관할구역 내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1)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 강구·조정과 주민문화예술 활동의 권장 및 보호 육성 2) 지방문화예술진흥위원회 설치 운영 3) 전문예술단체의 지정 및 지원·육성 4) 문화강좌 설치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설치 및 운영경비 지원 5) 문화산업의 육성·지원 6)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 7) 문화예술진흥 사업 및 활동이나 시설운영경비의 지원	1)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 강구·조정과 주민문화예술 활동의 권장 및 보호 육성 2) 향토문화의 발굴·지원·육성 3) 문화강좌 설치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설치 및 운영경비 지원 4) 문화산업의 육성·지원 5) 문화예술진흥 사업 및 활동이나 시설 운영경비의 지원
마. 지방문화예술 단체의 육성	1) 지방문화 예술단체의 설치·운영 2) 민간문화 예술단체의 설치 권장 및 지도·육성 3) 지방문화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지도·감독	1) 지방문화 예술단체의 설치·운영 2) 민간문화 예술단체의 설치 권장 및 지도·육성

구분	시·도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 지역 및 직장민방위 조직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1) 시·도 민방위계획의 작성 2) 시·도 민방위협의회의 설치 3) 민방위대 조직관리·지도 4) 민방위경보 발령	1) 시·군·자치구 민방위계획의 작성 2) 시·군·자치구 민방위협의 회의 설치 3) 직장민방위대의 편성 및 운영관리 4) 직장민방위대의 편성 신고수리와 그 지휘·감독 5) 민방위경보 발령 6) 민방위시설의 설치 및 관리 7) 민방위 기술지원대의 편성·관리 8) 주민신고망 조직·운영 9) 시범민방위대 육성 10) 민방위대 교육훈련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1) 소방기본계획 수립 2) 소방관서의 설치와 지휘·감독 3) 소방력 기준 설정자료 작성관리 4) 소방장비의 수급관리 5) 소방용수시설의 확충관리 6) 화재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업무 지휘·감독 7) 소방지령실 설치·운영 8) 화재경계지구 지정·관리 9) 소방응원규약 제정 10) 화재 예방 활동 11) 소방홍보 및 계몽 12)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의 지도·감독 13) 소방법령의 규정에 따른 인·허가 및 업무의 지도·감독 14) 소방 관계 단체의 지도·감독	

전라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정 1991. 09. 21 조례 제0524호

개정 2006. 08. 18 조례 제3080호(제명개정)

개정 2008. 05. 27 조례 제3191호

개정 2011. 07. 05 조례 제3474호(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부칙)

개정 2011. 11. 11 조례 제3516호(전문, 제명개정)

개정 2013. 02. 20 조례 제3675호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 따라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을 규정하여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치법규 내용의 적법성을 확보함으로써 도정의 신뢰성 제고와 도민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치법규"라 함은 전라남도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라 함은 도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4. "비용추계서"라 함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5. "세출"이라 함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6. "세입"이라 함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입법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2.20)

제 2 장 입법예고

제4조 (입법예고 대상) ① 도지사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개정 2013.2.20)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개정 2013.2.20)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개정 2013.2.20)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 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개정 2013.2.20)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개정 2013.2.20)

② 도지사는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3.2.20)

제5조 (협의 등) 도지사는 자치법규를 입법함에 있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3. 의견접수기관 및 의견제출기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도민이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입법안의 전문을 작성하여 예고할 수 있다.

제7조 (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도보 및 인터넷에 게재하여 공고하는 방법에 따른다.(개정 2013.2.20)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예고방법 외에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협회 또는 기타의 자에게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13.2.20)

③ 도지사는 입법안의 내용이 중요한 시책사항이나 도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도민에게 이를 널리 예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간신문을 이용하여 이를 예고할 수 있다.

제8조 (입법안의 열람 등) ①도지사는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비용은 「전라남도 행정정보공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개정 2013.2.20)

제9조 (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20일이상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제10조 (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입법안에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청회) ① 도지사는 입법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공청회의 개최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 3 장 입법안의 작성 및 심사

제12조 (입법안 작성) 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하는 때에는 제정의 필요성, 내용 및 절차의 정당성 등을 감안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별표1의 전라남도 자치법규 입안심사기준표(이하 "입안심사기준표"라 한다)에 따라 자체 평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2.20)

제13조 (입법안 심사) 법무통계담당관은 제12조에 따라 작성된 입법안을 별표1의 입안심사기준표에 따라 심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2.20)

제14조 (입법안 평가 및 심사방법) ① 별표1의 입안심사기준표에 따라 입법안을 평가 및 심사하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의 성격 및 내용에 따라 각 입법절차단계에서 필요한 항목을 선별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하거나 심사할 수 있다.(개정 2013.2.20)

② 별표1의 입안심사기준표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안의 평가 및 심사의 구체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2.20)

제15조 (비용추계서 작성대상 및 제출) ① 도지사는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2.20)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이 곤란한 경우
- ②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유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2.20)

③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작성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자치부의 해당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17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도지사는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8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 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하기 전에(주민 조례안의 경우에는 의회에 부의하기전)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을 의회에 부의 할 때 소관 부서는 제15조에 따른 비용추계서 및 의견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2.20)

- 제19조 (자치법규 정비) ① 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개선에 관련되는 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법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입법안에 반영된 의견이 도의 정책결정·재정 증대 등 도정에 공헌한 경우 의견제출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 4 장 자치법규의 공포 및 시행

- 제20조 (전문)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 ② 조례의 전문에는 전라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도지사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연월일을 기입한다.
- ③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도지사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연월일을 기입한다.
- ④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도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도의회의 의결을 거친 뜻과 「지방자치법」 제26 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도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명기한다.(개정 2013.2.20)

- 제21조 (공포방법) 자치법규는 도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 다만, 도의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도보나 일간신문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 제22조 (공포일)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도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 다만, 도의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 도보나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 제23조 (시행일) 자치법규는 해당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제24조 (시행 유예기간) 도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5 장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제25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9세이상 주민 총수의 100 분의 1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3.2.20)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8.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5.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전라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17”을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로 한다.

제2조중 “법 제13조의 4”를 “법 제16조”로 한다.

②전라남도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한다.

③재단법인 전라남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지방자치법 제95조”를 “지방자치법 제104”조로 한다.

④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한다.

- ⑤전라남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40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11”을 “지방자치법 제149조 및 동법시행령 제94조”로 한다.
- ⑥전라남도립대학 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지방자치법 제117조”를 “지방자치법 제126조”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지방자치법 제115조”를 “지방자치법 제124조”로 한다.
제19조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한다.
- ⑦전라남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6조의2 제2항, 제47조”를 “동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3조제2항, 제84조”로 한다.
제9조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제3항”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 84조 제3항”으로 한다.
- ⑧전라남도 명예도민패 수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를 “지방자치법 제13 조제1항 및 제21조”로 한다.
- ⑨전라남도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01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10조제2항”으로 한다.
- ⑩전라남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한다.
- ⑪전라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한다.
- ⑫전라남도 여성발전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중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으로 한다.
- ⑬전라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한다.
제2조 제2호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한다.
- ⑭전라남도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한다.

⑮전라남도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26조제2항”으로 한다.

⑯전라남도 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시설 설립 및 운영기금 적립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한다.

부칙 (2011.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법무행정사무처리 규칙

제정 1993. 09. 13 규칙 제2196호
개정 2004. 09. 08 규칙 제2748호(전문)
개정 2005. 06. 17 규칙 제2764호(전라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부칙)
개정 2006. 08. 28 규칙 제2798호(전라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부칙)
개정 2006. 12. 27 규칙 제2809호
개정 2008. 05. 09 규칙 제2833호
개정 2009. 11. 13 규칙 제2886호
개정 2010. 12. 30 규칙 제2921호(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부칙)
개정 2011. 07. 13 규칙 제2937호
개정 2012. 08. 13 규칙 제2973호(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부칙)
개정 2012. 08. 20 규칙 제2975호
개정 2013. 02. 20 규칙 제2995호(전라남도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에 관한 규칙)
개정 2013. 07. 26 규칙 제3010호
개정 2014. 08. 01 규칙 제3038호(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부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자치법규의 입법사무, 주민의 조례입법청구에 대한 처리, 법령질의 등 전라남도(이 "도"라 한다)의 법무행정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7, 2012.8.20)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도의 법무행정사무에 관하여 적용되며,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규칙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법"이라 함은 자치법규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2. "조례"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인 도가 헌법 및 법령의 범위안에서 도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전라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어 정립한 규범을 말한다. 다만, 도교육청소관의 조례는 제외한다.

3. "규칙"이라 함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정립한 규범을 말한다. 다만, 도의회가 정하는 의회규칙과 도교육감이 정하는 교육규칙은 제외한다.(개정 2012.8.20)
4. "훈령"이라 함은 하급기관에 대하여 상당한 장기간에 걸쳐서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말하며, "규정"으로 표기한다.
5. "예규"라 함은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외의 문서를 말하며, 이를 "지침"으로 표기한다.
6. "공고"라 함은 일정한 사항을 일시적으로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를 말한다.
7. "고시"라 함은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를 말한다.
8. "원안"이라 함은 조례·규칙·훈령·예규(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의 입안서류에 대하여 도지사가 결재를 한 문서와 그 부속서류를 말한다.
9. "원본"이라 함은 조례·규칙의 공포문과 훈령·예규의 발령문으로 공포·발령권자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은 문서를 말한다.

제 2 장 자치입법

제 1 절 입법사무 처리절차

- 제4조(입법체제) ① 자치법규의 입법은 입법하고자 하는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에서 추진한다.
- ② 자치법규 등의 입안시 입법의 용어·형식·체제 등은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 및 도의 「자치입법실무지침」에 따른다.(개정 2012.8.20)
- ③ 중앙부처나 도지사의 승인, 협의, 인가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5.9)
- ④ 훈령 및 예규는 조례에 준하여 조문형식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주관부서 지정) 주민의 입법청구 등에 따라 자치법규 입법이 필요한 경우로서 소관부서가 명확하지 않거나 다수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

에는 도민소통실장이 법무통계담당관과 협의를 하여 주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이때 종합민원실장은 입법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의 소관부서를 구분하여 주관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5.9, 2010.12.30, 2014.8.1)

제6조(입법안에 포함할 사항) ① 입법안 주관부서는 입법안 작성에 있어서 어려운 전문용어, 지나치게 압축된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능한 평범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입법이유(제·개정 또는 폐지사유)
2. 주요내용 (개정 2006.12.27)
3. 제·개정안 또는 폐지안
4. 신·구조문 대비표(부분개정의 경우에 한함)
5. 관계법령 발췌내용
6. 관련부서 의견
7. 예산조치사항
8. 입법예고 결과
9. 사전협의 또는 승인사항
10.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개정 2008.5.9)

제7조(조례·규칙으로 정하여야 하는 사항) ①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개별법령에 따른다. (개정 2008.5.9)

1.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2. 비용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3. 의회의 권한에 관한 사항
4. 소속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6.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등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사항
7. 벌칙에 관한사항
8. 그 밖에 개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개정 2008.5.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개별법령에 따른다. (개정 2008.5.9)

1. 사무의 집행절차에 관한 사항
2. 기관의 내부적인 관계에 관한 사항
3. 법령 또는 조례의 세부집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별법령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개정 2008.5.9)

제8조(입안시 유의사항) 자치법규 등을 입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해당사무의 주관부서에서 작성한다. (개정 2008.5.9)
2. 입안시에는 결재권자의 방침결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달한 표준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방침결정으로 볼 수 있다. (전문개정 2006.12.27)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5.9)
4. 주관부서로부터 의견조회를 요구받은 부서에서는 의견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회시하여야 한다.
5. 최종안은 반드시 관련부서의 협의와 법무통계담당관의 사전심사를 거쳐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보조기관이 전결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06.12.27, 2008.5.9, 2010.12.30)

제9조(입안절차) ① 자치법규 등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안에 대한 관련사무의 처리절차는 다음의 각항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의원발의 조례안 또는 위원회발의 조례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의 처리절차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1. 방침결정 및 조례안 작성
2. 사전승인·협의 이행
3. 관련부서 의견조회
4. 입법예고 또는 공개청문
5. 조례안 심사요청
6.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7. 조례안 결재 및 원안이송

가. 조례안은 도지사의 최종결재를 받음으로써 도의회에 제출가능

나. 주관부서장은 도지사의 최종결재를 받은 원안서류 및 구비서류와 이상의 내용을 저장한 컴퓨터용 파일을 법무통계담당관에게 제출.
(개정 2010.12.30)

8. 도의회 제출

가. 법무통계담당관은 주관부서가 제출한 조례안을 대변인과 정책기획관에게 통보 (개정 2005.6.17, 2010.12.30, 2011.7.13)

나. 대변인은 전라남도보(이하 "도보"라 한다)에 도의회부의안건으로 공고하고, 정책기획관은 도의회에 안건으로 제출 (개정 2005.6.17, 2011.7.13)

③ 규칙의 처리절차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5.9)

2. 규칙안 결재 및 원안의 이송 공포문안과 규칙안을 동시에 작성, 도지사의 최종결재를 받은 원안 서류를 구비서류와 이상의 내용을 저장한 컴퓨터용 파일을 첨부하여 법무통계담당관에게 이송 (개정 2010.12.30)

④ 훈령·예규의 처리절차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1. 제2항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는 준용한다. (개정 2008.5.9)

2. 입안내용의 결재 및 발령

가. 도지사의 결재를 받음으로써 확정

나. 도지사의 결재가 끝나면 법무통계담당관에게 발령번호부여 의뢰
(개정 2010.12.30)

다. 주관부서에서 발령 및 도보에 게재 의뢰

3. 발령이 완료된 훈령·예규의 원안과 원본은 발령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법무통계담당관에게 이송 조치 (개정 2010.12.30)

제10조(입안심사) ① 자치법규 등의 입안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단계별로 법무통계담당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2.30)

1. 예비심사

자치법규로서의 형식요건, 상위법령 등에의 저촉여부, 타 규정과의 관계, 입법선례, 자치법규로 제정가능 여부 등에 관하여 입안서류를 축조심사하는 단계

2. 최종심사

예비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입법예고결과 반영여부,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의 의견조회 결과 반영 등 제반사항을 심사하는 단계. (개정 2008.5.9)

② 제1항의 심사를 마친 조례·규칙의 입안서류는 전라남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입안심사시 구비서류)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에서 법무통계담당관에게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입안서류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1. 방침결정문서 원안 또는 표준안 공문
2. 입법예고 및 그 결과에 관한 문서
3. 사전승인·협의·인가 등 관련 공문서
4. 예산관련사항
5. 관련법령 발췌서
6. 의견조회 및 회신관련 문서
7.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개정 2008.5.9)

② 법무통계담당관은 심사요청을 받은 입법안이 제1항의 구비서류기준에 어긋난다고 판단될 때에는 주관 부서에 이를 수정·보완토록 요구할 수 있다. 수정·보완요구를 받은 부서가 수정·보완요구를 늦게 처리하거나 거부할 때에는 법무통계담당관은 해당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08.5.9, 2010.12.30)

제12조(입법자료 제출·시달) ① 법무통계담당관은 자치법규 등의 입법을 위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실과소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② 실과소장이 자치법규 등에 대한 표준안 또는 공고·고시안을 시·군에 시달할 경우에는 법무통계담당관의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며, 시행즉시 그 사본을 법무통계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③ 실과소장은 중앙부처로부터 훈령·예규, 공고·고시 등의 발령 또는 시행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접수 즉시 그 사본 1부를 법무통계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제13조(도의회의결조례안 이송시 처리) ① 정책기획관은 도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되어온 조례안을 법무통계담당관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17, 2010.12.30)

② 법무통계담당관은 제1항에 의하여 정책기획관으로부터 송부받은 도의회의결조례안중에서 도지사가 제출하여 도의회에서 수정·의결하였거나 의원발의 또는 위원회발의로 의결되어 이송되어온 조례안 또는 재의요구하였으나 재의결된 조례에 대하여는 이를 업무주관부서에 송부하여 재의요구 또는 공포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③ 제2항에 의한 조례(안)을 송부받은 주관부서에서는 해당 조례(안)에 대한 위법·부당여부 등을 검토하고 조례(안)이 재의요구 또는 대법원 제소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재의요구 또는 대법원 제소에 대한 도지사의 방침을 받아 이를 법무통계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5.9, 2010.12.30)

④ 법무통계담당관은 시·군 조례안 또는 규칙안을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통계담당관이 직접 검토할 경우에는 의견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⑤ 법무통계담당관으로부터 시·군 조례안 또는 규칙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요구받은 부서에서는 해당 조례안 또는 규칙안에 대한 위법·부당여부를 검토하여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검토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5.9, 2010.12.30)

제14조(입법예고) ① 입법예고(이하 "예고"라 한다)는 주관부서에서 예고문안을 작성하여 법무통계담당관의 심사 후,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입법예고는 도지사 결재를 원칙으로 하되 방침결정시 도지사의 결재를 받은 경우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국본부장의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8.5.9, 2010.12.30)

② 예고문은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규칙안의 주요내용을 항목별로 알기 쉽게 작성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조례·규칙의 초안을 함께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08.5.9)

③ 주관부서에서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여 입법예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예고 내용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15조(관계기관 협의)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과의 협의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관계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기 전에 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입법예고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병행할 수 있다.(개정 2013.7.26)

1. 규제 심사(신설 2013.7.26)
2. 예산 사항(비용 추계 등)(신설 2013.7.26)
3. 부패영향평가(신설 2013.7.26)
4. 성별영향분석평가(신설 2013.7.26)
5. 그 밖에 입법안이 타 부서의 업무와 관계가 있는 경우(신설 2013.7.26)

제 2 절 조례·규칙심의회 구성 운영

제16조(조례·규칙심의회) 조례·규칙의 제·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8조에 근거한 전라남도조례 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5.9)

제17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도지사,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실·국·원·본부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8조제2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5인이상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및 단서신설 2006.12.27, 개정 2008.5.9, 2010.12.30, 2012.8.20, 2014.8.1)

② 의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가 된다. (개정 2010.12.30, 2014.8.1)

③ 외부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06.12.27)

제18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8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8.5.9)

제19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심의할 대상 안전이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경우 또는 처리기일이 촉박하여 심의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삭제 2006.12.27)

제20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8.20)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의 사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되,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순으로 대행한다. (개정 2010.12.30, 2014.8.1)

③ 의장과 부의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는 전라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직제순에 따라 실·국·단·본부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6.12.27)

제21조(배석 및 출석 발언) ① 대변인 및 정책기획관, 감사관, 도민소통실장, 녹색성장정책실장, F1대회지원담당관은 심의회에 배석할 수 있다. (개정 2005.6.17, 2011.7.13, 2012.8.20, 2014.8.1)

② 의장은 직속기관, 사업소의 소속직원이 소관사무에 관하여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의안제출) ① 심의회 의안은 실·국·원·본부장이 제출한다. 다만, 직속기관의 경우에는 직속기관의 장(소방서는 소방본부장)이 의안을 제출한다. (개정 2006.12.27, 2012.8.20)

② 의안은 늦어도 심의회 개최일 3일전까지 20부를 작성하여 법무통계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제23조(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소속 실·국·원·본부의 직근하급자가 대리출석 할 수 있다. (개정 2006.12.27, 2012.8.20)

② 대리출석한 자는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 3 절 조례안 재의요구 및 제소

제24조(조례안 재의요구 발의·심사) ①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는 해당업무 소관부서에서 발의하고 추진한다.

② 재의요구 발의부서에서 재의요구안을 작성할 때에는 제10조의 입안 심사에 준하여 법무통계담당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2.30)

제25조(재의요구절차 등) ① 정책기획관은 도의회에서 의결되어 집행부에 이송되어온 조례안을 즉시 법무통계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법무통계담당관은 이송된 조례안중에서 의원발의 또는 위원회발의 조례안이나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으로 수정의결된 경우에는 당해 조례안을 즉시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7, 2010.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안을 통보받은 소관부서는 해당 조례안이 재의요구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법무통계담당관의 사전심사를 거쳐 늦어도 법정 재의요구기한 7일전까지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재의요구안을 법무통계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2.8.20)

③ 제2항에 의하여 소관부서로부터 재의요구안을 제출받은 법무통계담당관은 이를 지체없이 정책기획관에게 통보하고, 정책기획관은 재의요구안을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7, 2010.12.30, 2012.8.20)

④ 도의회에 제출한 재의요구안에 대한 도의회에서의 제안설명 등은 소관부서의 해당 실·국·원·본부장이 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⑤ 도지사는 시·군에서 보고한 조례안이 위법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재의요구 또는 대법원 제소를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08.5.9)

⑥ 도지사는 시·군 규칙안이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행유보지시를 할 수 있다.

⑦ 법무통계담당관은 시·군 조례·규칙의 심사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시군조례 규칙심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제26조(중앙기관의 재의·제소지시 처리) ① 법무통계담당관은 중앙부처로부터 도 또는 시·군의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지시 또는 제소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주관부서 또는 시·군에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의요구 또는 제소처리의 법정기한이 촉박하여 원활한 업무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법무통계담당관이 이를 우선 처리하고, 주관부서에 이를 통보하여 주관부서가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2.8.20)

제27조(조례의 대법원 제소 등) ① 제25조와 관련하여 재의요구한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재의결되어 집행부에 이송되어 오면 정책기획관은 이송된 조례를 법무통계담당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법무통계담당관은 이를 즉시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7, 2010.12.30)

② 재의결된 조례를 통보받은 소관부서에서는 조례의 공포 또는 법령위반 판단과 함께 조례의 대법원 제소여부에 대한 도지사의 방침결정을 받아 이를 즉시 법무통계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③ 제2항에 의거 제소방침이 결정되면 소관부서에서는 법무통계담당관과의 협의를 거쳐 제소장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최종결재를 받은 후 제소 기한내에 대법원에 제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④ 제3항과 관련하여 소관 부서장은 소송수행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법무통계담당관과의 협의를 거쳐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제 4 절 자치법규 등의 공포·발령

제28조(공포번호 부여) ① 조례·규칙을 공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공포대장에 등재하고, 조례·규칙별로 누년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②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규칙의 공포는 행정자치부에 보고후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 법무통계담당관의 전결로써 공포한다. (개정 2008.5.9, 2010.12.30, 2012.8.20)

- ③ 훈령·예규를 발령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준용한 훈령·예규발령대장에 등재하고, 훈령·예규별로 누년일련번호를 부여한다.
- ④ 도교육감이 공포하는 조례는 도지사가 공포번호만 부여하고 조례원본 등은 도교육감이 보존한다.

제29조(원본등의 관리) 자치법규 등의 원안과 원본은 합철하여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관리하되, 조례·규칙·훈령·예규별로, 공포 발령순서대로 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제30조(공포·발령대장 관리) 자치법규 등의 공포 발령대장은 조례 규칙·훈령·예규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31조(공고·고시) ① 공고·고시는 주관 실·국·원·본부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그 내용이 중요하거나 법규적인 성격을 띤 경우에는 최종결재전에 법무통계담당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2.8.20)

② 공고·고시번호는 최종결재권자의 결재후에 법무통계담당관이 부여한다. 다만, 회계관계의 입찰공고·고시번호는 회계과장이, 인사위원회의 공고·고시번호는 총무과장이 별도로 부여한다. (개정 2006.8.28, 2008.5.9, 2010.12.30, 2012.8.13, 2014.8.1)

③ 공고·고시문서는 연도표시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고(고시)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 5 절 입법사항 보고

제32조(조례·규칙안 보고) ① 조례안이 도 및 시·군의회에서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에 접수된 때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조례의결사항보고서에 조례안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5.9)

② 규칙안은 공포예정 15일전에 구비서류와 함께 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5.9)

제33조(재의결과 보고)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거나 그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는 도지사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5.9)

제34조(제소결과 보고) 도 및 시·군 조례(안)에 대하여 대법원에 제소 또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하거나 그에 따른 판결이나 결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소장사본 및 판결문사본 2부를 첨부하여 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군수는 도지사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5.9)

제 3 장 주민의 조례제정·개폐 청구

제35조(주민의 입법청구처리 주관부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주민의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 청구가 있으면 청구한 내용의 업무를 담당 하는 주관부서는 이를 우선하여 성실히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5.9)

제36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조례 제정·개폐 청구는 별지 제8호서식에 청구하여야 하며 대표자 증명서교부 신청을 문서로서 받은 때에는 도민소통실장은 청구인의 대표자가 19세 이상의 주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7, 2008.5.9, 2009.11.13, 2014.8.1)

② 도민소통실장은 제1항에 의한 그 신청서 원본과 함께 대표자증명서 교부사실을 즉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8.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제정·개폐 청구 및 대표자증명교부신청서 원본을 이관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대표자의 인적사항 및 청구 취지 등을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7)

④ 주관부서의 장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대표자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5.9, 2009.11.13)

제37조(청구사항 공표) 주관부서의 장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청구인명부를 제출(이하 "청구"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 청구취지 및 이유, 연서주민수, 청구인명부 열람기간·장소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7, 2008.5.9, 2009.11.13)

제38조(청구인명부 열람·확인)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명부를 접수받은 때에는 청구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도와 시군별로 청구인 명부 또는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7)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청구인명부 열람 기간동안 청구인 명부에 기재된 서명이 당해 자치단체의 19세이상의 주민여부, 중복서명 및 서명요청기간내의 서명여부 등 유효서명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7)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된 무효서명 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열람기간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전라남도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서명의 무효결정여부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5.9, 2009.11.13)

④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서명의 무효여부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과 '이유있다'고 결정하면 심의결과를 이의 신청인 등 관계인과 청구인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서명의 무효여부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과 '이유없다'고 결정할 경우에는 심의결과를 즉시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청구요건심사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은 주민의 조례제정·개폐청구에 대한 공표 및 열람결과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청구를 수리 또는 각하하여야 한다. 단, 청구를 각하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단서 신설 2006.12.27, 개정 2008.5.9)

② 제1항에 의한 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의 결정이 있으면 주관부서의 장은 청구인대표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청구수리 또는 각하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3)

제40조(조례안 검토의견서 작성 및 의회에의 부의) ① 청구를 수리하는 경우에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조례안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회 상정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6.12.27, 2009.11.13)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조례안검토의견서를 작성할 때에는 법무통계담당관의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12.30)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안과 그 조례안에 검토의견서를 덧붙여 의회에 부의안건으로 법무통계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④ 주관부서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5조제9항에 의거 조례안의 도의회 부의결과를 청구인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7, 2008.5.9, 2009. 11.13)

제41조(청구대상 적격판단) 청구인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로부터 조례의 제정·개폐 청구와 대표자증명서교부신청이 있으면 당해사무 주관부서는 청구사안이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청구제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청구제외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당해 청구를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5.9)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신설 2006.12.27)

2.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3.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제42조(조례안 처리절차) 주민이 입법청구한 조례안의 입법절차 및 의회부의, 조례공포 또는 재의요구, 제소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이 없으면 도지사가 입안·제출하는 조례안 입안 및 처리절차를 준용한다.

제 4 장 자치법규 정비·관리

제43조(자치법규 등의 정비) ① 실과소에서는 법령의 개정이나 행정여건의 변경 등으로 소관 자치법규 등을 정비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정비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여러 실과소와 관련이 있는 조례나 규칙을 정비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총괄하여 정비하되, 긴급한 사유 등으로 부득이 개별정비를 해야 할 경우에는 정비사유가 발생한 부서에서도 정비할 수 있다.

제44조(자치법규집 추록 및 관리) ① 자치법규집의 추록은 연1회이상 발간 하여야 한다.

② 법무통계담당관은 실과소 및 시·군의 법령집과 자치법규집의 관리 실태를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③ 실과소장은 구입한 법령집과 배부받은 자치법규집을 잃어버렸거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법무통계담당관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구개편으로 폐지된 부서의 자치법규집은 법무통계담당관에게 반납하여야 하고, 대한민국법령집 처리에 관하여는 법무통계담당관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2.8.20)

제45조(자치법규 정비상황 보고) ① 시장·군수는 매년 12월말 현재의 조례·규칙에 대한 제정·개정·폐지상황을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작성기준일 부터 10일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3, 2012.8.20)

② 도지사는 도 및 시·군의 조례·규칙 정비상황을 매년1월15일까지 행정 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5.9, 2012.8.20)

제46조(시·군 자치법규입안 지원) ① 도 실·과·소에서는 해당부서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시·군의 자치입법을 지원하거나 도 전체의 통일성을 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자치입법 표준안 또는 지침을 작성하여 시·군에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에 시달하는 해당 표준안 또는 지침 등에 대하여는 법무통계담당관실의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5.9, 2010.12.30, 2012.8.20)

② 제1항에 의한 표준안의 심사는 도의 자치법규 심사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준용한다.

제 5 장 법령질의 및 회시

제47조(질의방법) ① 법령 및 자치법규(이하 이 장에서는 "법령"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관중앙기관 또는 상급기관에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1. 질의 배경과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등 질의요지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2. 관련기관의 해석이 있거나 또는 대립되는 이론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명기한 요지와 함께 관계법령의 해석상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3. 문제점에 대하여 해석상 견해의 다툼내용을 "갑설" "을설"등으로 구분한 각 견해의 정당성의 이유(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4.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주장하는 의견을 밝히고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5. 관계법규 등 기타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8조(질의사항 처리) ① 질의사항중 「지방자치법」 및 「행정절차법」 관련 질의, 소송,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무통계담당관이, 그 외의 모든 질의에 대하여는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3.2.20)

② 도 문서심사관은 법령질의문서를 접수할 때 질의자가 기재한 수신처 기재내용에 상관없이 해당 업무 주관부서로 분류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5.9)

③ 실과소에서 중앙부처에 질의하거나 시·군 질의에 회답할 경우에는 주관 실·국·원·본부장 또는 사업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최종 결재전에 법무통계담당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2.8.20)

④ 읍·면·동은 시·군에, 시·군은 도에, 도에서는 중앙부처에 질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에서 업무성질상 중앙부처로 질의할 경우에는 도를 경유하여야 한다.

⑤ 실과소장은 완결된 질의응답서 1부를 법무통계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무통계담당관은 질의응답을 취합하여 질의응답집을 발간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제49조(질의제외대상)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의하여서는 아니 되고, 질의를 반려할 수 있다.

1. 제47조에서 정한 형식과 내용을 갖추지 아니한 질의
2. 법령질의와 관련없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인·허가처리에 대한 해결방법을 묻는 질의
3. 인·허가후 문제가 이미 야기되었거나 야기가 예상되는 경우 문제에 대한 책임 회피수단으로 질의한 경우
4. 민원과 직접 관련있는 사안에 대하여 소관기관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질의한 경우
5. 법규에 명백한 규정이 있음에도 관계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질의하는 경우
6. 이미 질의회시가 있었던 사항에 대한 중복질의
7. 사실판단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질의
8. 다른 기관이 회시한 내용에 대한 재질의
9. 소청 및 행정심판 재결이나 재판에 관한 질의
10. 기타, 법령질의 내용이 될 수 없는 것을 묻거나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이나 판례 등이 정립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회답을 요구하는 경우
11.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질의
12. 구비서류보완이나 보충설명요구에 불응한 질의

② 소관 실과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질의를 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들어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일반주민이 선량한 의도로 질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6 장 행정심판 및 소송

제50조(행정심판) ① 도를 처분청으로 하는 행정심판은 법무통계담당관이 관계 실·국·원·본부장으로부터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받아 답변서를 작성

하여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송부한다. (개정 2008.5.9, 2010.12.30, 2012.8.20)

② 시·군을 처분청으로 하는 행정심판은 법무통계담당관이 관계 실·국·본부장으로부터 의견서와 증거 자료를 제출받아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하고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내용에 따라 재결서를 작성한다. (개정 2008.5.9, 2010.12.30)

③ 법무통계담당관은 제2항의 행정심판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조사 또는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으며, 관련 실과소 그 밖의 기관에 필요한 서류제출이나 의견진술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5.9, 2010.12.30)

제51조(제소의뢰) ①각 실과소에서 소송에 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법무통계담당관에게 제소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이 정해진 승인 사항은 기일만료 5일전까지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1. 사건개요 설명서

2. 소장사본

3. 소송사건 심사자료 또는 증빙서류

② 법무통계담당관이 제1항의 제소를 의뢰 받았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요지와 법률의견서를 붙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제52조(소송담당공무원 지정) ①법무통계담당관은 도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송사건별로 주관 실과소 담당사무관과 실무자를 소송담당자로 지정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지정장을 교부 한다. (개정 2009.11.13, 2010.12.30)

② 제1항의 소송담당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서약을 하고 법무통계담당관의 지시에 따라 소송수행을 담당한다. (개정 2009.11.13, 2010.12.30)

③ 법무통계담당관은 중요한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실·과·소, 담당 및 관련 업무에 경험이 많은 공무원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고문 변호사와 연석하여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12.8.20)

제53조(소송수행) ① 소송관련 실·과·소장은 법무통계담당관의 요구가 있으면 소송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과 참고인으로 공판에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2.8.20)

② 소송담당자 또는 소송관련공무원은 변론공판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소송대리인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소송대리인은 고문변호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소송대리인 및 소송담당자는 소송 수행상황을 그때마다 법무통계담당관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0.12.30)

제 7 장 보 칙

제54조(질의회신문서 통제) 문서심사관은 법제부서의 합의가 없는 조례·규칙·훈령·예규, 질의회신 및 법령안 의견회신 공문서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 경우 주관 실·과·소에 반송하여 법제부서의 심사 또는 합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제55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치입법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법제처의 「법령 입안·심사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08.5.9, 2013.7.26)

자치법규검토결과통보서

확인자 ○○실과 소장 ○○○ (인)

작성자 직 성명 ○○○ (인)

자치법규명			
소관부서	실 과 담 당		
검토사항	검 토 구 분	유	무
	1. 관련법령에 위반하는 사항		
	2.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		
	3. 월권사항 또는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		
	4. 상급기관의 훈령등 지시 불이행사항		
	5. 기타 문제점		
건토구분(조무대비 등)			
자치법규안	실 · 과 검토의견	검 토 사 유	

(참고) 자치법규(안)중 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 기재하고, 전체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검토 사유란에 “이견 없음”이라고 기재하여 회답한다. (건별로 별지작성)

조례(규칙) 공포대장

공 포 연월일	공 포 번 호	자 치 법 규 명	구분(제정· 개정·폐지)	소 관 실과소	적 요			
					행정자치부 보 고	대 본 정 리	원 안 회 수	비 고

공고(고시) 대장

년 월 일	연도표시 일련번호	공고(고시)명	소 관 실과소명	비 고

조 례 의 결 사 항 보 고

전라남도

조 례 명			
종 류	제 정(), 개 정(), 폐 지()		
제 안 자	도지사(), 의 원()		
의 결 일	. . .		
이 송 일 자	. . .	재의기한	. . .
근 거 법 령			
소 관 부 서			
관 련 중 앙 부 처			
제 · 개정 · 폐지 사유			
조 례 주 요 골 자			
비 고			

시군 조례·규칙 심사대장

일련 번호	조례·규칙명	구분(제정· 개정·폐지)	접수일	검토일	적요			
					안행부 보 고	실 과 소 의견조회	심 사 결 과	비 고

조례 재 의 요 구(결과) 보고

조례명			
종 류	제정(), 개정(), 폐지()		
제안자	도지사(), 의원()		
의회의결일	년 월 일	이송일	년 월 일
재의요구일			
재 의 결 일			
문 제 규 정			
재의요구 사유			
재의요구 결과			

조례제소사항(결과) 보고

전라남도

조례명	
의결일	
재의결요구	
재의결일	
제소일	
판결일	
판결요지	
비고	

☐제정 조례의 ☐개정 청구서 ☐폐지				
청구인의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거소· 체류지)	(전화번호 :)		
청구대상 조례 및 청구취지	조례 (☐ 제정 ☐ 개정 ☐ 폐지)			
이유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의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 조례안 비고 : 청구취지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청구종류	☐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 감사청구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지사 직인			
비고 : 청구종류란의 ()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청구종류	☐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 감사청구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거소 · 체류지)	(전화번호 :)		
수 임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거소 · 체류지)	(전화번호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 명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거소 · 체류지)	(전화번호 :)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지사 직인				
비고 : 청구종류란의 ()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이 의 신 청 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거소 · 체류지)	(전화번호 :)		
대 상	☐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 조례의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 감사청구의 청구인명부			
신청취지				
신청사유				
「지방자치법」 제1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비고 : 신청취지 및 신청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의견서

전라남도 ○○ 조례(중 개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제 출 자 : 전라남도지사

- 지난 ○○○○년 ○월 ○일 대표자 ○○○가 전라남도지사에게 입법 청구한 전라남도 ○○조례(중 개정조례·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다음과 같이 의견이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내 용]

1. ----- 은 ○ ○ ○ 법에 위배

- -----

- -----

2. ----- 은 ○ ○ ○ 법에 위배

- -----

- -----

조례 제·개정 청구의 수리·각하여부 결정 통지

- 지방자치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년 ○월 ○일 대표자 ○○○가 제출한 전라남도 ○○조례(일부개정조례, 전부개정조례, 폐지조례)안 입법 청구에 대하여, 제○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를 다음과 같이 수리(또는 각하)합니다.

[수리(또는 각하) 사유]

- 청구제외대상 해당여부 : 해당없음 (또는 해당함)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
- 법정 주민연서수 충족여부 : 유효서명수 ○○○명으로 충족(또는 불충족)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
- ※ 전라남도 법정 주민연서수 : ○○○명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1조 및 전라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조)

○○○○년 ○월 ○일

전라남도지사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자치법규 정비실적 보고

(단위 : 건)

법규 구분	발 의 구 분	전반기말 보유건수 (1)	금 반 기 중		금반기말 보유건수 (4)	개정건수 (5)
			제정건수 (2)	폐지건수 (3)		
조례	계					
	자치단체장					
	의 원					
규칙						

(참고) (1)+(2)-(3) = (4)

(5) 개정건수는 자치법규 1건에 대하여 수회 개정하였을 경우에
그 횟수를 건수로 계산함.

지 명 장

소 속

직 급

성 명

귀하를 ○○○○의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자료제출과 공판출석
및 연락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명하여
본 사건의 소송 담당자로 지명함

년 월 일

전라남도지사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 약 서

본인은 ○○○○의 소송사건에 있어서 자료 제출과 공판출석 및 연락 등 본 소송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고 만일 본 업무 수행에 고의나 과실로 인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210mm×297mm (인쇄용지 60g/m²)

참 고 문 헌

- 법 제 처(2012), 2012 자치입법 기본과정
- 법 제 처(2011), 시·도법률교육교재(Ⅰ·Ⅱ)
- 행정안전부(2011), 지방자치단체재의·제소조례모음집
- 대한민국국회(2010), 법률용어·법문표현·입법모델입안방법,
국회법제실
- 법 제 처(2009), 자치입법 실무
- 법 제 처(2012),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 전라남도(2009), 자치입법 실무편람
- 전라남도(2013), 자치입법실무편람(보정판), 전라남도
- 법 제 처(2012), 2011년 지방법제업무담당자과정 교재
- 법 제 처(2011), 2011년도 자치법규 이해과정
- 법 제 처(2012), 2012년도 시도법제업무담당자과정
- 법 제 처(2013), 주제별·조문별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자치입법
따라하기
사 례 중 심

발 행 : 2014년 12월

발 행 인 : 전라남도지사

편 집 인 : 법무통계담당관 최성진

법 제 담 당 박세철

배 준, 김화정, 김지인, 황현자

발 행 처 : 기획조정실 법무통계담당관실

534 - 700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법무통계담당관실 법제담당

☎ (061) 286-2621~2624

인 쇄 : 도서출판 호산 ☎ (061) 282-3623

